

~~901-3206~~ 310.12  
경 740  
1981



통계 개선사업  
최종보고서

198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연세대학교인구및가족계획연구소



000851 B000244

# 차 례

## 머 리 말

제 1 장 研究의 目的 및 日程 .....	1
1. 1. 研究目的 .....	1
1. 2. 研究組織 .....	2
1. 3. 研究事業 집행경과 .....	4
제 2 장 人口動態統計改善을 위한 노력 .....	9
제 3 장 人口動態重複調査 .....	18
3. 1. 서 론 .....	18
3. 2. 人口動態標本調査 .....	19
3. 3. 人口動態特別回顧調査 .....	29
3. 4. 重複調査方法에 의한 出生·사망을 추정 .....	37
3. 5. 特別回顧調査의 主要結果 .....	44
제 4 장 人口動態申告制度의 改善研究 .....	73
4. 1. 서 론 .....	73
4. 2. 호적신고 절차 .....	74
4. 3. 人口動態申告制度상의 문제점 .....	82
4. 4. 호적신고의 문제점 : 기초조사 결과 .....	86
4. 5. 시범사업내용 및 결과 .....	103
4. 6. 시범사업의 평가 : 평가조사 결과 .....	106
제 5 장 인구동태 통계개선 권고안 .....	117
부록 I : 시범사업 세부활동 121	
부록 II : 중복조사 대조 결과 13	
부록 III : 특별회고조사 결과 14, 25	
부록 IV : 조사표 93	

## 제 1 장 研究의 目的 및 日程

### 1.1. 研究 目的

韓國의 「人口動態統計改善計劃」의 研究는 우리나라의 人口動態申告改善을 全國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可能性을 檢討하고 이에 부수될 問題點을 파악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 研究事業의 長期目的은 우리나라 政府기관의 여러 政策企劃 및 行政資料로 요청되는 人口 및 人口관련 統計의 生産에 있어서 正確性, 信賴性, 時宜性 및 效率性 있는 人口統計調查組織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人口動態統計는 正常出生, 死亡, 分娩, 人口增加, 人口移動, 婚姻等 諸 人口特性의 變化에 關한 統計로서 行政管理, 政策立案 및 評價와 科學的 研究分析에 가장 基本的인 資料이다. 이를 위한 統計制度의 發展은 長期的으로 人口動態申告制度를 發展시키고 短期的으로는 國家政策 資料로서 必要한 國家의 次元의 人口動態統計를 生産할 수 있는 標本 調查制度를 確立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研究事業에서 長期的 研究目的은 우리나라 人口動態統計申告制度의 確立을 위한 意見을 제시하고 現在政府에서 遂行中에 있는 人口動態統計標本調查制度의 發展을 이룩하는데 있다.

이 研究事業의 短期目的은 다음의 네가지 내용을 달성하는데 있다.

첫째, 現在 政府에서 遂行中에 있는 人口統計標本調查結果와 이 調查와는 獨立적인 다른 기관에서의 一時調查를 통한 人口動態의 正確하고 時宜性 있는 資料를 生産하여 人口, 保健 및 기타 相關부서의 行政 및 政策資料를 제공한다.

둘째, 人口動態申告에 관련된 申告率, 知識, 態度 및 申告行為에 관한 資料를 수집하고 現行 人口動態申告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한다.

셋째, 人口動態統計改善方案의 全國규모확대와 적용 가능성을 研究 검토한다.

넷째, 正確한 人口動態統計를 生産 管理하기 위한 政府관련부처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 1.2. 研究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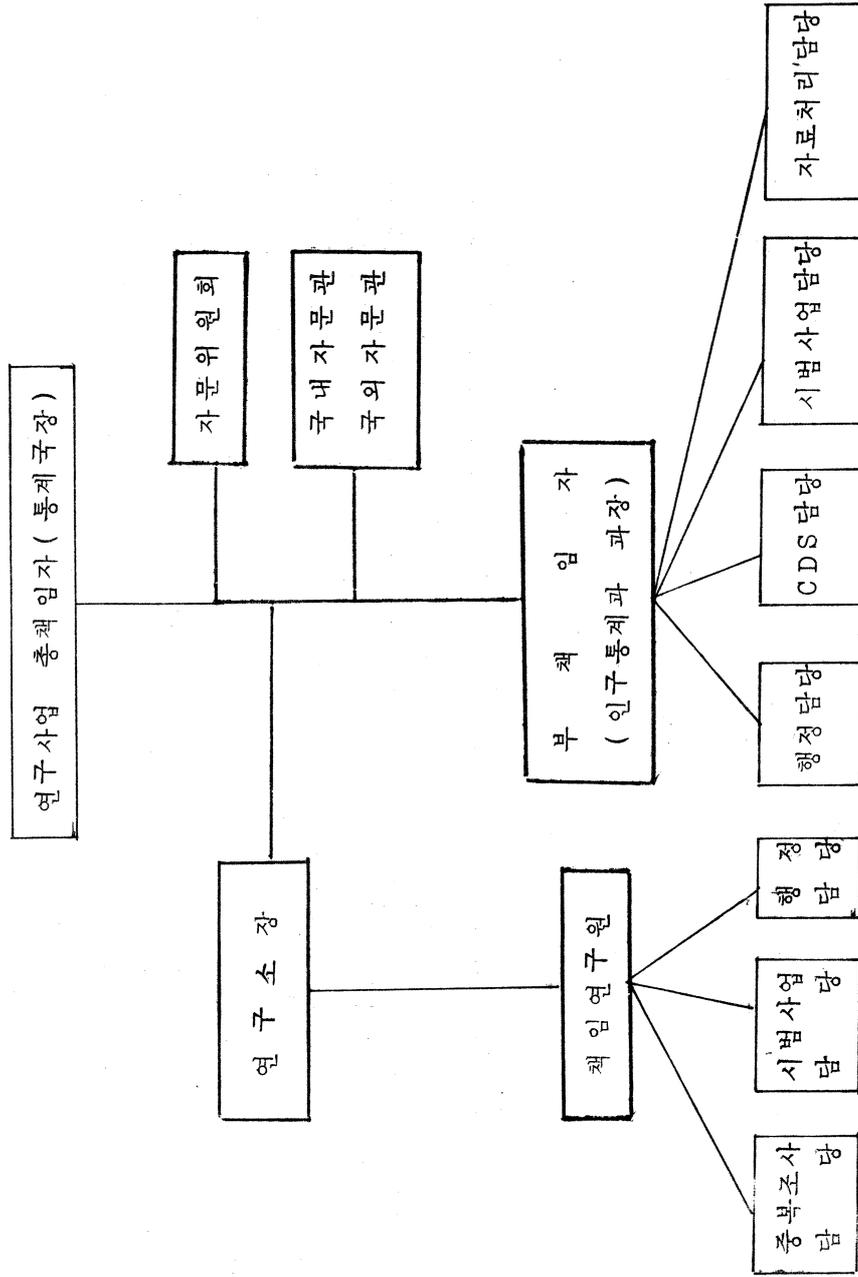
本 事業은 UNFPA 資金에 의하여 經濟計劃院 調查統計局과 延大 大學校 人口 及 家族計劃研究所가 共同 遂行하였다.

經濟計劃院 調查統計局 ( Bureau of Statistis : BOS ) 은 半独立的인 部署 ( Semi-autonomous bureau ) 로 우리나라 政府의 全般的인 國家 統計業務를 管掌하고 있는 中央統計機關이다. 統計局에는 10 個 部署 가 있으며 約 500 名의 中央職員과 約 400 여명의 現地 調査要員이 있다. 統計局은 또한 資料處理에 必要한 施設로 IBM 컴퓨터 370 / MOD 138 과 보조 Soft-ware 가 設置되어 있다.

延大 人口 及 家族計劃研究所 ( Center for Population & Family Planning : CPF ) 는 1968 年 6 月에 設立되어 人口와 家族計劃에 관한 research, training, demonstration, service 등의 活動을 해오고 있다.

이 project 의 manager 는 調查統計局長이며 implementing agency 인 CPF 所長은 여기에서 遂行되어진 모든 일에 對해 責任 을 지고 project manager 에게 報告하였다. 兩 機關의 長은 事業 遂行을 爲해서 各各 assistant manager 를 任命했으며, 兩의 檢

본사업 연구조직



상 각 機關의 專門職員들로 重複調査팀, 示範事業팀, 行政팀 ( administrative support ) 의 세 part 로 組織하여 研究事業을 遂行하였다.

한편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구통계 전문가인 국내자문관 2명과 해외자문관 20명이 참여하였으며, 또 본 연구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諮問을 해주고 관련부처간의 必要한 협조를 제공하는 諮問委員會를 구성하였다. 諮問委員會는 人口統計 전문가들, 통계국의 고위직원들, 내무부, 보사부, 법원행정처의 관련직원들과 시범사업지역인 충청도청 통계과장과 충청남도청 통계과장으로 구성되었다.

### 1.3. 연구사업 집행경과

본 연구사업은 UNFPA 자금 ( ROK/77-P08 ) 의 지원을 받아 1978년 1월부터 1981년 6월까지 42개월간에 집행되었다.

본연구사업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 수행되었는데 하나는 중북조사제도 사업으로서 통계국에서 1972년부터 매달 계속 실시해오고 있는 인구동태표본조사와 이와 대조될 두차례의 특별회고조사를 실시하여 인구동태표본조사를 보완하고 이 두조사를 대조하여 보다 나은 인구동태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동태 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충청북도 청주시와 충청남도 예산군 두 시범지역에서 인구동태신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또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일부로 시범사업전후에 각각 기초조사와 평가조사를 행하는 사업이다.

본연구사업의 집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중복조사사업 집행일정

사 업 내 용	집 행 일 자	집행기관
1. 기본계획작성	1978. 1. 5 ~ 7.31	집행기관
(1) 문헌조사		본연구소
(2) 사업일정표 작성		
(3) 자문위원회 구성		
2. 인구동태표본조사 현황파악	1978. 3. 5 ~ 5.31	"
3. 인구동태표본조사 재조직	1978. 1. 5 ~ 5.31	
조사지침서 재작성 및 교부	1978. 1. 5 ~ 1.31	통 계 국
조사원 훈련	1978. 1. 5 ~ 1.31	"
조사구요도 재작성	1978.1.5~1978.7.31	"
4. 인구동태표본조사 수행	계 속 중	"
5. 1차특별회고조사		
(1) 조사설계	1978. 3. 1 ~ 8.15	본연구소
(2) 조사표 설계	1978. 4.20 ~ 8.16	"
(3) 1차사전조사	1978. 5. 4 ~ 5. 9	"
2차사전조사	1978. 5.29 ~ 6. 4	"
(4) 조사구요도 준비	1978. 6. 1 ~ 7.20	통 계 국
(5) 조사원 훈련	1978. 8.25 ~ 9. 1	본연구소
(6) 현지조사	1978. 9. 2 ~ 10.22	"
(7) 인구동태표본조사와의 대조	1978.11. 6 ~ 12.30	통 계 국
작업		본연구소

사 업 내 용	집 행 일 자	집행기관
(8) 내용검토 및 코딩	1979. 2.16 ~ 4.15	통 계 국
(9) 자료처리	1979.5.1~1980.11.30	"
(10) 자료분석	1981. 1. 5 ~ 5.31	본연구소
6. 2 차특별회고조사		
(1) 조사설계	1979. 4.15 ~ 7. 5	본연구소
(2) 조사표 설계	1979. 5. 1 ~ 6.20	"
(3)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준비	1979. 7 .1 ~ 7.31	"
(4) 조사원 훈련	1979. 8.17 ~ 8.25	"
(5) 현지조사	1979. 8.27 ~ 10. 3	"
(6) 내용검토 및 코딩	1979.10.22 ~ 12.15	"
(7) 인구동태표본조사와의 대조작업	1980. 1.15 ~ 2.28	통 계 국
(8) 자료처리	1980. 2. 1 ~ 11.30	"
(9) 자료분석	1981. 1. 5 ~ 5.31	본연구소

시범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집행일자	집행기관
1. 기본계획작성	1978. 1. 5 ~ 7.31	본연구소
(1) 문헌조사 호적법, 호적신고에 관련된 법, 호적신고 문제점 및 개선책에 관한 여러가지 문헌조사		
(2) 사업일정표 작성		
(3) 자문위원회 구성		
2. 시범지역 선정 및 통보	1978. 4. 1 ~ 4.30	통계국 본연구소
시부에 충북 청주시, 군부에 충남 예산군을 선정		
3. 호적담당공무원 훈련을 위한 워크숍(대전에서 개최)	1978. 6. 3 ~ 6. 4	통계국
4. 호적신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 선정 및 시행	1978.10.1~1979.9.30	"
5. 기초조사		
(1) 조사설계	1978. 5. 1 ~ 5.31	본연구소
(2) 표본설계	1978. 6. 1 ~ 7.10	통계국
(3) 조사표설계	1978. 4.20 ~ 6. 5	본연구소
(4) 사전조사	1978. 5.29 ~ 6. 4	"
(5) 조사원 훈련	1978. 7.27 ~ 7.31	"

사 업 내 용	집 행 일 자	집행기관
(6) 현지조사	1978. 8. 1 ~ 8.25	본연구소
(7) 내용검토 및 코딩	1978.12.15 ~1979.1.20	"
(8) 자료처리	1979. 2. 1 ~1980.11.30	통 계 국
(9) 자료분석	1981. 1.10 ~ 5.31	본연구소
6. 평가조사		
(1) 조사설계	1979. 4.15 ~ 7. 5	"
(2) 표본설계	1979. 7. 1 ~ 8.15	통 계 국
(3) 조사표 설계	1979. 6. 1 ~ 6.30	본연구소
(4) 조사원 훈련	1979.10.22 ~ 10.26	"
(5) 현지조사	1979.11. 5 ~ 11.29	"
(6) 내용검토 및 코딩	1980. 1. 5 ~ 2.20	통 계 국
(7) 자료처리	1980. 3. 5 ~ 11.30	"
(8) 자료분석	1981. 1.10 ~ 5.31	"

## 제 2 장 人口動態統計改善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1961년 5.16 혁명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함으로써 人口統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社会, 經濟發展에서 人口變動은 매우 중요한 變數로 작용하기 때문에 人口動態統計는 社会, 經濟發展을 위한 諸政策樹立에 꼭 필요하다.

人口動態統計는 申告에 의해서 완전하게 生産될 수 있다. 고로 보다 나은 人口動態統計를 얻기 위해서는 신고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5.16 혁명 이후 政府와 관련전문학자들은 인구동태통계개선을 위해 장기적 目的으로는 申告制度를 改善하고 단기적 目的으로는 정확한 人口動態統計生産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로 노력해왔다.

### <政府則의 노력>

1. 政府는 1961년 이래 「人口動態申告強調週間」을 設定하여 啓蒙, 宣傳과 過怠料免除 등을 통하여 申告督勵에 힘써 효과를 거두었다.
2. 1962년에 政府는 統計法을 制定하고 이에 의거해서 「人口動態調査規則」을 經濟企劃完令으로 施行하여 人口動態統計의 法的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3. 1963년부터 1969년까지 經濟企劃完 調査統計局에서 年4회 주기적으로 標本家口調査 ( Sample Household Survey )를 실시하였다.
4. 1972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人口動態標本調査 ( Continuing Demographic Survey )가 실시되고 있다.

5. 몇가지 시험조사 및 특수조사 시행

6. 외국의 전문가 초빙

7. 개선연구위원회의 구성

〈關聯專門機關 및 學者들의 研究勞力〉

人口動態統計改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노력은 다음 3 가지를 들 수 있다.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인구및 가족계획연구소가 USOM 과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AID 研究信託基金의 財政支援으로 1965년 12월부터 1967년 12월까지 2년여간 행한 「韓國家族計劃事業의 支援方案과 正確한 人口動態統計의 把握을 위한 研究」

2. 家族計劃研究院에서 USAID의 財政支援을 받아 1971년 5월부터 1973년 5월까지 25개월간 연구한 「全國保健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改善을 위한 調査研究」

3. 人口問題研究所가 1967년에 연구발표한 「Plans and Programs for Improvement of Vital Statistics」

이외에 人口動態統計改善을 위한 여러학자들의 論文들이 있다.

이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의 연구

이 研究의 目的은 韓國의 農村과 都市에서 人口動態統計를 母子保健事業과 家族計劃事業을 統合하여 동시에 改善하는 可能性을 評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分娩이 의료인이나 의료보조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非衛生的인 條件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임산부들에게 消毒된 分娩介助器具를 提供하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며, 이러한 보급품을 얻기 위하여 예상되는 出生을 報告할 必要性을 造成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分娩介助器具貸与制度를 도입하여 人口動態統計를 改善코자 하였다. 이 制度하에서는 또 介助器具의 배부를 책임지도록 임명된 사람들을 動態事件의 報告人으로 活用하여 出生, 死亡의 報告率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이 研究事業은 1965년 12월 경상북도 金泉道立病院에 人口動態統計 및 家族計劃係를 設立, 現地事業本部로 삼고 1966년 5월부터 1967년 4월까지 1년간 김천시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금릉군 일부지역을 실험지역으로 設定하여 簡易分娩介助器具 配付制度를 실시하였다. 실험지역에는 각 行政里(人口 평균 500명)마다 부락 自願要員으로서의 분만기구관리인을 두어 희망하는 임산부들에게 簡易分娩介助器具의 配付, 無料産前診察券의 발급, 出生兒体重測定등의 서비스, 가족계획의 권장등을 하면서 출생, 사망사건과 임신부의 이름, 주소, 분만예정일등을 매월 현지연구책임자에게 보고케 하였다.

한편 이 실험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직전과 직후에 실험지역과 대조지역에 調査를 실시하였다. 对照地域으로는 실험지역과 마찬가지로 김천시와 금릉군 일부지역에 두종류를 두었는데 하나는 分娩介助器具配付등의 service는 하지 않고 人口動態만 보고하는 報告人을 任命, 配置하여 부락에서 발생하는 出生, 死亡등을 보고케 하는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分娩介助器具配付制度도 행하지 않고 人口動態報告人도 두지 않는 지역이다.

實驗地域과 두 对照地域에서 행한 면접조사와 分娩介助器具管理人和 人口動態報告人の 報告書, 그리고 호적대조를 통해서 얻어진 出生申告率 및 死亡申告率의 差異를 비교함으로써 實驗事業의 結果, 특히 分娩介助器具配付制度가 人口動態報告에 미친 純效果를 評價하였다.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出生報告率의 差異를 보면, 농촌지역에서 管理人이 報告한 出生은 推定된 총출생의 약 90%가 되었으며 对照地域의 人口動態報告者에 의해서 報告된 出生은 推定件數의 약 60%에 불과했다. 그러나 都市地域에서는 分娩介助器具管理인이 報告한 出生報告率과 단순한 人口動態報告者の 出生報告率이 각각 43%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여기에서 농촌지역에서는 分娩介助器具配付制度가 人口動態統計資料를 모집하는데 效果的이며 都市地域에서는 效果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死亡報告率을 통해서 보면 이 제도가 都市와 農村地域 모두에서 死亡報告에 별 영향을 끼친 것 같지가 않다. 分娩介助管理인이 보고한 報告率과 人口動態報告인이 報告한 報告率이 모두 65% 정도로 나왔다.

셋째로, 分娩介助器具配付制度를 導入하건 안하건 人口動態報告人을 任命함으로써 報告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기간동안에 발생되어 보고된 모든 動態事件중에 出生은 92%가 死亡은 85%가 事件發生後 2개월안에 보고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호적에 申告된 動態事件중에 2개월안에 申告된 것은 겨우 20% 불과하였다.

## 2. 가족계획연구원의 연구

이 研究는 既存人口動態申告制度의 테두리내에서 全國의 保健網을 통하여 保健從事員의 活動으로 人口動態事件發生의 파악과 이의 신속한 申告履行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申告制度의 약점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였는데, 하나는 住民들의 人口動態申告에 대한 낮은 관심과 認識水準을 들었고, 또 하나는 主管部처가 갖는 문제으로써 行政의 二元化와 신고담당자의 熱意不足 및 認識不足을 들었다.

그래서 이연구에서는 保健支所의 保健要員을 人口動態改善造成員으로 兼任케 하여 人口動態事件을 해당관청에 보고케 함으로써 행정력을 보완하고, 주민에게 계몽과 권고를 통해서 신고에 대한 認識을 높임으로써 人口動態申告水準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971년 9월부터 1973년 2월까지 18개월간 실시된 造成員活動制度는 全國에서 선정된 25개 지역(시부 5개지역, 군부 20개지역)에 각각 읍,면의 보건소 가족계획요원을 人口動態申告造成員으로 任命하여 이들로 하여금 人口動態事件을 발견케 하고, 신고를 권장하여 그 결과를 해당관청에 보고케 하는 제도이다.

造成員들은 地域社会내에서 일어나는 여러사건에 관한 情報에 밝고 他人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영향력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面長, 里長, 어머니 회장, 의사, 조산원, 통·반장등으로 地域協調網을 構成하여 이를 통해서 人口動態改善活動을 전개했다. 人口動態事件의 발견과 申告勸狀은 일차적으로 이들 地域協調者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造成員은 이들의 情報로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事件의 발생을 확인하고 신고를 권장하며 代理申告의 役割도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

출생의 경우, 出生後 三・七日(21일)이나 100일까지 살 수 있는지 지켜보는 관습이 있고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관습때문에 作名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남존여비사상때문에 女兒의 경우 申告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으며 의무교육을 늦추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신고하기로 한다.

死亡의 경우에는 3일葬, 5일葬의 관습이 있고 死産이나 영아사망의 경우 신고의 필요성을 못느끼며, moon-lit burial의 관습이 아직까지 시골에 남아있다.

이외에 정당하지 못한 출생이나 사망은 신고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동성동본 금혼법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호주 상속 및 유산상속의 복잡성 및 상속세의 부담으로 사망신고를 기피하는 수가 있으며, 그밖에 지리적, 심리적, 개인적 문제로 신고를 않는다.

#### (B) 行政的 側面에서 본 不振理由

申告가 잘 안되는 이유를 行政的 側面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1)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시, 군, 읍, 면의 호적담당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
  - 2) 1965년 5월 서울 흥인동, 경기도 시흥군 소면, 충남 대덕군 유송면의 137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행한 표본조사.
  - 3) 1965년 10월 통계국에서 실시한 충남대덕군의 미신고가구(출생 5,488가구, 사망 797가구)에 대한 사례조사

- ① 관련 高位層이 인구동태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現申告制度를 개선키 위한 적절한 措置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 ② 財政的 支援이 빈약하고 담당직원의 數的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 ③ 주민에 대한 계몽, 선전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현재의 신고강조기간은 일시적 효과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 ④ 罰則의 適用이 안되고, 申告의 強制性을 위한 措置가 없어 法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
- ⑤ 非合法的 埋葬과 火葬을 단속할 강력한 措置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서 연구자는 ① 住民들의 人口動態申告에 대한 認識을 높이고, ② 動態申告와 動態統計에 대한 行政力을 強化하여 ③ 現存하는 人口動態申告制度를 改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가장 理想的인 改善策은 人口動態申告와 戶籍申告를 분리하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法의 테두리안에서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내놓았다.\*\*

1) 申告書의 記載項目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 法院과 調査統計局이 서로 잘 協議하여 꼭 필요한 항목만 記載토록 해야 한다.

---

\*\* 이 논문에 기재된 개선안중 현재 이미 실시되고 있는 몇가지 안은 제외했음.

- 2) 漢字로 記入해야 하는 법을 폐지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表記토록 한다.
- 3) 申告가 지연됐을 때 써야 하는 海태사유서 작성을 없애거나 아니면 “예” “아니오”식의 응답형태로 기입할 수 있는 書式으로 바꾼다.
- 4) 戶籍 및 戶口動態申告의 감독 및 권유를 리, 반, 통장의 의무로 한다. 이들은 出生, 死亡이 발생한 가구를 방문하여, 준비해간 신고용지를 기재케 해서 關係사무소에 전달한다.
- 5) 出生의 경우 出生을 도운 의사나 助産員에게 申告의무를 부여하며, 死亡의 경우에도 死亡證明서를 떼어주는 의사에게 申告의무를 부여한다.
- 6) 埋・火葬허가는 死亡證明서나 死亡申告접수후에 내어준다.
- 7) 非合法的 埋火葬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한다.
- 8) 혼인의 경우, 祭司장주나 이, 반, 통장에게 申告의무를 부여한다.
- 9) 중앙과 지방의 人口動態기구를 승격시킨다. 중앙의 調査統計局의 人口動態係는 人口動態課로 昇格시키고, 지방기구에서는 道の 統計係는 統計課로, 区, 郡, 市에는 통계담당기구를 실시하고, 리・동・면사무소에는 통계요원을 배치한다.
- 10) 人口動態申告에 대한 PR을 향상시킨다. 매달말경에 申告강조일을 설정하여 모든 申告캠페인을 벌이고, 단 매년 10월 첫주간을 주민등록 및 人口動態申告기간으로 하여 캠페인을 벌인다. 그리고 계몽선전에 보건사회부의 保健요원을 활용토록 하고 메스컴을 이용한다.
- 11) 임시방안으로서 지연신고 말소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제 3 장 인 구 동 태 중 복 조 사

#### 3.1, 서 론

호적신고에 의한 우리나라 인구동태통계는 협조적인 국민의 신고에 의지해야 하는데 적기 신고율이 낮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구통계를 제공하기에는 요원한 상태다. 따라서 과도적인 조치로서 전국의 출생·사망·혼인·이혼등의 동태사건과 인구증감에 관한 최근의 자료를 생산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1972년부터 주기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약 280명의 상주조사원에 의하여 전국의 423개 조사구에서 약 20,000 가구를 조사하여 호적신고보다는 더 완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사방법상 응답자의 불완전한 과거의 기억 및 불완전한 조사기간 적용등의 곤란으로 만족할만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사의 완전도가 90%에 이르러 공표를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동태표본조사의 결함을 중복조사방법의 도입에 의하여 보완 개선하고자 한다.

중복조사방법이란 동일한 표본인구에 대하여 두개의 독립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서로 대조함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인구동태통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제 1의 조사로는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매달 실시하고 있는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취하며, 제 2의 조사로는 인구동태표본조사와 똑같은 표본지역에 대하여 일정시점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출생, 사망등에 관한 정보를 회고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집하는 특별회고조사를 수행했다.

제 1 조사에서 얻어진 인구동태사건은 제 2 조사방법에 의하여 얻

어진 동태사건과 개별적으로 대조함으로써 Chandra Sekar Deming 방법에 의하여 양조사에서 누락된 인구동태사건 즉 출생 및 사망 수를 추정하였다. 한 조사에서 확인된 동태사건은 다른 조사에서 확인된 동태사건과 대조됨으로 중복조사제도는 어느 의미에서는 누락조사에 대한 자동확인조사기능을 가지며 자체내에 자료의 질을 보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중복조사방법은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만족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상호확인대조되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인구동태신고조사가 잘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인구동태율을 추정하는데에 가장 신빙성있는 방법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이에 계속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복조사사업에 관련하여서는 1978년과 1979년도 두차례에 걸쳐 특별회고조사를 실시하였다.

### 3.2 人口動態標本調査 (Continuing Demographic Survey)

#### 3.2.1. 沿革

人口動態統計는 경제 사회 후생 교육등 광범위한 국가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 인구억제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국가에서는 간접출산력 측정 및 가족계획실적의 평가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인구동태통계의 주요 Source는 국민들의 신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動態事象 당년도 신고율은 단지 50%를 상회하는 정도이다. 더우기 신고의 정확성마저 없어 우리나라 인구동태통계는 신뢰성이 극히 작아 별로 이용가치가 없는 실정이다.

政府는 5.16 직후인 1962년 점점커지는 인구동태통계의 필요성과 별로 나아지지 않는 신고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고 높은 신고율을 얻기까지 전국적인 수준의 인구동태통계를 얻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표본가구조사 (Sample Household Survey) 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약한 행정력과 지도력으로 인해 1969년에 폐지되었다.

그후 1970년 Eli. Marks가 “ Vital Statistics and Population Growth Measurement, Recommendations on 197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Vital Statistics ”에서 출산력과 사망력을 측정키 위해 표본가구조사의 부활을 제안함으로써 1972년부터 인구동태표본조사 (Continuing Demographic Survey) 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 3.2.2. 調査内容 및 調査方法

인구동태표본조사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및 별거, 사별, 인구이동등을 측정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표의 종류와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인구동태표본조사	가구표	: 24 항목	
		변동보고서	: 6 사항
			1) 가구감소 9 항목
			2) 가구원감소 8 항목
			3) 가구증가 9 항목
			4) 가구원증가 22 항목
	5) 가구표수정요구사항 4 항목		
	인구동태조사표	: 4 사항	
		1) 출생 11 항목	

- 2) 사망 12 항목
- 3) 결혼 7 항목
- 4) 이혼, 별거, 사별등 7 항목

조사원은 먼저 조사구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표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조사통계국으로 보내고 조사구내 가구중에 가구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출생, 사망, 결혼 및 이혼, 별거, 사별등의 動態事件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구동태조사표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조사통계국에서는 보고된 변동보고서와 인구동태조사표를 보고 보관하고 있는 가구표를 수정하고 있다.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1월은 5일부터 10일까지) 조사구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내의 변동사항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면접하여 조사표를 기입한다.

### 3.2.3. 調査組織

1977년 12월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산하에는 지도원 40명, 조사원 440명이 있다. 지도원은 통계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조사와<sup>1)</sup> 함께 인구동태표 본조사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조사원은 251명만이 인구동태표본조사를 담당하고 있다.<sup>2)</sup> 대도시에서는 인구동태표본 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만을 담당하는 조사원이 따로 있으며, 그밖에 중·소도시 군부지역등에서는 다른조사들을 병행하고 있다.

현지조사원은 매달 지난달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당월 10일까지 지도원에게 조사표를 제출하며, 지도원은 접수된 조사표의 내용검사를 하고 조사가 잘못되거나 불확실한점이 있으면 확인조사를 한 후 조사당월 15일까지로 조사표를 우송한다. 중앙부서에서는 다시 내용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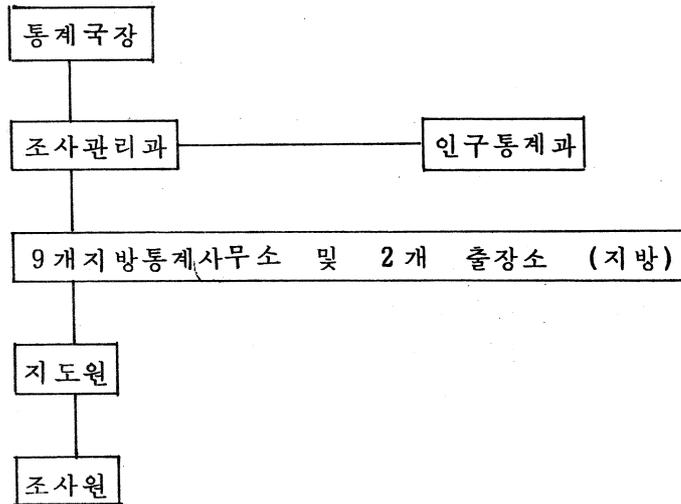
註 1)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조사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태조사, 광공업동태조사, 생산능력조사, 재고, 백화점 통계조사, 도 소매업 동태조사, 건설업 수주 통계조사

2) 인구동태,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원 조직표 ( 1977년 12월 현재 )

통계사무소	조사구 수	조사원 수	가 구 수
서울	119	60	4,409
경기	47	29	2,584
강원	19	14	1,119
충북	15	10	872
충남	24	18	1,589
전북	22	15	1,303
전남	45	28	2,422
경북	55	35	3,129
경남	76	42	3,563
인천	16	8	583
강릉	9	7	544
안동	14	10	1,061
마산	24	15	1,371
제주	5	3	279
계	422	251	20,980

사와 확인조사를 한 후 내용분류 및 집계를 하고 있다.

인구동태표본조사의 관리체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3.2.4. 표본설계

##### (1) 표본의 추출

###### ① 인구·주택센서스 실시 표본조사구의 이용

현재 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구표본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태표본조사, 도시가계조사)를 위한 표본지역은 1975년 인구·주택센서스의 보통조사구, 육지한지조사구 및 섬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하였으며, 가구표본조사의 성격상 기숙사 및 숙박업소 조사구, 특수 사회시설조사구, 수면조사구 및 준조사구는 추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센서스 당시에 보통조사구, 육지한지조사구 및 섬조사구 중에서 실시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이들 실시표본조사구에서는 기본 항목에 추가해서 경제활동상태, 인구이동, 출산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자료

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들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에서 가구표본조사의 표본지역을 추출하였다.

② 지역적 층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다음과 같이 6개층으로 분류하였다.

제 1 층 - 서울특별시

제 2 층 - 부산직할시

제 3 층 - 대구시

제 4 층 - 기타 도청소재지 (수원시, 춘천시, 청주시, 대전시, 전주시, 광주시, 제주시) 및 중도시 (인천시, 마산시)

제 5 층 - 기타 소도시 (23)

제 6 층 - 군부

③ 일부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의 제외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는 35개시 및 9개도 군부의 44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추출률로써 행정구역부호 및 조사구번호 순에 의하여 계통추출되었으므로 4층, 5층, 6층에서는 동일층에 포함되는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의 추출률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된다. 따라서 동일층에 포함되는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의 추출률을 같게 하기 위하여 4층, 5층, 6층에서는 각각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의 추출률이 가장 작은 지역을 기준지역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 해당층에 포함되는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의 추출률이 기준 지역의 추출률과 같게 되도록 일부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를 행정구역 부호 및 조사구번호 순으로 계통추출하여 제외하였다.

④ 층별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의 분류

가) 제 1 층 - 제 5 층에서의 분류

시부지역인 제 1 층부터 제 5 층에서는 각 층별로 센서스 실사 표본조사구를 취업자의 1 차 산업 종사율, 2 차 산업 종사율, 3 차 산업 종사율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6 개의 집단 순으로 분류하였다.

제 1 집단 : 1 차산업 > 2 차산업 > 3 차산업

제 4 집단 : 2 차산업 > 3 차산업 > 1 차산업

제 2 집단 : 1 차산업 > 3 차산업 > 2 차산업

제 5 집단 : 3 차산업 > 1 차산업 > 2 차산업

제 3 집단 : 2 차산업 > 1 차산업 > 3 차산업

제 6 집단 : 3 차산업 > 2 차산업 > 1 차산업

여기서 제 1 집단은 각 산업 종사율의 크기가 1 차, 2 차, 3 차, 순으로 되는 조사구의 집단이며, 제 2 집단은 1 차, 3 차 2 차의 순으로 되는 조사구의 집단이다.

그리고 각 집단내에서는 다시 1 차산업 종사율, 2 차산업 종사율, 3 차산업 종사율, 주택 소유가구율, 주택율, 음식, 숙박업 종사율의 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를 재분류하였는데, 각 집단별로 이들 조사구수에 따라 재분류 자료중 일부 자료만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재분류 기준도 달리하였다.

#### 나) 제 6 층에서의 분류

군부지역인 제 6 층에서는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를 우선 읍부지역의 순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읍부지역에서는 앞서와 같이 6 개의 집단 순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내에서는 다시 1 차산업 종사율, 2 차산업 종사율, 3 차산업 종사율의 자료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때 재분류 기준은 집단의 내용에 따라 달리하였다. 또한 면부지역에서는 행정구역부호에 의한 9 개도의 순으로 분류하여 각 도에서는 앞서와 같이 6 개의 집단순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서는 다시 1 차산업 종사율, 2 차산업

종사율, 3차산업 종사율의 자료로 재분류하였으며, 재분류 기준은 집단의 내용에 따라 달리하였다.

⑤ 층별 조사원수의 배분 및 표본지역 수의 결정

가구표본조사를 위한 조사원 수는 행정 예산면에서 280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들을 각층에 배분하는데는 층별 추정가구수 (층별 센서스 실사표본조사구의 가구수에 의하여 추정)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층별로 표본지역수를 결정하는데는 시부지역 (제1층~제5층)에서는 1명의 조사원이 원칙적으로 2개의 표본지역을 담당하고 군부지역 (제6층)에서는 1명의 조사원이 1개의 표본지역을 담당토록 하는데 이에 따라 제1층 (서울특별시)에 119개 지역, 제2층 (부산직할시)에 42개 지역, 제3층 (대구시)에 22개 지역, 제4층 (기타 7개 도청소재 및 2개 중요도시)에 53개 지역, 제5층 (23개 소도시)에 48개 지역, 제6층 (군부지역)에 138개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⑥ 조사구의 추출 및 가구수 조정

각 층별로 센서스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로서 결정된 수의 조사구를 제통추출하였다. 그런데 1명의 조사원이 지정된 기간내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구수는 70가구~80가구 정도이며, 인구증가에 의한 가구증가로 동일표본 지역을 장기간 사용하면 표본지역 내의 가구수도 증가하게 되므로 조사구당 센서스 가구수가 70가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조사구에서는 센서스 가구수로 70가구만 포함 되도록 일부 지역을 제외하여 경계선을 조정하였다. 실제적으로는 센서스 당시의 조사구요도와 가구명부를 수정, 보완하여 재작성 하였으며, 각 조사구의 기준가구수를 70가구의 센서스 가구수로 하여 가구명부 재작성 결과의 가구수에 따라 <가구명부 재작성 결과의 가구수 × 기

준 가구수 (원칙적으로 70 가구) ÷ 센서스 가구수 > 의 가구수가 조사구에 포함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였다. 이때 센서스 가구수가 70 가구 미만으로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는 조사구에서는 센서스 가구수를 70 가구로 할 수 없으므로 경계선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대신 70 가구에서 미달되는 가구수 만큼 센서스 가구수가 70 가구 이상인 조사구에 할당하여 센서스 가구수가 70 가구 이상인 조사구에서는 기준 가구수를 70 가구에서 할당된 가구수 만큼 증가시켜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정 결과에 의하면 조사구당 센서스 가구수는 평균 70 가구가 된다.

⑦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구동태표본조사의 표본

시부지역의 조사구에서는 가구수가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2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그중 임의의 1 개구역을 인구동태 표본조사 및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표본지역으로 하였으며 군부지역의 조사구에서는 조사구 자체를 인구동태 표본조사 및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표본 지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표본지역 내에서는 전수 조사로써 자료를 수집하고있다. 결과적으로는 총추출률이 1 / 349 인 자체 가중표본이 된다.

3.2.5. 인구동태표본조사 개선방안

1. 중복조사 방법에 의한다면 표본조사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표본조사의 출생·사망조사 완전율은 95% 이상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의 투자는 그 효율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보다는 인구학적인 방법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2. 표본설계는 1975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표본 프레임으로 하고 2차 (최종) 추출단위를 조사구로하여 조사구 (혹시그먼트) 내의 모든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표본은 대표성을 잃고 있으며(특히 시부, 군부비율과 인구이동) 응답자의 저항도 심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표본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현재와 같은 상주조사원 제도는 조사통계국이 잘 활용한다면 큰 비용의 추가없이 가구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 사회, 경제, 인구 및 보건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인구동태표본조사, 사회지표조사등은 상당한 조사항목의 중복등이 있으므로 통계국은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조사원 업무량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

5. 이러한 조사내용의 중복은 근본적으로 이들 각조사의 업무가 각과에 분배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각 가구조사 관련업무를 한데 모아 사회조사과(가칭) 등으로 업무와 기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6. 현지 상주조사원제도는 많은 조사원이 분산되어 있어 조사원의 조사활동지도 감독에는 매우 불리한 조직이므로 특히 지방지도원 및 본부담당직원들에 의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지금까지 조사된 상당히 많은 자료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분석등을 담당할 요원의 양성과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3.3 人口動態特別回顧調査

#### 3.3.1. 1978년도 조사

##### (가) 調査組織

1차 人口特別回顧調査는 1978년 9월 3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행하여졌다. 이 조사는 각각 조사원 3명 지도원 1명으로 구성된 22개 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사원 66명중 51명은 인터뷰에 의하여 본연구소에서 선발했고 나머지 15명은 조사통계국 직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최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여자들이었다. 지도원 22명은 본연구소에서 선발한 4명의 여자지도원을 제외하고는 18명 모두 조사통계국 직원이었다. 이 중 2명이 여자였고 16명은 남자였다. 선발된 조사요원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조사요원의 특성

인원수	직업	성별	교육정도	조사경험
<u>조사원</u>				
19	통계국	여	고졸	없음
11	없음	"	대졸	있음
7	"	"	초급대졸	있음
1	"	"	초급대졸	없음
24	"	"	고졸	있음
8	"	"	고졸	없음
<u>지도원</u>				
3	통계국	남	대졸	있음
13	"	"	고졸	"
2	"	여	고졸	"
2	연구소	여	대졸	"
2	"	여	고졸	"

이들 조사원과 지도원들은 7일동안 조사실습에 중점을 둔 훈련을 받았으며, 이중 하루는 조사팀별로 현지에 나가서 지역확인부터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 가구방문등 실제조사시에 해야 될 모든 절차를 그대로 밟는 실습을 하였다.

실제 조사에서 각 조사팀은 본연구소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날짜와 지역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시켜 나갔다.

본연구소와 통계국의 직원들로 짜여진 순회지도팀은 지역단위로 조사팀을 순회하면서 조사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조사의 질적인 관리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일정에 맞추어 현지조사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였다.

#### (나) 調查標本

본조사의 표본은 경제계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표본과 동일하여 인구동태표본조사의 모든 조사구내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다) 調查方法 및 調查內容

이 조사는 조사통계국의 인구동태표본조사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최대한의 독립적 조사를 위해서 지도원은 조사구 경제확인을 위해서 준비한 CDS요도 및 가구명부를 참조만 하고 CDS의 상주조사원이나 지방통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사에 임하기 전에 새로운 요도와 가구명부를 작성하였다.

지도원은 새로 작성한 가구명부를 보고 조사원에게 면접할 가구를

할당하였다.

본조사는 가구 및 가구원에 관한 것들을 묻기 때문에 조사응답자는 일차적으로 그 가구의 주부로 정하였으며, 단 보조질문표인 출산력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인에게 직접 묻도록 하였다.

1차조사의 목적은 기초인구와 그 인구학적 보건현황, 인구동태와 그 특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인구동태율을 산출하기 위한 부수적 목적이 있는 부인의 출산력 조사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조사표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 < 제 1 장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
- 거주시기
- 성 별
- 생년월일
- 6 세이상의 교육정도
- 부모생존여부
- 15 세이상의 배우자관계

#### < 제 2 장 > 출생·사망에 관한 사항

##### < 출생기록표 >

- 출생아 이름
- 출생아와 가구주와의 관계
- 모의 이름

- 출생년월일
- 성 별
- 출생아 생존여부
- 출생아 동거여부

< 사망기록표 >

- 사망자의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
- 성 별
- 사망년월일
- 사망당시 연령
- 사망당시 배우관계

< 제 3 장 > 건강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유병여부 및 유병기간
- 주치료처 및 이용회수
- 치과이용회수
- 부상여부 및 시기, 부상당한 장소, 부상부위
- 수술여부 및 시기, 수술부위
- 입원여부 및 시기, 입원기간, 입원이유
- 심·신 장애여부

< 제 4 장 > 가구의 특성

- 가구주의 출생지
- 가구주의 성장지

- 가구주의 직업 및 월평균 수입
- 기타 가구원의 직업 및 월평균 수입
- 가구의 월평균 총수입
- 농사여부 및 농사규모
- 주택소유형태 및 사용건평, 사용방수
- 문화기구 소유여부

보조질문표 : 출산력 조사

- 동거자녀수
- 별거자녀수
- 사망자녀수
- 정상출생아 총수
- 출생아 ; 출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이름, 사망년월일, 수유기간,  
출생순위
- 비출산 ; 임신년도, 임신기간, 임신결과, 임신순위
- 총임신회수
- 쌍생아 출산회수
- 인공유산회수
- 기타 태아손모회수 (자연유산, 사산)
- 현재 임신
- 정상출생아 총수

3.3.2. 1979년도 조사

(가) 調査組織

2차 인구특별회고조사는 1979년 8월 27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행하여졌다. 이 조사 역시 1차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원3명

과 지도원 1명으로 구성된 22개 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사원 55명과 지도원 14명은 본연구소에서 인터뷰에 의해서 선 발했고 나머지 조사원 11명과 지도원 8명은 통계국 직원으로 하 였다. 이들은 모두 고졸이상의 여자들로서 이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조사요원의 특성

인원수	직업	교육정도	조사경험
<u>조사원</u>			
34	무	고졸	유
10	무	고졸	무
5	무	대졸	유
3	무	대졸	무
11	통계국	고졸	무
3	무	초대졸	유
<u>지도원</u>			
5	무	고졸	유
9	무	대졸	유
8	통계국	고졸	유

이들 조사원과 지도원들은 6일간 1차조사때와 같은 훈련과 실습을 하였으며 실제 조사수행이나 조사지도감독 역시 1차조사때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나) 調查標本

2 차조사의 표본 역시 1 차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모든 조사구내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다) 調查方法 및 內容

2 차조사의 조사방법과 절차는 1 차조사와 똑같은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다만 줄어든 조사기일때문에 작업량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도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CDS 요도를 조사구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하였다.

2 차조사의 내용은 1 차조사와 비교가 될 기초인구와 그 인구학적 특성과 인구동태 및 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밖에 인구가동과 가입여성의 피임실태 그리고 정확한 인구동태를 파악키 위한 최근의 정상출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제 1 장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
- 성 별
- 생년월일
- 6 세 이상의 교육정도
- 15 세 이상의 배우관계
- 인구가동에 관한 사항

< 제 2 장 > 출생, 사망에 관한 사항

< 출생기록표 >

- 출생아 이름
- 가구조와의 관계
- 모의 이름
- 출생년월일
- 성 별
- 출생아 생존여부
- 출생아 동거여부

< 사망기록표 >

- 사망자 이름
- 가구조와의 관계
- 성 별
- 사망년월일
- 사망당시 만연령
- 사망당시 배우관계

보조질문표 : 기혼가임 부인대상

- 최종 정상출생아 생년월일
- 현재 임신여부 및 임신기간
- 임신가능여부 및 불가능 이유
- 피임실시여부 및 피임방법, 피임안하는 이유
- 1978년 이후 정상출생아에 관한 사항

### 3.4. 중복조사방법에 의한 출생·사망추정

#### 3.4.1. 대 조 대 상

대조방법, 대조기록표, 실제대조작업 과정등의 설계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문제를 추구하였다. 즉 두조사(CDS과 SRS)의 시점, 접근방법, 조사대상의 정의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조대상이 되려면 두조사의 조사대상 정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건만이 대조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두조사에서 공동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출생·사망건을 엄격히 구분한 다음, 미출생, 사망건에 대해서만 동일한 출생건인지 여부(대조, 비대조)를 결정토록 하였다. 이 대조대상여부 결정에는

- 조사구내의 가구(표본가구)에서 발생한 것인가?
- 출생, 사망의 발생시기는 조사기간에 해당되는가?
- 가구(혹은 해당가구원)의 전입시기와 비교하여 출생, 사망이 전입이후에 발생한 것인가?
- 가구(혹은 해당가구원)의 전출시기로 보아 CDS에서 조사된 다음 SRS이전에 전출하지 않았는가?

등의 기준을 적용, 두조사에서 조사된 출생, 사망건에 대하여 모두 일일이 심사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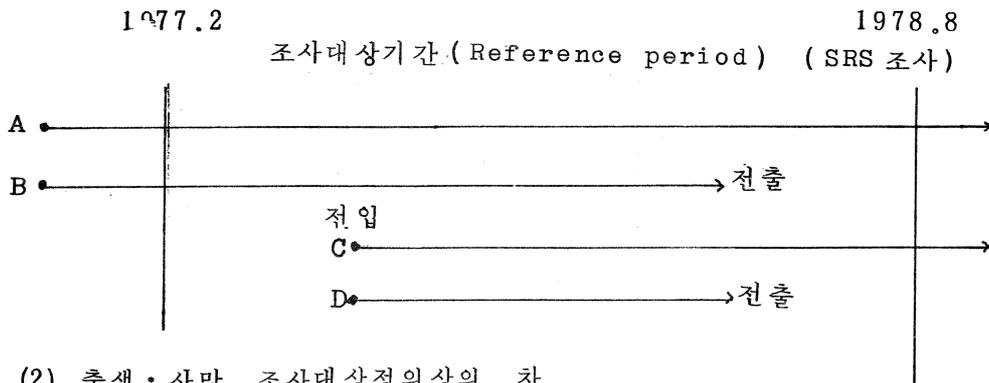
대조대상 결정에 있어 문제가 되는 "표본조사구내의 전출입시기와 조사기간 문제" 그리고 "CDS와 SRS간의 조사대상의 차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구내의 전출, 입시기와 조사대상기간

전출·입시기와 조사대상기간을 연관시켜 CDS 및 SRS 조사대

상인구의 표본조사구에서의 거주형태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 그림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A와 C만이 CDS와 SRS에서 모두 조사된 사람이므로 이 A와 C가구에서 발생한 출생, 사망만을 대조대상으로 보았다. 다만 A와 C의 경우 그 거주기간이 다르므로 그 대조대상기간도 달라진다.



(2) 출생·사망 조사대상정의상의 차

- SRS에서 출생·사망의 조사대상은 그 조사대상부인(혹은가구)에게 조사기간내 발생한 모든 출생·사망이 되며, 출생·사망 당시 가구의 거주지, 출생이나 모의 사망여부등은 고려치 않는다.
  - CDS에서 조사대상은 조사월말일 현재 표본조사구내에 소재하는 가구에서 지난 1개월동안에 발생한 출생·사망건이다. 즉 출생의 경우 산모의 상주지(예외의 경우있음), 사망의 경우는 사망자의 상주지가 동조사구내에 있음을 뜻한다.
- 단, 그 가구가 당해 조사기간내에 조사구로 전입한 경우에는 이전 거주지에서 이 조사기간내 출산이 있었다면 그 출생은 조사대상이 되며, 반대로 조사구내에서 살았더라도 조사기간내

출산후 전출하였다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중복조사 대조대상의 정의로는 SRS 당시 조사구내 상주한 부인(혹은 가구)에게 조사기간중 혹은 조사구에 전입한 달로부터 SRS 조사지점까지의 기간중에 출생한 모든 출생·사망을 대조대상으로 정의 하였다.

#### 3.4.2. 대조·비대조의 결정

CDS와 SRS서 조사된 출생·사망이 대조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음 단계로는 두 조사에서 조사된 출생·사망을 서로대조하여 양조사에서 다 발견된 것과 한조사에서만 발견된 것(비대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SRS와 CDS는 서로 독립된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일지라도 조사원·응답자·질문방법등의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두조사에서 조사된 어떤 출생·사망이 동일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조항목과 판정기준을 필요로 한다.

1978년 및 1979년 중복조사에서 사용된 대조항목과 그 판정기준은 표 1과 같다.

대조작업의 실제과정을 보면 대조대상여부 및 대조, 비대조의 판정은 먼저 조사통계국 대조요원이 대조대상의 정의 및 대조기준과 그 허용한계를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판정토록하고 대조요원이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지도요원(통계국 및 연대 조사기획요원)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기준등에 구속없이 판정토록 하였다.

< 표 1 > 출생·사망 대조항목과 그 허용한제

대 조 항 목	허 용 한 제
<b>출생</b>	
출생아 성명	성은 반드시 일치, 이름은 다를 수 있음
출생년월	2개월이내 (음력과 양력의 차이를 고려)
어머니와 동거여부	참고사항
성별	반드시 일치
모의 성명	성은 반드시 일치, 이름은 최소한 음이 유사하여야함
출생년월	출생년도가 2년이내
전입일자	전입·전출일자의 차이가 대조대상여부판정에 결정요인이 될 경우, 1개월의 차이
전출일자	일지라도 1차 및 2차확인조사에 의하여 확인함
가구주(혹은 부)의 성명	참고사항
<b>사망</b>	
사망자 성명	성은 반드시 일치, 이름은 최소한 음이 유사하여야함
성별	반드시 일치
사망년월일	2개월이내
사망당시연령	2세이내
배우관계	참고사항
전입일자	조사대상 및 대조대상여부판정에 결정요인이 될 경우 “월”이 반드시 일치하여야함
전출일자	대조여부 판정에는 참고항목
가구주 성명	참고사항

두 조사내용의 지도요원도 판정할 수 없고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계국의 지방조사요원 조직망을 통하여 1차 확인하였다. 1차 현지확인 결과는 모든 확인항목에 대하여 ① SRS 옳음 ② CDS 옳음 ③ 두조사 모두 틀림 ④ 전출등으로 확인불능으로 구분하여 ②와 ④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직원 혹은 각지방의 책임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2차확인하였다.

### 3.4.3. 추정 방법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정의등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표본인구가 다르고 두 조사의 표본조사지역은 일치하지만 또한 중복 추정방법 (Chandra Sekar-Deming Formula) 을 사용키 위해서는 통상적인 추정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두 추정방법을 쓸 수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1) 추정 방법 I

대조대상이 되는 인구 (혹은 출생·사망) 에 거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구체적 방법이 있다.

- 분모가되는 인구를 대조대상 출생·사망의 개념과 일치토록 조정하는 방법, 이때의 표본인구에 적용할 가중치  $w_p$  는

$$w_p = \frac{\text{조사구내 거주기간 (개월)}}{\text{조사대상기간 (개월)}}$$

- 표본인구는 조사인구를 이용하고, 대조대상출생·사망전수를 표본인구의 개념과 일치토록 조정하는 방법, 이때의 대조대상

출생·사망건수에 적용할 가중치  $W_p$ 는?

$$W_p = \frac{\text{조사대상기간(개월)}}{\text{조사구내 거주기간(개월)}} = \frac{1}{W_p}$$

단 조사구내 거주기간이 조사대상보다 길때  
가중치는  $W_p = W_p = 1.0$

## (2) 추정 방법 II

대조대상 출생·사망건수만을 이용 중복추정방법을 통하여 두  
조사의 누락율을 구하여 각조사자료를 보완하는 방법  
이번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작업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정방법  
II를 이용하였으며 추정과정 및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3.4.4. 결 과

두 조사결과를 대조하고 이에 Chandra Sekar-Deming 추  
정공식을 적용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3-2 과 같다.

<표3-2> 대조결과에 의한 총출생 사망수 추정

조사연도	대 조 대 상 건 수			양 조 사 누락추정	추 정 총 태 건 수
	CDS 및 SRS	CDS 만조사	SRS 만조사		
	(1)	(2)	(3)	(4)	(5)
1978년 중복조사					
출 생	1373 (77.1)	91 ( 5.1)	298 (16.7)	2020 ( 1.1)	1782 (100.0)
사 망	440 (68.8)	88 (13.7)	93 (14.5)	1919 ( 3.0)	640 (100.0)
1979년 중복조사					
출 생	1395 (86.7)	70 ( 4.4)	136 ( 8.5)	7 7 ( 0.4)	1608 (100.0)
사 망	446 (81.5)	61 (11.2)	35 ( 6.4)	5 5 ( 0.9)	547 (100.0)

\*대조대상기간 1979 : 1978.8 ~ 79.7 ( 1년간)  
1978 : 1977.9 ~ 78.8 ( 1년간)

이 대조결과에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이를 요약한다면 :

(1) 1978년 추정총건수에 의하여 평가된 CDS의 조사완전율은 출생이 82.2%, 사망이 82.5%이었다.

(2) 1979년의 CDS의 조사완전율은 출생 91.1%, 사망 92.7%로서 1978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1978년 중복조사의 영향과 1979년 조사원의 지위 및 복무여건이 향상된 데서 오는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3) SRS에서 발견된 CDS의 출생, 사망 누락건은 1978년의 경우 총추정치의 15~17%, 1979년에는 6~9%씩을 차지하였다.

(4) 1978년 1979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할때 사망은 특별조사우위 (CDS 13.7%대 SRS 14.5%)에서 CDS 우위 (CDS 11.2%대 SRS 6.4%)로 조사여건등의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출생은 그 차는 크게 감소했으나 SRS 우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출생조사는 조사방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5) Chandra Sekar-Deming 공식에 의해 추정된 양조사 누락건은 1978년의 경우 전체추정건수의 1~3%, 1979년 1%이하로서 별로 중요치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중복조사방법에서 크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조사간의 독립성 유지문제가 이번 사업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록 II는 대조결과 얻어진 CDS 누락율을 CDS 자료에 적용하여

출생 및 사망율을 추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CDS의 누락형태를 감안하여 연도별, 성 및 연령별로 별도로 CDS 누락율을 구하여 적용하였다. 누락의 패턴을 요약한다면

① 출생의 경우 모의 연령 및 출생아 성별로 누락율에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1979년의 경우 15~19세 부인에서 다소 높은 누락율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②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않으나,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그 누락율이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체로 사망연령이 높을수록 누락확율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아사망의 조사완전율은 1978년 54%, 1979년은 65%로서 누락율이 다른 연령계층의 2~6배에 달한다.

### 3.5 특별회고조사의 주요결과

#### 3.5.1. 기초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 (1) 인구구조

특별회고조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태 표본조사의 표본조사구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978년과 1979년에 실시되었다.

한 시점에서의 성별, 연령별 인구수와 인구구조는 여러가지 조사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1978년도 조사에서의 조사대상가구는 모두 22,134가구였으며, 이 중에서 21,856가구(98.7%)가 면접조사되었고 278가구(1.3%)는 응답자 부재 및 면접거절로 조사되지 못했다. 조사된 가구중에

21,578 가구 ( 98.7 % ) 가 면접완료되고 278 가구 ( 1.3 % ) 는 완료되지 못하였다.

1978 년도 조사에서 발견된 인구수는 총 100,007 명이었으며,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는 대체로 1975 년도 센서스의 결과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와 유사하게 변형된 피라미트형 구조를 보였다.

1978 년도 인구구조는 < 표 1 > 과 같다.

한편 1979 년도 조사에서의 조사대상가구는 모두 23,717 가구였으나 이중 23,315 가구 ( 98.3 % ) 가 면접되어 23,146 가구 ( 97.6 % ) 가 면접완료되었고 169 가구 ( 0.7 % ) 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나머지 402 가구 ( 1.7 % ) 는 응답자 부재나 면접거절로 조사되지 못했다.

1979 년도 조사에서 발견된 인구수는 104,090 명이었으며, 이들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는 1978 년도의 인구구조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1978 년도의 조사와는 1 년간의 간격이므로 차이가 기대되지 않는다.

1979 년도 인구구조를 지역별 ( 서울지역, 기타 도시지역, 농촌지역 ) 로 나누어 표시하면 < 표 2 > 와 같다.

TABLE 1 Population Structure: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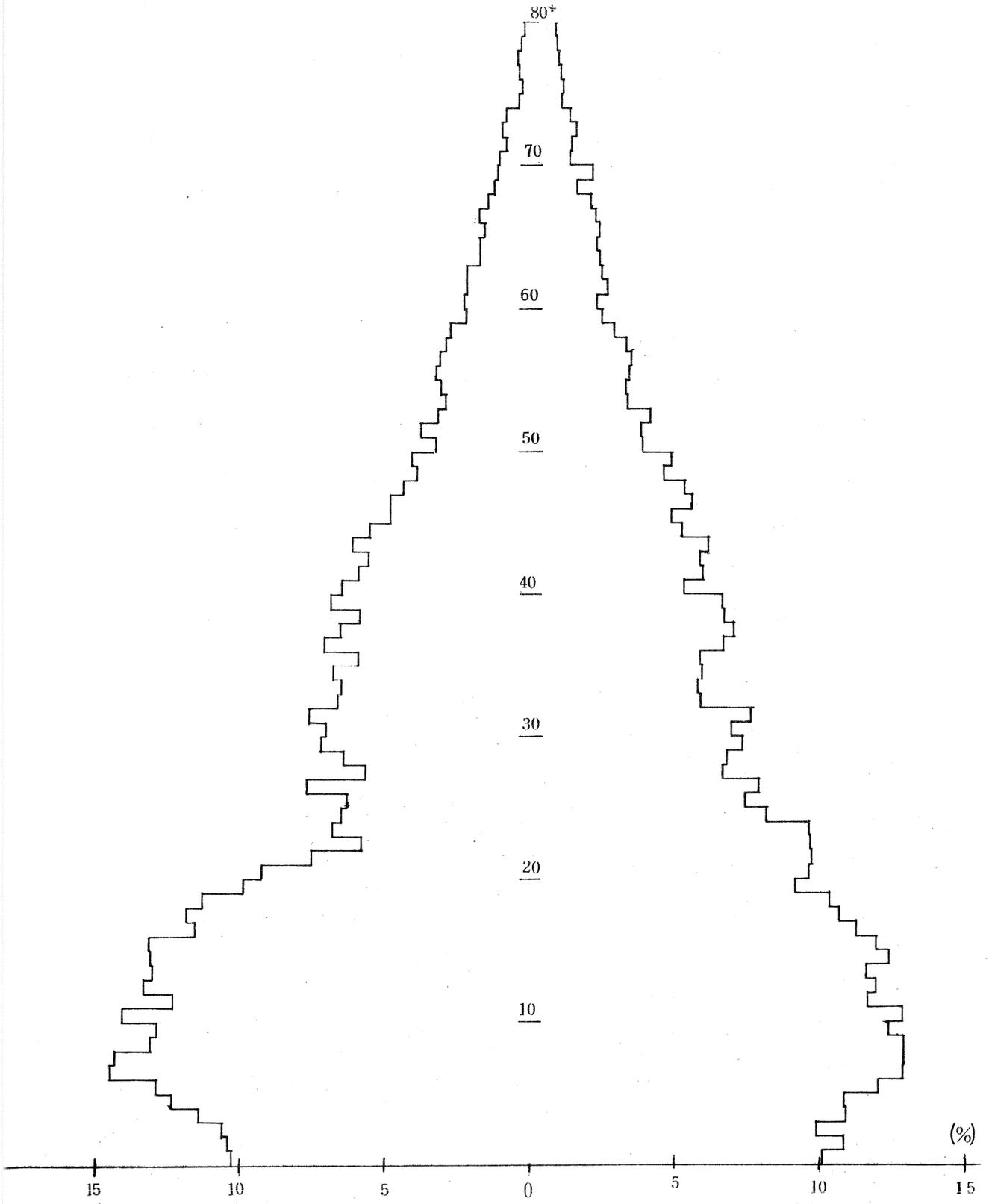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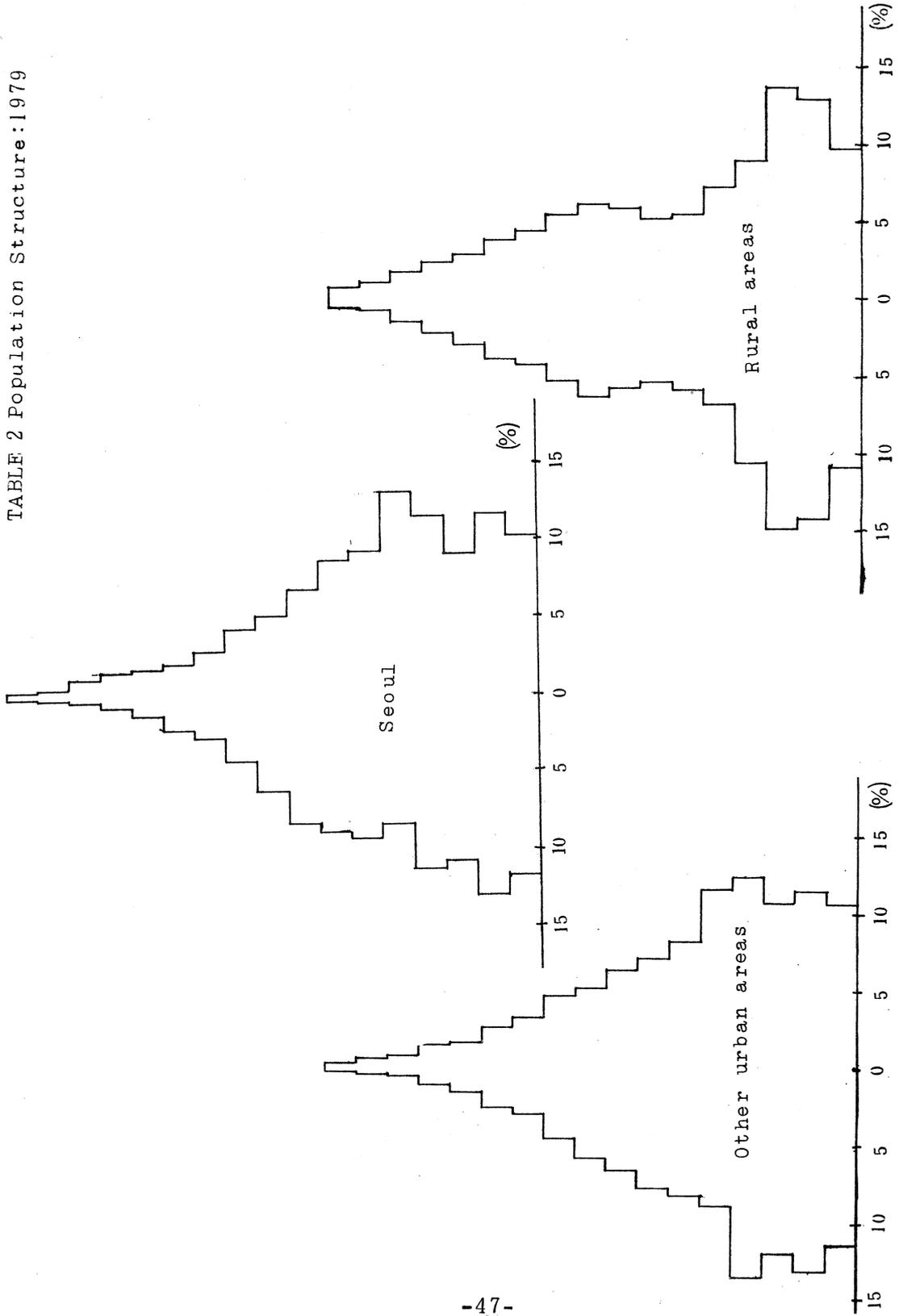


TABLE 2 Population Structure:1979



## (2) 調査人口의 1975年度 總人口數와 比較

1978年度 및 1979年度에 調査된 男女의 性別 및 年齡別 人口의 構成비를 1975年 우리나라가 總人口調査時 集計된 性別 및 年齡別 人口構成比와 比較하여 보았다. <表 3 参照>

男子人口의 경우, 1975年度 總人口調査에서는 15세 미만의 소년인구의 比率이 39.3%인데 대하여, 1978年度 調査의 結果에서는 38.6%, 1979年度 調査의 結果에서는 37.8%였으며, 65세 이상의 老人人口構成比에서는 1975年度 總人口調査에서 2.7%인데 대하여 1978年度 調査結果는 3.1%, 1979年度 調査에서는 3.1%였다.

女子人口의 경우, 1975年度 總人口調査에서 15세미만의 人口構成比는 36.9%인데 대하여 1978年度 調査結果는 35.1%, 1979年度 調査에서는 34.0%였다.

老人人口의 構成比는 65세이상의 1975年度 總人口調査結果는 4.4%인데 대하여, 1978年度 調査結果는 5.1%, 1979年度 調査結果는 5.1%를 보였다.

## (3) 性 比

1978年度 및 1979年度에 調査된 人口의 年齡區間別 (5세간격) 性比를 計算하여 1975年度 總人口調査結果에서 算出된 性比와 比較하였다 (表 3 参照)

20세 미만의 年齡區間에 있어서는 1975年度 總人口調査結果에서 얻어진 性比와 같은 水準이나, 20~24세, 25~29세의 年齡區間에 있어서는 1975年度 總人口調査結果보다 兩調査結果에서 얻어진 性比는 男子가 적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特히 1979年度 調査結果는

<表3> Comparison of survey population with 1975 census population

AGE	MALE			FEMALE			SEX RATIO		
	1975	1978	1979	1975	1978	1979	1975	1978	1979
0 ~ 4	12.6	11.3	11.2	11.8	10.5	10.1	107.4	104.6	106.7
5 ~ 9	13.2	13.8	13.6	12.5	12.6	12.2	107.0	107.1	107.8
10 ~ 14	13.5	13.5	13.0	12.6	12.0	11.7	107.8	109.0	107.7
15 ~ 19	12.2	11.8	11.6	11.7	10.6	10.6	105.0	108.1	106.5
20 ~ 24	9.2	7.4	7.7	8.8	9.3	10.0	106.6	77.0	75.4
25 ~ 29	7.3	6.8	7.3	7.2	7.7	7.3	102.9	93.2	97.7
30 ~ 34	6.5	6.8	6.9	6.3	6.4	6.7	103.5	103.4	99.5
35 ~ 39	6.4	6.6	6.5	6.3	6.5	6.3	103.1	98.5	99.7
40 ~ 44	5.1	6.1	6.0	5.3	5.7	5.6	96.8	104.2	103.0
45 ~ 49	3.7	4.5	4.7	4.4	5.0	5.1	86.8	88.2	90.6
50 ~ 54	3.3	3.4	3.4	3.6	3.6	3.8	92.9	89.7	86.5
55 ~ 59	2.6	3.0	3.0	2.8	3.1	3.1	91.7	93.9	93.0
60 ~ 64	1.9	2.1	2.0	2.3	2.4	2.4	83.0	85.1	83.7
65 ~ 69	1.3	1.5	1.5	1.8	2.1	2.1	73.4	71.5	68.9
70 ~ 74	0.7	0.9	0.9	1.2	1.4	1.4	61.0	64.3	59.9
75 ~ 79	0.4	0.4	0.4	0.8	1.0	0.9	50.2	40.4	47.3
80 ~ 84	0.2	0.2	0.2	0.4	0.4	0.5	40.7	37.9	31.6
85 +	0.1	0.1	0.1	0.2	0.2	0.2	33.4	26.2	30.6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34 세에 이르기까지 男子의 性比水準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1979 年度 및 1978 年度の 兩調査의 調査方法은 調査當時의 常住人口 ( de jure population ) 를 조사하였으므로 調査當時 調査地域에 常住하지 않은 軍人 또는 기타 사유의 장기 進출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40 세부터 49 세까지의 兩 調査結果의 性比는 1975 年度 總人口 調査結果보다 男子가 많은 水準을 보였으나 이의 뚜렷한 理由는 確認되지 않았다.

#### (4) 家族形態

1979 年度 調査에서 調査對象家口의 世代 및 家族構成別 家族의 形態를 分類하였다.

家族의 世代構成은 부부 및 자녀로 이루어진 2代家族이 全体 調査家口의 65.4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農村地域에서는 5代까지 함께 살고 있는 家口도 있었다.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2世代家族이 71.4 %를 차지하였으며, 農村地域에서는 2世代家族이 61.0 %로서 都市地域보다 構成比率이 적으나 3世代 以上으로 構成된 家族의 比率은 都市보다 높다 ( 부록 表 15 參照 )

家族構成上으로 본 家族形態는 核家族 ( nuclear family ), 直系家族 ( stem family ), 複合家族 ( joint family ) 등으로 분류하였다. 核家族은 1쌍의 夫婦와 그의 未成年의 子女로 이루어진 가족, 直系家族은 家長의 長男 혹은 長孫等의 家系の 繼承者와 이들의 配偶者 및 未婚의 子女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했으며 기타 直系가 아닌 2쌍 이상의 夫婦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家族은 複合家族으로

分類하였다.

1979年度 調査結果 全体 調査家口の 69.4%가 核家族이었으며 直系家族의 比率은 18.8%, 複合家族의 비율은 4.9%이었다.

서울特別市나 其他 都市地域의 核家族인 가구의 구성비는 70.0%~71.4%였으며, 直系家族의 가구비율은 13.9%~14.5%였다.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核家族이 都市地域보다 다소 낮은 구성비, 즉 67.8%였으며 直系家族의 比率은 都市地域보다 높았다(24.4%) (부록 表 16 参照)

#### (5) 家口員數

家口당 家口員數는 1979년도 調査結果로부터 算出하였다.

全体調査家口の 平均 家口員數는 4.46名이었다. 서울特別市の 平均 家口員數는 4.45名 都市는 4.29名, 農村地域에서는 4.65名 이었다.

全体 調査家口の 家口員數의 최빈數는 4~5名이 있고, 서울特別市에서는 4名家族이 최빈數이고,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5名家族의 家口가 최빈數이었다 (부록 表 14 参照)

#### (6) 出産力調査結果

出産力調査는 15세이상 49세이하의 既婚女子를 대상으로 婦人의 出産力에 관한 사항들 (正常出生兒, 死産, 自然流産, 人工流産 및 可妊力 등)이 조사되었다.

1978年度 調査에서는 全体 調査家口の 78.1% (17,070 가구), 1979年度 調査에서는 78.6% (18,322 가구)가 調査対象婦人이 1名以上 있는 家口였다.

調査対象 婦人数는 1978年度 調査에서 17,510名, 1979年度 調査에서 18,798名이었으나 이 중 面接 調査된 婦人数는 1978年 16,963名(96.9%), 1979年 18,602名(99.0%)이었다.

1978年度 및 1979年度 兩 調査에서 調査時点까지의 15세以上 49세以下 女子의 既婚率은 다음 表와 같다.

〈표 4〉 Percentage of ever married women to number of women by age group :

AGE GROUP	SRS'78	SRS'79
15 ~ 19	2.6	1.7
20 ~ 24	36.8	37.8
25 ~ 29	87.2	87.2
30 ~ 34	97.5	98.3
35 ~ 39	98.5	99.1
40 ~ 44	98.4	99.6
45 ~ 49	98.9	99.6
15 ~ 49	65.4	65.5

Percent = Ever married divided by total number of Women by each age group

15세以上 49세以下의 全体 女子中 1978年度에는 65.4%가, 1979年度에 있어서는 65.5%가 既婚女子이어서 이들이 出産力調査 또는 영유아 死亡의 調査対象이 되었다. 15 ~ 19세 연령층에 있어

서는 불과 2.6% (1978년도 조사), 또는 1.7% (1979년도 조사)만이 既婚女子이고 20~24세 연령층에서는 36.8% (1978년도), 37.8% (1979년도)의 既婚比率이, 25~29세 연령층에서는 87.2% (1978년도, 1979년도)로 나타났으며 30~34세 연령층 이상에서는 90.0% 이상을 兩 調査에서 모두 상회하고 있다.

이 調査에서 婚姻이라 함은 法的根拠와는 관계없이 事實婚일 때는 모두 結婚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基準을 택한 主要한 理由는 出産數 및 嬰幼兒 死亡數의 精確한 파악을 위하여 調査對象婦人의 확대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 總 出 生 兒 數

1978年度 調査에서 出産力 調査 對象婦人 가운데 조사된 16,963 명의 婦人中 3.8%에 해당하는 婦人만이 出産의 經驗이 없었고, 3兒 以內의 分娩 婦人數는 52.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特別市의 경우에는 1~3兒까지 分娩한 婦人의 比率은 66.1%, 5名以上 分娩한 婦人의 比率은 13.6%였다. 반면에 農村地域의 경우에는 1~3名까지 分娩한 婦人의 比率은 40.5%였으며 5名 이상 分娩한 婦人의 比率도 41.3%에 달하고 있다(부록 表 19참고)

#### 人 工 流 産

結婚時点부터 1978年度 調査時点까지 經驗한 人工流産回數를 조사한 결과 全体 婦人 16,963名中 63.7%의 婦人이 人工流産의 經驗이 없는 부인이었다. 즉 36.3%의 婦人의 出産力 調査에서 1回以上 人工流産 經驗이 있는 부인이었다.

地域別로는 서울 特別市에 있어서는 46.0%, 農村地域에서는 28.7%

가 人工流産의 經驗이 있는 婦人이었으며, 都市地域이 農村地域에 비해 서 多回數의 人工流産經驗婦人의 比率이 높다( 부록 表 21 참고 )

#### 自然流産

自然流産의 經驗이 있는 婦人은 全体婦人의 9.3%로, 서울特別市에서는 11.8%, 都市地域 10.0%, 農村地域 7.6%로 나타났다. 이들 자연유산 經驗부인 가운데 3회이상의 자연유산經驗자는 全体 婦人의 0.7%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1회의 自然流産經驗이 있었다( 부록 表 22 參考 )

#### 死産

死産의 經驗이 있는 婦人은 다만 2.0% 정도였다. 이 比率은 대체로 서울特別市, 都市地域 및 農村地域에서도 差異가 없었다( 부록 表 23 參考 )

#### 婦人의 妊娠可能性

1979年度 調査에서 15세부터 49세까지의 既婚婦人에 대하여 調査時点에서의 妊娠可能性을 조사하였다.

調査対象者 17,217名中에 '임신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부인은 12,084名( 65.0% )中, '임신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부인은 6,518名( 35.0% )이었다. 이 '임신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부인의 주요이유는 남편 또는 부인의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 44.34% )이고, 자연불임이라고 응답한 婦人은 40.22%였다.

(7) 出生兒數

特別回顧調查의 重要한 目的의 하나는 一定期間中の 出生數와 死亡數를 正確히 調查하여 既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연속적으로 조사한 出生數와 死亡數와의 比較에 의한 出生率 및 死亡率 推定이다. 따라서 調查地域에서 一定期間中 發生한 出生과 死亡數의 調查는 調查의 가장 重要한 調查 項目이었다.

出生數의 調查期間은 調查時點에서 前年度 正月 初하루부터 調查時點까지의 期間으로 定하였다.

1978年度 調查에서는 1977年 1月1日부터 1978年度 調查時點인 9월까지의 出生數를 조사하였고, 1979年度 調查에서는 1978年 1月1日부터 1979年 9月까지의 出生數를 調查하였다.

1977年 1月1日부터 1978年 9月( 調查時點 )까지 調查된 出生數는 3,451件이었으며, 이 中 男兒가 1,768名 女兒가 1,683名( 性比 105.05 )였다.

1979年度 調查期間인 1978年 1月1日부터 1979年 9월까지 調查된 出生數는 3,582名이었고 이 中 男兒는 1,868名, 女兒는 1,714名( 性比 108.98 )였다.

이 出生數를 地域別로 分類하면 1978년도 調查에서는 서울特別市에서 784件( 性比 91.22 ), 都市地域에서 1,086件( 性比 106.07 ), 農村地域에서 1,581件( 性比 111.93 )였고, 1979年度 調查에서는 서울特別市에서 220件( 性比 114.45 ), 都市地域에서 1,143件( 性比 107.07 ), 農村地域에서 1,519件( 性比 107.23 )이었다. 서울

特別市の 1978年度 調査는 性比로 보아 調査누락이 예상된다.

1978年度 調査에서 1977. 1. 1 ~ 1978. 9 까지 約 1年9個月間 調査된 出生數의 父母와의 同居여부를 調査한 結果는 97.91%의 出生兒가 同居하고 있었고, 0.29%의 出生兒가 別居하고 있었으며, 1.74%가 死亡( 영아사망을 1977년도 20.0 ) 하였다.

#### (8) 死 亡 數

特別回顧調査에서 死亡件數의 調査는 出生調査와 마찬가지로 重要な 調査項目이었다.

死亡調査의 調査期間은 出生調査의 期間과 마찬가지로 1978年度 調査에 있어서는 1977年 1月1日부터 1978年 9月 調査時点까지 定 하였으며, 1979年度 調査에서는 1978年 1月1日부터 1979年 9月 까지이다.

1978年度 調査에서 調査된 死亡者數는 모두 869名( 1977년도 死亡 425件, 1978年度の 9개월中 死亡 443件 )이었으며 1979年度 調査에서는 總 901件( 1978年度 1年中 死亡 489件, 1979年度 9個月間의 死亡 411件 )이었다. 이 901件의 死亡者中 男子의 死亡이 535件( 59.4% )이고 女子의 死亡이 366件( 40.6% )였다.

1978年度 死亡件數의 性別構成도 1979年度 調査와 비슷하여, 869件의 死亡中 男子의 死亡이 527件( 60.6% ), 女子의 死亡이 342件( 39.4% )였다.

#### (9) 死亡者의 年齡分布

1978年度 調査에서 調査된 869件의 死亡時 年齡分布는 0세

死亡이 8.3%, 1~4세 死亡이 3.7%, 5~59세 死亡이 39.2%, 그리고 60세 이상의 死亡이 48.6%였다.(부록 表 39 참조)

1979年度調査에서 調査된 901件的 死亡時 年令分布는 0세의 死亡이 5.5%, 1~4세 死亡이 4.3%, 5세~59세 死亡이 37.4%, 60세 以上の 死亡이 52.4%였다(부록 表 38 참조)

### 3.5.2. 健康 및 保健에 관한 사항

健康 및 保健에 관한 사항은 1978年 人口動態特別回顧調査時 調査対象人口의 有病率 및 医療機關의 利用狀況, 入院, 手術, 不具 등 健康에 관련된 指標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有病期間 및 医療機關 利用에 대해서는 조사시점 전 1個月間, 事故, 手術, 入院等に 대해서는 1977年 1月1日以後에 出生한 事件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有病期間 및 医療機關 利用狀況

本調査에서 有病狀態란 평소에 하던 活動(어른의 경우는 作業 및 家事, 學生의 경우 登校 및 學業, 어린이의 경우는 놀이 등)에 지장을 주는 心身障礙를 말한다. 그리고 有病期間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표시로 몸이 불편하여 자리에 누워 있었던 日數를 택하였다.

調査結果 나타난 月間 平均有病經驗者 總數는 5,314名으로 全体 調査人口의 5.3%가 되며 95%가량은 전혀 有病日을 경험하지 않았다. 地域別로는 서울이 6%, 都市 5.6%, 郡部 4.9%가 有病經驗者로 나타나 서울이 가장 높다.

月間 平均 有病期間은 10.87日이며, 人口 一人當 平均 有病日數는 0.46日이다. 月間 平均 有病期間을 地域別로 보면 서울이 9.6日, 市部가 10.7日, 郡部가 11.6日이다. 이는 다음 표에서 보여주듯이 有病期間이 길수록 郡部의 비율이 높고 서울의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有病期間이 5日이내인 경우는 서울이 52.5%로 가장 높고 郡部는 42.2%로 가장 낮다.

<표 5> 지역별 유병기간

유병일수	서울	시부	군부	TOTAL
	수 %	수 %	수 %	수 %
1 ~ 5	538 ( 52.5)	557 ( 44.4)	833 ( 42.2)	1,928 ( 45.4)
6 ~ 10	186 ( 18.2)	299 ( 23.8)	423 ( 21.5)	908 ( 21.4)
11 ~ 15	75 ( 7.3)	104 ( 8.3)	167 ( 8.5)	346 ( 8.1)
16 ~ 20	43 ( 4.2)	72 ( 5.7)	157 ( 8.0)	272 ( 6.4)
21 일 이상	182 ( 17.8)	224 ( 17.8)	389 ( 19.8)	795 ( 18.7)
TOTAL	1,024 (100.0)	1,256 (100.0)	1,969 (100.0)	4,249 (100.0)

有病時 主로 治療를 받은 곳은 藥局 41.9%, 洋醫 40.9%, 漢醫 5.7%, 齒科 0.4%로 나타났으며 自家 및 無治療의 경우도 11.1%로 나타났다.

月間 醫療機關 利用狀況은 다음과 같다.

<표 6> 월간 의료기관 이용상황

방문회수	한 의 수 %	양 의 수 %	치 과 수 %
1	225 ( 38.1)	2,261 ( 21.4)	733 ( 50.7)
2	131 ( 22.2)	1,311 ( 12.4)	229 ( 15.8)
3	73 ( 13.4)	845 ( 8.0)	152 ( 10.5)
4	29 ( 4.9)	401 ( 3.8)	90 ( 6.2)
5	28 ( 4.7)	344 ( 3.3)	62 ( 4.3)
6	8 ( 1.4)	96 ( 0.9)	22 ( 1.5)
7	18 ( 3.1)	250 ( 2.4)	55 ( 3.8)
8	3 ( 0.5)	46 ( 0.4)	6 ( 0.4)
9	1 ( 0.2)	14 ( 0.1)	1 ( 0.1)
10 ~ 19 회	36 ( 6.1)	374 ( 3.5)	76 ( 5.3)
20 회 이상	35 ( 5.9)	185 ( 1.8)	16 ( 1.1)
무응답	3 ( 0.5)	7 ( 0.1)	3 ( 0.2)
TOTAL	590 (100.0)	10,551 (100.0)	1,445 (100.0)
인구 1,000 명당 방문회수	23.79	229.33	41.92

医療機關 利用者의 月間 平均 방문회수는 漢医 4.0 회, 洋医 3.7 회  
 齒料 2.9 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人口 1,000 名當 洋医 방문비율이  
 229.33 으로 漢医의 23.79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漢医보다 洋医  
 利用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負傷, 手術 및 入院에 관한 사항

本 調査에서 負傷이란 적어도 하루이상 活動의 制限을 받거나 의사의 診療를 받은 부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1977년 1월 1일 이후 負傷을 입은 적이 있었던 사람은 1,828 명으로 전체조사인구의 1.8%에 해당한다.

부상을 입게 된 事故의 종류로는 불의의 추락(떨어지거나 넘어짐, 부딪힘, 맞음, 찢김 포함)이 가장 많은 38.8%이며, 交通事故(자동차 사고, 기타 교통사고 포함) 22.5%, 기타 불의의 사고 17.0% 등이다. 또한 産業性的 불의의 사고도 10.2%에 달한다(부록 表46參照).

사고가 일어난 장소로는 철도 및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32.6%로 가장 많으며 자기집 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21.4%, 산업장소에서 일어난 사고 19.9%, 농토 7.6%, 학교 7.3% 등의 順이다.(표7)

<표 7> 사고 장소

사 고 장 소	수	%
자 기 집 내	390	21.3
남 의 집	71	3.9
철도 및 도로	594	32.6
농 토	139	7.6
산 업 장 소	364	19.9
학 교	134	7.3
오락, 운동장소	63	3.4
기 타	72	3.9
무 응 답	1	0.1
합 계	1,828	100.0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2,856명으로 전체 조사인구의 2.9%이며 수술부위는 <표8>과 같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수술 받은 경험자가 훨씬 많아 전체 수술받은 사람의 73.1%를 차지하며, 그 여자중의 73.8%가 인공유산및 불임수술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수 술 부 위

수 술 부 위	남 자 수 %	여 자 수 %	합 계 수 %
머 리	30 ( 3.9)	23 ( 1.1)	53 ( 1.9)
얼 굴	81 (10.5)	64 ( 3.1)	145 ( 5.1)
등	21 ( 2.7)	9 ( 0.4)	30 ( 1.1)
복 부	197 (25.7)	257 (12.3)	454 (15.9)
가 슴	33 ( 4.3)	35 ( 1.7)	68 ( 2.4)
귀	11 ( 1.4)	6 ( 0.3)	17 ( 0.6)
눈	25 ( 3.3)	18 ( 0.9)	43 ( 1.5)
팔 ( 어깨에서 손까지 )	100 (13.0)	38 ( 1.8)	138 ( 4.8)
다리 ( 엉덩이에서 발까지 )	153 (19.9)	62 ( 3.0)	215 ( 7.5)
인공유산, 불임, 포경수술등	95 (12.4)	1,541 (73.8)	1,636 (57.3)
목	20 ( 2.6)	27 ( 1.3)	47 ( 1.6)
무 응 답	2 ( 0.3)	8 ( 0.4)	10 ( 0.4)
합 계	768(100.0)	2,088(100.0)	2,856(100.0)

전체 조사인구중 입원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2.6%에 해당하는 2,550명이었다. 본 조사에서의 입원이란 병원에서 1泊이상을 했을 경우만 입원으로 간주하였다.

입원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평균 입원기간은 16.7일이며, 입원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는 33.5%, 6 ~ 30일사이가 55.0%이며, 한달이상 입원한 경우도 9.4%이다.

<표 9> 입원기간

입원기간	수	%
1 ~ 5	853	33.5
6 ~ 10	726	33.4
11 ~ 15	311	12.2
16 ~ 20	128	5.0
21 ~ 25	61	2.4
26 ~ 30	177	6.9
30일 ~ 1년	235	9.2
1년이상	4	0.2
무응답	55	2.2
합계	2,550	100.0

입원이유를 질병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소화기계의 질환으로 21.6%이며, 그 다음은 임신, 분만 및 산욕의 합병증으로 21.0%, 부상 17.6%, 원인불명의 병 8.6%, 호흡기계의 질환 4.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4.3% 등의 순이다. 질병종류를 좀더 자세히 분류하면 분만하기위해 입원하는 자가 가장 많아 입원경험자의 18.4% (469名)이며, 그 다음이 충수염과 원인 불명의 병으로 각각 8.6%씩이며, 골절상, 열상, 타박상, 탈구등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7.6%, 기타 부상 5.9% 등이다.(부록 表47參照)

30일 이상 장기 입원경험자중 가장 많았던 환자는 부상으로 입원했던 환자이며, 그 다음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의 질환으로 입원했던 경우이다(부록 表 48參照)

#### 不具 ( 障 碍 )

本 調 査 에 서 의 身 體 및 精 神 障 碍 者 는 다 음 정 의 에 의 해 서 조 사 되 었 다.

盲人 :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양쪽 눈의 視力障 碍 가 심 하여 안경이 시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者 )

귀머거리 : 양쪽 귀의 聽覺障 碍 가 심 하여 곁에서 하는 다른 사람 말소리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병어리 :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

肢体不自由 : 팔의 손목관절이나 다리의 발목관절 및 부분(근위부)에서 절단, 마비 또는 심한 변형(또는 기형) 등으로 四肢중 어느 한肢 이상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體幹部에 마비 또는 심한 변형(또는 기형) 등으로 技能障 碍 가 있는 사람.

精神薄弱兒 :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으로서 知能發達, 成熟이 지체되고 사회적인 여러가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

精神病 : 대체로 技能發達에는 별 이상이 없으나 情緒變化가 심하여 어느 일정기간 우울한 상태나 들뜬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우울한 상태와 들뜬 상태가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 말이나 행동이 조리에 맞지 않고 혼잣말을 자주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 기타 退行期 우울증 (남자 50代, 여자 40代) 의 심한 경우 (가벼운 신경증 노이로제 증상은 포함 안됨)

간질 : 빈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따금 갑자기 의식상실과 더불어 경련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흔히 발작후 두통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調査結果 나타난 身體 및 精神障礙者의 數는 전체 조사대상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5名이다.

신체장애자수는 800명으로 전체 조사인구의 0.81%이며 내용별로는 지체부자유자가 가장 많은 76.6%이며 맹인 6.4%, 병어리 7.3%, 귀머거리 4.6%이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障礙를 가진자도 5.1%에 달한다 (부록 表 49 參照)

精神障礙者數는 205名으로 전체 조사인구의 0.2%이며 이 중 精神薄弱者가 108名으로 53.2%를 차지한다. 그의 정신병자 77名 (37.9%), 간질환자 16名 (7.8%),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사람은 4名 (2.0%)이다 (부록 表 50 參照)

### 3.5.3. 人口 移動

人口移動의 動態把握은 地域社會를 진단하고 人口政策 및

社会, 經濟, 教育 등 광범위한 政策樹立에 重要な 資料가 될 것이다.

本 調査에서 人口移動이란 区·市·邑·面·洞의 行政單位間의 移動 뿐만 아니라 行政單位內에서의 移動을 포함한 居住地의 變境을 말하며, 1979年 제 2차 人口動態特別回顧調査時 1978年 1月1日 以後에 發生한 動態事象만을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調査內容은 移動時期, 移動動機, 移動前居住地 및 移動回數등이다.

#### 移動人口의 性別 年齡別 構成

1978年 1月1日부터 調査時點까지 약 20個月間에 移動한 人口는 調査人口 104,090名中 35.6%에 해당하는 37,006名이다. 이中 男子移動人口는 18,338名이며 移動人口의 性比는 98.2로 女子移動人口가 약간 더 많다.

移動人口를 5세 年齡別로 나누어 보면 0~34세까지의 연령군 중에 10~14, 그리고 30~34의 두 年齡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移動率이 각각 11%以上이며, 34세까지의 연령군의 移動率을 모두 합하면 全體移動人口의 78.8%나 된다. 그러나 35세 以後가 되면 移動率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연령적으로 보아 經濟 및 社会的 地位가 定定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家族員數의 增加, 子女들의 就學等의 이유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男·女別로 보면, 19세 以下와 30세~44세 以下의 年齡群에서는 男子移動人口가 女子移動보다 많으나, 兵役義務와 관련이 있는 20~29세 사이는 女子移動人口가 많으며 45세 以後의 年齡群에서도 女子移動人口가 增加하고 있다. 특히 20~24세층은 해당 年齡群 總移動人口中 女子가 62.5%를 차지한다.

移動人口의 教育水準

移動人口의 教育水準은 調査對象人口의 平均 教育水準과 比較하여 보면 移動人口의 教育水準이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調査人口의 教育水準 分布를 보면 中學校가 21.5%, 高等學校가 19.2%, 大學校가 5.6%로 나타났다. 반면 移動人口의 教育水準은 中學校가 24.3%, 高等이 25.4%, 大學以上이 8.2%로 각각 2.8%, 6.8%, 2.4%가 높다.

그리고 無學 移動者의 教育水準은 調査人口의 平均教育水準인 13.9%에 비해 6.9%에 불과하며, 國民學敎水準의 移動者 역시 總조사 인구 敎育수준 分포가 39.6%인 반면 35.2%에 그치고 있다.

< 표 11 > 전체조사인구와 이동인구의 敎育수준 比較 (%)

敎育수준	전체조사인구	이동인구
무 학	13.9	6.9
국민학교	39.6	35.2
중 학교	21.5	24.3
고 등 학교	19.2	25.4
대 학 이 상	5.8	8.2
TOTAL	100.0	100.0

移動人口의 移動形態 및 移入前 居住地

移動形態를 都市에서 都市, 都市에서 郡部, 郡部에서 都市, 郡部에서

郡部로의 4 가지 形態로 나누어 볼 때 都市에서 都市로의 移動은 全体 移動人口의 66.0%를 차지하였으며, 郡部에서 都市로의 移動이 7.8%로 결국 73.8%가 都市로의 移動이며, 都市集中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외 都市에서 郡部로의 移動이 4.9%, 郡部에서 郡部로의 移動이 21.1%로 나타났다.

都市 가운데 人口 60萬이 넘는 서울, 釜山 및 大邱, 光州, 仁川 등(1975年 총人口 및 住宅센서스 기준)의 5個 都市를 大都市, 如他를 中·小都市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부록 表 52 参照)

都市에서 都市로의 移動 가운데 大都市間의 移動은 78.0%이며, 中·小都市間의 移動이 17.8%이며, 中小都市와 大都市間의 移動은 불과 4.2%이다. 特히 都市間 移動의 93.0%는 同一都市内에서의 移動이며, 大都市의 경우는 76%가 区内移動이다.

郡部에서 都市로의 移動의 경우 中·小都市보다는 大都市로의 移動이 많아 63.6%를 차지하며, 都市에서 郡部로의 移動 역시 大都市로부터의 移動이 67.0%로 中·小都市로부터의 移動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郡部에서 郡部로의 移動의 경우는 대부분 同一 道内에서의 移動으로 95.0%를 차지하며, 他道에서의 移動은 5%정도에 불과하다.

全体移動의 35.5%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人口移動을 분석해 보면 같은 区内에서의 移動이 66.0%, 区間 移動이 22.2%이며, 他市에서 서울로 이동한 경우 4.5%, 郡部에서의 移動 7.2%로 되어 있다.

移動人口의 移入前 居住地를 道別로 보면 서울이 34.4%를 차지

하였으며, 京畿의 14.2%, 慶北의 12.2%, 釜山 8.5%, 全南 7.3%, 慶南 7.0%, 忠南 5.3%, 江原 및 全北이 각각 3.5%, 忠北 2.7% 濟州 0.8%의 順이다.

移動人口를 現 居住地를 中心으로 서울과 서울을 除外한 기타 都市 및 郡部로 나누어 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 市內에서의 移動이 88.1%로 대부분이며 轉出入口에 對한 轉入人口의 比는 102.7로 轉入超過現象을 보이고 있다. 市內移動을 제외한 서울시 移動人口의 轉入前居住地를 道別로 보면 서울의 隣接地域인 경기도가 41.1%로 가장 많고 忠南,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경남, 부산, 제주시의 順이다.

서울을 제외한 기타 都市地域의 경우 轉出入口에 對한 轉入人口의 比는 104.7로 역시 轉入超過現象이다. 都市로 移動해 오기前 居住地를 道別로 보면 釜山, 慶北, 京畿, 全南, 慶南등의 順이다.

郡部の 경우는 轉出入口가 더 많아 轉出入口에 對한 轉入人口의 比는 92.4이다. 移動前 居住地는 京畿, 慶北, 忠南, 慶南, 서울, 全南등의 順으로 나타났다(부록 表 51 參照)

#### 移動人口의 移動理由

移動을 할 때에는 社會, 經濟, 心理的 要因이 複合적으로 작용하므로 단순히 하나의 理由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本 調査에서는 單獨移動이거나 家口移動을 막론하고 家口構成員 個個人의 移動理由를 조사하였으며, 移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主된 理由만을 택하였다.

調査結果 나타난 移動의 諸理由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家口主가 移動함에 따라 被動的으로 함께 移動하게 되는 家族成員의 移動으로 65.1%이다. 다음은 住宅關係로 방 또는 집을 세들어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하게 되는 계약만기가 4.4%, 방(또는 집)을 늘리거나 주택을 매입하여 이사하는 경우 각각 2.3%, 집세 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1.1%, 철거로 인한 移動이 1.0%로 모두 10.7%를 차지한다. 住宅關係 移動者는 동일 市內 및 동일 邑·面內 이동이 95.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職業關係 移動者는 모두 全体移動의 9.6%로 求職移動 1.6%, 職場關係移動 5.6%, 장사 및 事業關係移動 2.4% 등이다. 求職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郡部에서 大都市로의 이동이 가장 많으며, 장사 및 사업관계로 이동할 때에는 同一 都市內, 혹은 同一 邑·面內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職場關係 이동의 경우는 同一 都市內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나타난 主要 移動理由는 結婚 및 分家로 인한 移動이 2.9%, 交通關係 2.3%, 교육관계 2.0% 등이다(부록 表 53 참조)

移動形態別로 移動理由를 보면 都市에서 都市로의 이동 가운데 市內 移動일 때는 住宅關係의 이동이 가장 많으나, 市間 移動은 職業關係의 이동이 가장 많고 住宅關係의 이동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都市에서 郡, 郡에서 都市로의 移動의 경우는 모두 職業關係의 이동이 가장 높은 比率를 차지하며, 郡에서 都市로의 이동의 경우는 다른 移動形態에 비해 教育關係 移動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郡에서 郡으로 移動 가운데 同一 邑·面內 이동일 때는 주택관계 이동이 가장 많으며 직업관계, 교통관계, 결혼 및 분가등의 順으로

이동이유가 나타났으나 기타 同一 道内の 郡間移動과 他道로부터의 郡間移動에서는 住宅關係의 이동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부록 表 54 참조)

移動理由를 性 및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부록表55참조)  
대부분의 이동이유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에 비해 훨씬 높아 70 ~ 80%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家口主를 따라 함께 이동하는 家族成員의 이동은 62.8%로 여자의 비율이 높으며,結婚 및 分家, 친척, 친구연고등의 理由에서도 女子移動者가 남자보다 약간 더 많다.

연령별로는 직업관계이동에 있어서는 20 ~ 39 세, 주택관계는 25 ~ 39 세, 결혼관계 25 ~ 34 세, 교통관계는 20 ~ 29 세사이의 연령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女子의 경우는 男子보다 5 세정도 젊어서 이와 비슷한 移動現象을 보이고 있다. 教育關係이동에 있어서는 10 ~ 24 세 사이에 약 60 ~ 70%가 이루어지며, 30 세 이후가 되면 자녀교육관계로 다시 약간 높아진다.

家族成員의 移動은 職業 및 住宅關係등의 理由로 이동하는 家口主를 따라 함께 이동하는 관계상 19 세 이하가 男女 모두 공통적으로 많은 반면에, 20 ~ 29 세의 女子 移動者가 많은 것은 出嫁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 移動回數

1978年 1月1日부터 1978年 12月31日까지 1年동안 移動經驗이 있는 사람은 20,354名으로 全体 調査人口의 19.6%이다.

地域別로는 서울이 가장 移動이 심해 31.3%가 移動經驗이 있으

며, 郡部는 가장 낮아 11.2%만이 이동경험이 있다.

2회 이상의 이동경험자도 서울, 市部, 郡部の 順으로 서울이 가장 많다.

<표 12> 1년동안의 이동회수 ( 1978. 1.1 ~ 1978.12.31 )

이동회수	서울	시부	군부	합계
	수 %	수 %	수 %	수 %
1 회	6,894 ( 28.3)	6,746 ( 21.6)	4,988 ( 10.3)	18,628 ( 17.9)
2 회	592 ( 2.4)	459 ( 1.5)	366 ( 0.8)	1,417 ( 1.4)
3 회 이상	132 ( 0.5)	80 ( 0.3)	97 ( 0.2)	309 ( 0.3)
이동경험 없다	16,742 ( 68.8)	23,956 ( 76.7)	43,038 ( 88.7)	83,736 ( 80.4)
합 계	24,360 (100.0)	31,241 (100.0)	48,489 (100.0)	104,090 (100.0)

## 제 4 장 인구동태신고 제도의 개선연구

### 4.1. 서론

본 사업의 목적은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인구동태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인구동태신고서의 인쇄·배부 및 관리와 인구동태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동태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는 내무부산하 구·시·읍·면사무소에서 관장한다. 이와같은 업무의 분산과 동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은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생산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도 인구동태신고업무는 그들의 중요한 업무로 별도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신고하는 국민측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즉 1년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호적법에 의하면 출생·사망 신고는 일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본적지에 신고하고 기타 혼인, 이혼 및 사산은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기피나 지연신고는 5,000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법령의 규정대로 부과되지 않았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는 신고율을 높이는 유인으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당년 신고율은 1965 년이후 현재까지 총발생건수의 약 60%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는 과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명 등의 관습, 짧은 신고기간, 교통편의 및 인구동태신고법에 관한 지식의 부족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업에서는 인구동태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호적 신고제도를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호적신고자 자신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한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조하고 신고율을 높이는 여러 방안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을 청주시와 예산군에 1년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연구소는 시범사업 후에 평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비교되는 기초조사를 이미 시범사업전에 실시하였다.

#### 4.2 호적신고절차

##### (1) 신고기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기성사실의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의 강제성이 있다. 법정출생신고기간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이며, 사망신고기간도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간이다. 그러나 사변으로 인한 사망, 形死, 獄死, 본적불명자, 認識不明者의 사망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에 상관없이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는 일정한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을 발생케하는 창설적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혼인과 이혼은 신고기간이 따로 없고 호적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서 법률적으로 혼인과 이혼이 성립된다.

##### (2) 申告地

모든호적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住所地 읍·면·구청·시청 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市에서 出生·死亡申告를 할 때에는 申告事件本人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洞을 經由할 수 있다. 이러한 申告를 받은 洞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送付해야 한다. 出生의 申告는 出生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出生한 때에는 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船舶中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船舶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死亡申告도 死亡地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死亡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屍體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또는 기타 교통기관내에서 死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도 할 수 있다.

### (3) 申告義務者

(出生) : 親生者의 出生申告는 父가 하고 父가 할 수 없을 때에는 母가 해야 한다. 위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順位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① 戶主
- ② 同居者
- ③ 分娩에 關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사람

(死亡) : 사망신고는 다음 順位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順位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다.

- ① 戶主
- ② 동거하는 親族
- ③ 기타의 同居人
- ④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출생·사망 모두 後順位者가 기간내에 신고하면 先順位者의 신고의무는 면제되나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 그 책임은 선순위 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경우에 실기통지는 선순위자에게 가도록 되어있다. 동순위자가 여러명 있을 때에는 모든 동순위자가 각기 책임을 져야 하며 선순위자가 미성년인 때에는 그의 법적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 (4) 申告項目

##### ( 출 생 )

① 신고일자

② 출생자에 관한 사항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주소,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혼인중의자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의 여부/성별/출생년월일/출생장소/

③ 부모성명/본

④ 기타사항

⑤ 신고인에 관한 사항

본적/호주성명/주소/자격/서명날인/출생년월일

⑥ 인구동태사항

부·모의 출생년월일/부·모의 직업/부·모의 교육정도/부·모의 동거년월일/모의 출산회수(총출산·생존수·사망수·사산)/임신월수 및 태수/조산자

##### ( 사 망 )

① 신고일자

② 사망자에 관한 사항

본적/호주성명/호주와의 관계/주소/세대주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의 여부/성별/사망년월일시/사망장소/기타/

③ 호주상속인에 관한 사항

본적/성명/전호주와의 관계

④ 신고인에 관한 사항

본적/호주성명/주소/자격/서명날인/출생년월일

⑤ 인구동태사항

사망전 직업/사망진단자/혼인상태/교육정도

(婚姻)

① 申告年月日

② 당사자에 관한 사항 (夫·妻)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주소, 세대주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성명·본/출생년월일

③ 부모 성명 및 본적 (夫·妻)

\* ④ 養親성명 및 본적 (夫·妻)

\* ⑤ 혼인해소년월일

\* ⑥ 신본적

\* ⑦ 수반입적자에 관한 사항

성명/분가자와의 관계

\* ⑧ 기타사항

\* ⑨ 증인에 관한 사항 (2명)

본적/주소/서명날인/출생년월일

\* ⑩ 동의자에 관한 사항 (夫·妻)

부모 서명날인/부·모 생년월일/

\* ⑪ 신고인 夫·妻의 서명날인

\* ⑫ 인구동태사항

실제동거년월일/성혼과정 (자유·중매·절충)/혼인장소/직업 (부·처)/교육정도 (부·처)/혼인종류 (부·처)/

\* ④ ⑤ ⑥ ⑦ ⑧ ⑩ 의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면 기입하지 않는다.  
 남자 27 세 여자 23 세 미만인자가 결혼할 때와 禁治産者가 결혼할 때에는 그의 부·모의 동의를 필요하다.

(5) 제출해야 할 신고매수

		본적지 신고	주소지 신고
출생 및	적기신고	2 통 { 1 통 : 호적 신고용 1 통 : 인구동태신고용	3 통 (주소지용으로 1 통 추가)
사망신고	실기신고	3 통 (실기신고용으로 1 통 추가)	4 통 (주소지용으로 1 통 추가)
혼인신고	장 남	3 통 { 1 통 : 호적 신고용 1 통 : 배우자의 본적지용 1 통 : 인구동태신고용	4 통 (주소지용으로 1 통 추가)
	차 남	4 통 (분가용으로 1 통 추가)	5 통 (주소지용으로 1 통 추가)
이혼신고		3 통 { 1 통 : 호적 신고용 1 통 : 배우자의 본적지용 1 통 : 인구동태신고용	4 통 (주소지용으로 1 통 추가)

(6)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인구동태통계와 호적부 정리를 위해 두종류로 나뉘어 처리된다. 먼저 호적부 정리를 위한 신고서 처리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지와 본적지에 다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서 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지 시·구·읍·면에서는 접수된 신고서에 의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신고해당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 관할(가정·지방) 법원에 각각 신고서 1부씩을 송부한다. 주민등록지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본적지 시·구·읍·면은 이에의거하여 호적부와 주거표를 정리한 후 이 신고서를 관할(가정·지방) 법원에 송부한다.

본적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사무소는 호적부와 주거표를 정리한후 신고서 1부를 신고접수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가정·지방) 법원에 송부하고, 주민등록지에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통보서를 받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에서는 이 통보서에 의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본적지 관할(가정·지방) 법원은 시·구·읍·면으로부터 받은 신고서에 의해 호적부 부분을 정리하고 신고서를 2년간 보관한후 폐기한다.

한편 인구동태통계를 위한 신고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고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은 구·시·읍·면은 내용검토를 한후 사건별로 분류 집계화의 총괄표를 작성한다음 해당사무소가 본적지든 주민등록지이든 해당소속 군이나 도·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로 신고서를 송부한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읍·면사무소는 소속군청에 접수한 다음달 15일까지 송부하고 군청에서는 도청에 20일까지 송부한다. 구청·시청은 소속도청이나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에 15일까지 송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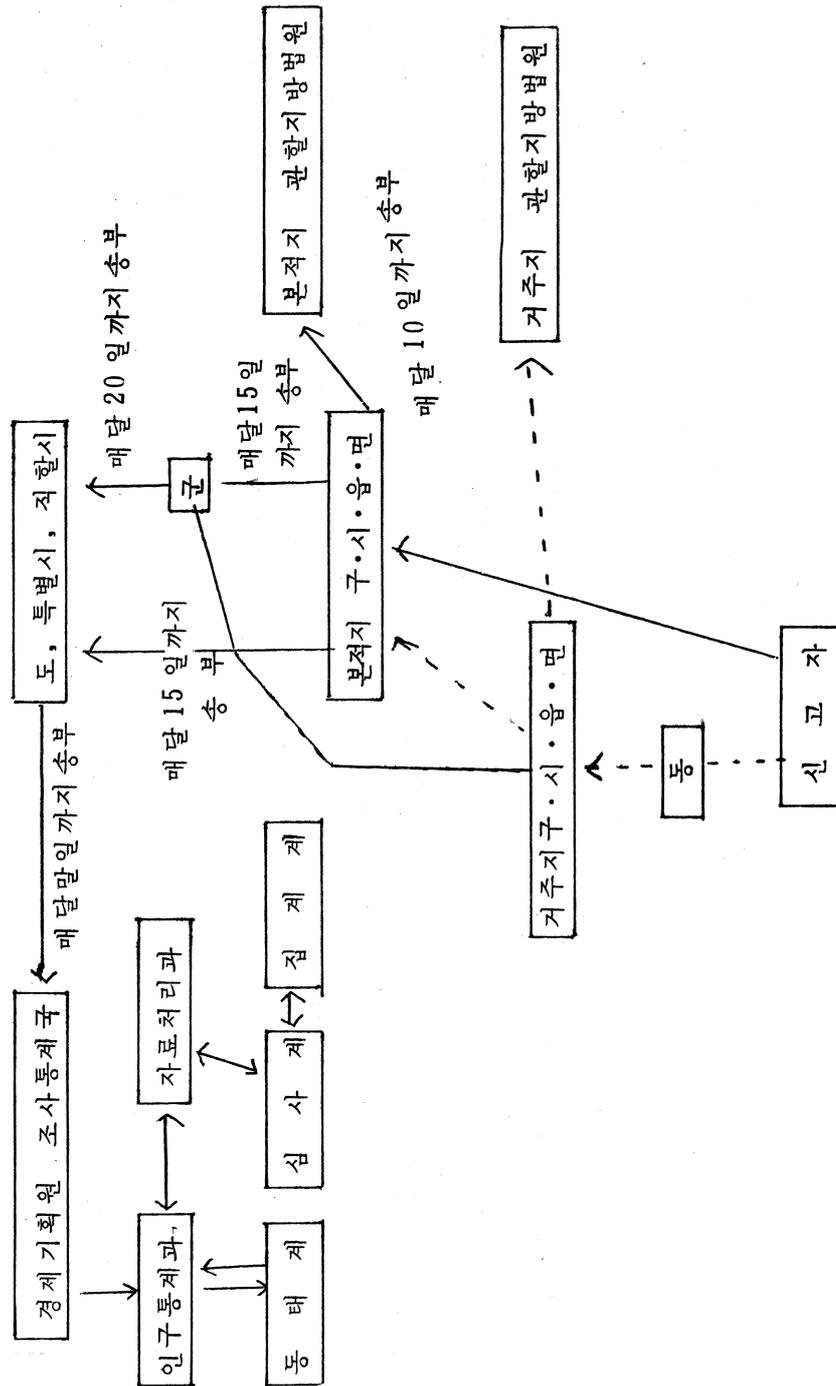
도·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는 접수일 다음달 말일까지 경제기획원에 송부한다. 인구동태통계를 위한 신고서의 제출경로 및 제출기일은 아래 도표와 같다.

※ 인구동태통계를 위한 신고서의 처리과정

제출기일		신고일 다음달 15 일	신고일 다음달 20 일	말 일
제출사항		① 구·시·읍·면의 총괄표 ② 신고서	① 군총괄표 ② 신고서	① 시·도총괄표 ② 신고서
제출경로	신고자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서울특별시청 부산직할시청  도청  군청	    도청	경제기획원

매월 각시와 도로부터 신고서와 총괄표를 접수하는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은 신고서와 총괄표와의 대조, 내용검사등을 거쳐 자료처리를 하여 집계한다. 집계된 결과는 연간단위로 분석하며, 집계가 완료된 신고서는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 인구동태신고서 처리절차



#### (7) 신고 위반시의 벌칙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호적법과 통계법에 의거하여 벌칙을 내릴 수 있다.

호적법에 의하면 법정기간내에 신고를 않으면 5천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申告를 한 경우에 그 기간안에 신고를 안하면 1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하고 있다.

인구동태통계는 지정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게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4.3. 人口動態申告제도상의 문제점

現在 시행중에 있는 人口動態申告제도상의 문제는 申告의 Total System 관점에서 理解되는 문제점을 몇가지 중요한 区分에 따라 검토해보는 것이 문제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고려된다.

인구동태事象은 正常出生, 死亡, 結婚, 離婚 및 死産, 流産等を 포함하나, 이와같은 여러 事象의 問題点を 全部 검토하기 보다는 確實한 事象이고 또 人口動態統計에 가장 基礎的이고 重要な 事象인 出生과 死亡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 1. 政策上的 문제

一般的으로 한 제도의 改善 또는 發度 또는 完成에는 政策決定 責任者의 參與도가 크게 좌우된다.

韓國에 있어서 人口動態統計改善 또는 向上을 위하여 國家的 政策決定 責任者 特別히 고위층의 정책결정 책임자의 分명한 改善 意志의 國家적 표명이나 또는 改善을 위한 國家的 努力, 特別히 國民에 대한 意志의 표명, 公告, 홍보, 또는 예산상의 지속적 반영이 별로 없었다. 人口動態統計의 改善努力은 한 部處의 官장국내에서의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 2. 法律的 根拠의 문제

韓國에 있어서 人口動態申告의 法律的 根拠는 人口動態申告가 완벽하게 신고되는 국가못지않게 완벽하다. 法律의 二重, 三重의 重複性 制定뿐만 아니라 부처간의 補完的인 기능을 잘 지니고 있다. 即 法律의 근거는, 우선 戶籍法에 依한 出生, 死亡, 婚姻의 申告의무, 住民登錄法에 依한 出生, 死亡의 申告의무와 統計法에 依한 人口動態統計의 “指定統計” 및 人口動態統計作成規則 (경제기획원령 제 78 호 1978년 6월 28일) 등이다.

이와같은 法律的 근거로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 法律的 根拠가 同一한 종적 체제에서 重複 또는 補完的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各 法律은 서로 다른 部處의 独立的 官장 (戶籍法은 法院, 住民登錄法은 내무부, 統計法은 경제기획원 官장)으로 되어 있어 法律間의 상승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둘째, 現行 人口動態申告는 우선 所籍法에 따라 申告하게 되어있다. 戶籍法에서의 出生과 死亡의 申告는 国籍上的 身分定義가 目的이지 人口動態統計作成이 아니므로 戶籍法에 依한 出生, 死亡의 통계작성은 結果적으로 副次的인 結果의 生産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세 法律에서 定한 人口動態事象의 申告의 무, 절차, 내용 및 실시 申告에 대한 法則等에 대하여 같은 水準의 規定사항도 있지만 서로 틀리는 規定사항( 例로 失期申告時 戶籍法에서는 5,000 원 以下の 과태료를 내야하나 統計法( 제 17 조 )에서는 6個月 以下の 징역 또는 50,000 원 이하의 벌금부과)도 있어 統一된 原則에서 강력한 法の 집행에 문제가 있다.

넷째, 人口動態申告의 法律에서 申告의 무의 규정과 申告履行失期時 罰칙규정만 정하였지 申告를 유도하거나, 동기를 부여하거나 申告의 利得부여의 규정은 되어있지 않다.

다섯째, 人口動態事象申告의 內容은 法律에서 定한 內容에 따라 완벽하게 기입하여야 申告될 수 있으므로 사실의 人口動態사상의 불확실한 內容, 또는 一部 사실의 內容에 대하여는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申告된 內容의 이후 정정절차등이 法院의 판결을 요하게 되어 번거롭고 용이하지 않아 申告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

### 3. 行政上的 문제점

出生과 死亡申告는 住所地와 本籍地에서 申告할 수 있다. 申告를 接受하는 末端行政기관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申告는 面·읍·시(동)·구의 호적계에서 관장하는 바, 호적계는 경우에 따라 兵事사무도 겸직관장하고 있으며, 호적계업무가 과중하다.

둘째, 戶籍업무는 漢字를 이해해야 하므로 대체로 戶籍사무관장 공무원(특히 地方)은 대체로 한자를 이해하는 연로한 인사를 배치하는 데 많은 업무에 과로하는 현상이 있다.

셋째, 戶籍사무관장은 비교적 인기가 없는 부서로 인정되고 있어 戶籍사무관장 공무원은 대체로 긍정적 태도로 일할수 있는 위치가 되고있지 않다.

넷째, 上部 부서의 잦은 감사로 인하여 많은 事象의 불확실한 업무 집행보다는 적은 확실한 申告를 바라고 있어 인구동태신고에 대한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

中央部 處에서의 行政的 문제점으로는,

첫째, 申告된 동태신고서 中間보고자인 郡守, 道知事, 市長등은 인구동태신고서 中間제출 기능만 하지 해당지역의 인구동태통계작성과 분석에 기능과 역할이 없다.

둘째, 최종中央부서(中央정부)에서는 관계부서간에 종합적이고 능률적인 申告를 이룩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合意되어야 하고 合意된 내용이 末端기관까지 홍보, 제공 또는 교육이 부족하다.

行政的 문제로 신고서 매수가 아직 많으며(사망의 주소자 실기신고서 4통), 어떤 경우에는 漢字사용의 고집 또는 일정한 색(黑色)의 사용을 요구할때도 있다.

#### 4. 申告人的 문제점

申告人的 문제점으로는,

첫째, 人口動態事象의 申告에 대하여 正確한 지식의 결여가 문제이고,

둘째, 申告內容의 精確한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特히 本籍地 주소의 기억상실, 出生日字, 음력사용, 성명등이다.

셋째, 申告는 男便 또는 長男등의 主로 社会生活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婦人이나 기타 申告의무자는 관심을 갖지않거나, 또는 男便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도 무관심의 문제이다.

넷째, 申告人의 文化的 要因에 의한 문제로, 가령 성명을 낮게 作名하거나 관습적으로 나태, 태만, 出生兒의 사망 가능성에 의한 주저등이다.

다섯째, 상황적 요인에 의한 문제로서 별 조기신고의 必要性이 없든가 申告時 드는 경비 시간의 손해, 戶籍係사무員과의 人的 관계, 복잡한 서류(婚外出生)의 제시요구에 포기등이다.

#### 4.4. 호적신고의 문제점 : 기초조사 결과

##### 4.4.1. 기초조사의 목적 및 내용

본 研究事業에서는 호적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와 충청남도 예산군 두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삼아 1978년 10월부터 1979년 9월까지 1년간 호적신고를 향상키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시범사업을 벌였었다. 이 시범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978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청주시의 2,000여 가가와 예산군의 2,000여 가가를 대상으로 가구주와 가구주의 부인에게 호적신고에 관한 지식과 태도, 실천사항등을 조사했다.

기초조사의 목적은 크게 다음 2가지로 볼 수 있다.

① 人口動態統計改善事業이 실시되기 이전의 家口 및 家口員의 社会・人口學的 特性과 조사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의 인구동태사건의 발생과 신고수준을 파악하고.

② 인구동태신고에 대한 KAP 조사이다.  
이 목적을 위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가구원의 社会・人口學的 特性

가주와의 관계

거주시기

性別

教育정도

나이

혼인상태

(2) 출생아에 관한 사항

出生児 이름

출생아의 生母의 이름

출생아의 性別

출생일자

출생아의 生存여부

(3) 사망자에 관한 사항

사망자의 이름

사망자의 性別

사망일자

사망당시 나이

(4) 출생아/사망자 호적신고 실천에 대한 사항

호적확인을 위한 항목

신고여부

미신고 이유

신고지

신고자

신고된 출생일자

부정확 신고 이유

신고일자

지연신고 이유

(5) 출생/사망신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에 대한 지식

신고기간에 대한 지식

신고기간에 대해서 들은 곳

과태료에 대한 지식

과태료에 대한 의견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식

신고지에 대한 지식

신고당시의 문제점

정부당국에게 바라는 점

지연신고이유에 대한 의견

(6)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주의 직업

수입

주택소유형태·크기·방수

문화기구 소유정도

매스콤과의 접촉정도

#### 4.4.2. 호적신고 실천현황

우리나라 호적신고 실천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기초조사에서 발견된 출생·사망을 실제로 호적과 대조하여 신고율, 신고의 정확성, 그리고 신고시기 등을 알아 보았다.

호적대조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기초조사에서 조사한 출생아, 사망자에 관한 사항을 본적지 사무소별로 구분하여 대조기록표에 기입한 다음, 건수가 많은 사무소(예를 들면 청주시청, 예산읍사무소, 삼교읍사무소)은 직접 방문하여 호적을 찾아 호적에 등재된 대조사항을 기입하고, 그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소에 우편으로 조사상의 기록만 기입된 대조기록표와 대조기입방법 지침서를 보내서 호적담당계원이 호적을 찾아 기입하였다.

대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u>출</u> <u>생</u>	<u>사</u> <u>망</u>
가구주 이름	가구주 이름
본적지 및 주민등록지 주소	본적지 및 주민등록지 주소
호주 이름	호주 이름
출생아 이름	사망자 이름
출생아 성별	성            별
생존 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부의 이름	사망당시 나이
모의 이름	신고 여부
신고 여부	신고년월일
신고년월일	

기초조사에서 발견된 1973년 7월 1일부터 1978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총 동태건수를 보면 출생은 청주가 1,039건, 예산이 1,164건이고, 사망은 청주가 120건, 예산이 252건이다. 이중에서 호적과 대조된 건수는 출생에서 청주가 695건, 예산이 1,058건이고 사망에서는 청주가 80건 예산이 230건으로 청주는 67%정도의 대조율을 보이고, 예산은 91%정도의 대조율을 보이고 있다.

호적대조가 되지 않은 것은 ① 본적지 주소와 호주이름이 조사되지 않거나 응답이 정확하지가 않아 해당 호적을 찾지 못한 경우와 ② 해당 본적지 사무소에 우편으로 대조기록표를 보냈으나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청주시가 예산군에 비해 대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예산에 비해 청주는 현거주지와 본적지가 전혀 다른 가구가 많아 회수가 안된 경우가 많고, 또 주민들이 특히 부녀자들이 호적이라든가 호주제도, 본적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부녀자 응답자가 더 많은 청주가 해당호적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산은 호주이름이나 본적지 주소가 틀려도 본적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이 많으므로 가구주 이름만으로도 호적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197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를 보면, 출생은 청주 653건, 예산 1,010건이고 사망은 청주 64건 예산 194건으로 대조건수에 대한 출생신고율은 청주가 93.96%, 예산이 95.46%이며 사망신고율은 청주가 80.00%, 예산이 84.35%이다. 우리나라는 출생, 사망모두 발생후 1년이후에 신고되는 건수가 꽤 되므로 실제 우리나라 호적신고율은 이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생, 사망 호적대조 및 신고상황은 <표 1>과 같다.

< 표 1 > 1973. 7. 1 ~ 1978. 6.30 출생·사망호적대조율 및 신고율  
( 1978.12.31 현재 대조상황 )

	청 주		예 산	
	출생	사 망	출생	사 망
조사에서 발견된 총동태건수	1,039	120	1,164	252
호적과 대조된 건수	695	80	1,058	230
호적과 대조되지 않은 건수	344	40	106	20
호적대조율 ( 대조건수 / 발견건수 )	66.89 %	66.67 %	90.89 %	91.29 %
호적신고건수	653	64	1,010	194
미신고건 수	42	16	48	36
신고율 ( 신고건수 / 대조건수 )	93.96 %	80.00 %	95.46 %	84.351 %

인구동태통계자료로서의 호적신고는 단순히 높은 신고율만으로는 전혀 유용성이 없다. 인구동태통계는 매년마다 인구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그때 그때 생산되어야 뜻이 있다. 제때의 인구동태통계라야만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호적법상 출생, 사망 모두가 1달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출생, 사망의 적기신고율은 출생이 26.05%이고 사망이 27.45%이다. 그리고 발생년도에 신고한 당년 신고율은 출생이 58.87%이고, 사망은 44.06%이다. 이렇게 당년신고율이 반정도이므로 우리나라는 호적신고가 인구동태통계자료로서 별 의미도 없는 실정이다.

출생, 사망신고기간에 대한 자세한 건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실제의 적기신고율과 호적상의 적기신고율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실제 출생적기신고율은 26.05%인데 호적상의 출생적기신고율은 54.78%로 28.73%의 차이가 나고, 사망의 경우는 실제의 적기신고율이 27.45%인데 호적상의 적기신고율은 55.25%로 27.90%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호적기록의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확신고율은 매우 낮아 본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신고된 것은 출생이 청주가 총 신고건수중에 42.57%, 예산이 30.00%로 34.43%에 지나지 않으며, 사망의 경우는 청주가 29.68%, 예산이 23.71%로 25.19%이며 출생 보다도 더욱 낮다.

#### 4.4.3. 신고 지식

우리나라 주민들은 거의 다 출생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생신고의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총 응답자의 98.11%이고 사망신고의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97.60%였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고의무에 대한 지식은 청주시와 예산군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지식율을 보였는데 출생의 경우는 95.10%이고 사망은 91.95%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청주시보다 예산군이 신고지에 대한 지식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출생과 사망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 > 1973. 7. 1 ~ 1978. 6. 30 에 발생한 출생, 사망의 기간별 신고율

	청 주		예 산	
	출 생	사 망	출 생	사 망
총대 조건수	695	80	1,058	230
총 신고건수	653	64	1,010	194
미신고건수	42	16	48	36
신고기간 판정불능	74	5	40	10
분모 (대조건수 - 판정불능건수)	621	57	1,018	220
호적상 적기 신고건수	261	46	637	177
호적상 적기 신고율	42.02%	61.33%	62.57%	53.18%
실제 적기 신고건수	157	21	270	60
실제 적기 신고율	25.28%	28.00%	26.52%	27.27%
당년 신고건수	340	34	625	96
당년 신고율	54.75%	45.33%	61.39%	43.63%
지연 신고건수	422	38	700	123
지연 신고율	67.95%	50.66%	68.76%	55.90%
① 1 달 후에서 1 년이내 신고건수	314	23	529	75
신고율	50.56%	30.66%	51.96%	34.09%
② 1 년이 후의 신고건수	108	15	171	48
신고율	17.39%	20.00%	16.79%	21.81%

\* 신고기간 판정불능은 조사상에서 출생일자나 사망일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와 대조기록표에 호적에 나타난 신고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표 3> 1973. 7.1 ~ 1978. 6.30 에 발생한 출생, 사망신고의 정확성

	청 주		예 산	
	출 생	사 망	출 생	사 망
정확한 신고건수	278	19	303	46
정확신고율	42.57 %	29.68 %	30.00 %	23.71 %
부정확한 신고건수	357	42	684	144
	54.68 %	65.62 %	67.72 %	74.22 %
① 음력일자로 기재한 건수	106	0	105	4
	16.23 %	0	10.39 %	2.06 %
② 실제일자와 1 달이내의 차 이가 나는 건수	75	18	157	37
	11.48 %	28.12 %	15.54 %	19.07 %
③ 실제일자와 1 달이상 1 년 이내 차이가 나는 건수	155	15	352	60
	23.73 %	23.43 %	34.85 %	30.92 %
④ 실제일자와 1 년이상 차이 가 나는 건수	21	9	70	43
	3.21 %	14.06 %	6.93 %	22.16 %
판정불가능한 건수	18	3	23	4
	2.75 %	4.68 %	2.27 %	2.06 %
총 신고건수	653	64	1,010	194
	(100 %)	(100 %)	(100 %)	(100 %)

\*정확성 판정불가능은 조사에서 출생일자나 사망일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임.

< 표 4 > 신고의무에 대한 지식

내 용	청 주		예 산	
	출 생	사 망	출 생	사 망
1. 알고 있다	1,985 (97.7)	1,969 (96.9)	2,027 (98.5)	2,022 (98.3)
2. 모른다 (무응답 포함)	46 ( 2.3)	62 ( 3.1)	31 ( 1.5)	36 ( 1.7)
계	2,031 (100.00)	2,031 (100.00)	2,058 (100.00)	2,058 (100.00)

< 표 5 > 신고지에 대한 지식

내 용	청 주		예 산	
	출 생	사 망	출 생	사 망
1. 알고 있다	1,898 (93.45)	1,800 (88.62)	1,991 (96.74)	1,960 (95.23)
2. 모른다 (무응답 포함)	133 ( 6.55)	231 (11.38)	67 ( 3.26)	98 ( 4.77)
계	2,031 (100.00)	2,031 (100.00)	2,058 (100.00)	2,058 (100.00)

한편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일정한 기간안에 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정확한 법정기간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기간이 1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출생의 경우 청주가 13.39%, 예산이 10.73%이고 사망의 경우는 청주가 14.37%, 예산은 10.0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표 7>에서 보면 출생의 경우는 청주가 89.56%, 예산이 88.24%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고 있고, 사망에서는 청주가 75.62%, 예산이 82.36%로 출생의 경우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식이 높은 편이다.

<표 6> 법정기간에 대한 지식

내 용	청 주		예 산	
	출 생	사 망	출 생	사 망
1. 정확한 기간을 알고 있다 ( 1 달 )	272 (13.39)	292 (14.37)	221 (10.73)	206 (10.00)
2. 법정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정확한 기간 은 모르고 있다.	1,645 (80.99)	1,551 (76.37)	1,748 (84.94)	1,753 (85.18)
3. 모른다	114 ( 5.62)	188 ( 9.26 )	89 ( 4.33)	99 ( 4.82)
계	2,031 (100.00)	2,031 (100.00)	2,058 (100.00)	2,058 (100.00)

<표 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식

내 용	청 주		예 산	
	출 생	사 망	출 생	사 망
1. 안 다.	1,819 (89.56)	1,536 (75.62)	1,816 (88.24)	1,605 (82.36)
2. 모 른다.	212 (10.44)	495 (24.38)	242 (11.76)	363 (17.64)
계	2,031 (100.00)	2,031 (100.00)	2,058 (100.00)	2,058 (100.00)

4.4.4. 신고 태 도

우리나라 호적신고행위에 있어서 문제점은 신고를 늦게 한다는 점과 부정확하게 신고를 한다는 점이다. 부정확한 신고는 지연신고와 밀접하게 관계 되는데, 늦게 신고함으로써 해태사유서의 작성이라든가 과태료부과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출생일자나 사망일자를 신고일에 가깝게 신고하게 된다. 더우기 출생과 사망을 호적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 신고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신고를 늦게 하는가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유는 <표 8-1>과 <표 8-2>와 같다.

출생, 사망 모두에서 사람들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신고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을 제일 많이 꼽고 있는데 출생의 경우 청주는

〈표 8-1〉 지연신고이유에 관한 주민들의 생각 (출생)

출생 신고 지연이유	지 역	
	청 주	예 산
1. 신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927 (63.40)	1,103 (73.38)
2. 아이의 생존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신고	211 (14.43)	161 (10.71)
3. 신고기간 및 절차등 신고에 대한 무지	51 ( 3.48)	31 ( 2.06)
4. 이름을 늦게 지은 경우	53 ( 3.62)	29 ( 1.92)
5.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35 ( 2.39)	12 ( 0.79)
6. 신고지가 멀기 때문에	36 ( 2.46)	26 ( 1.72)
7. 나이를 줄이기 위해	21 ( 1.43)	43 ( 2.86)
8. 행정적 잘못	13 ( 0.88)	4 ( 0.26)
9. 비합법적 출생	13 ( 0.88)	3 ( 0.19)
10. 마땅한 신고자가 없을때 ( 아이의 부가 아프거나 거나 객지에 있는 경우, 가정불화가 있을 때 )	23 ( 1.57)	10 ( 0.66)
11. 미신적 이유	12 ( 0.82)	8 ( 0.53)
12. 여아출생시 서운해서	8 ( 0.54)	5 ( 0.33)
13. 남에게 부탁했다가	8 ( 0.54)	29 ( 1.92)
14. 늦게해도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7 ( 0.47)	4 ( 0.26)
15. 담당직원의 태만과 불친절	4 ( 0.27)	8 ( 0.53)
16. 기    타	40 ( 2.73)	30 ( 1.99)
계	1,462 (100.0)	1,503 (100.0)

< 표 8-2 > 자연신고 이유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사망)

사망신고 자연이유	사 망	
	청 주	예 산
1. 신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 족과 무관심	561 ( 45.98)	713 ( 54.42)
2. 마음이 안정된 후에 하려고	254 ( 20.81)	228 ( 17.40)
3. 신고기일, 절차등을 모르기 때 문에	161 ( 13.19)	129 ( 9.84)
4. 재산 및 호주상속관계의 문제 때문	92 ( 7.54)	70 ( 5.34)
5. 늦게해도 별문제가 없어서	35 ( 2.86)	39 ( 2.97)
6.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증명 서등 ) 의 문제때문	12 ( 0.98)	31 ( 2.36)
7. 좋은 일이 아니므로	27 ( 2.21)	4 ( 0.30)
8. 신고지가 멀기때문에	11 ( 0.09)	9 ( 0.68)
9. 연금 보상금 및 무상배급관계	7 ( 0.57)	7 ( 0.53)
10. 이장, 반장, 친척등에 부탁했다가	7 ( 0.24)	14 ( 1.06)
11. 마땅히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 0.32)	1 ( 0.07)
12. 기 타	53 ( 4.34)	65 ( 4.96)
계	1,220 (100.00)	1,310 (100.00)

63.40%가 이를 지적했으며, 예산에서는 73.38%가 지적했다. 이들은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부모가 태만하거나 신고에 무관심해서 또는 바빠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가 늦어짐을 지적했다.

한편 사망의 경우는 청주에서 45.98%가 지적했고 예산에서는 54.42%가 지적했다. 이들은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생활이 바쁘다는 것을 들었다. 바쁘다는 이유는 결국 사망신고의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출생지연신고의 이유로 그다음 많이 지적한 것은 아이의 생존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신고하려다가 늦어지는 경우이며, 사망신고의 지연이유로 그다음 많이 지적한 것으로는 마음이 안정된 후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고기일과 절차등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재산 및 호주상속관계의 문제때문에 늦어지는 경우이다.

주민들의 출생신고전의 영아사망신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에 대한 인식부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생신고전 사망한 영아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둘다 하겠다는 주민은 청주의 경우 14.6%, 예산의 경우 9.5%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고 신속한 인구동태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주민들이 호적신고에 대해 정부에게 바라는 건의사항은 <표10>에서 보듯이 대체로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신고서 작성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 ②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주며
- ③ 신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 표 9 > 영아사망신고에 대한 태도

( 아이가 출생신고도 하기전에 죽었다면 귀하께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시겠습니까? )

내 용	청 주	예 산
1.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겠다.	186 ( 9.5)	136 ( 6.7)
2. 출생신고를 한 후 며칠 후에 사망신고를 하겠다.	102 ( 5.2)	56 ( 2.8)
3.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둘다 하지 않겠다.	1,544 (78.4)	1,778 (87.9)
4. 기 타	133 ( 6.8)	46 ( 2.3)
5. 무응답	4 ( 0.2)	6 ( 0.3)
계	1,969 ( 100)	2,022 ( 100)

④ 신고절차를 좀더 편리하고 쉽게 해주는 것이다.

주민들이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건의안은

- ① 대서소를 거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의 용어설명과 주의사항등을 해당사무소 게시판에 알기 쉽게 설명해 놓는다. ② 호적계 직원이 신고에 대해 상담을 해주며 원하는 경우 신고서 대리작성도 해준다. ③ 신고서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농한기에 또는 반상회를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해준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행정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은 담당공무원이 신고서를 수리할 때 제대로 검토해주고, 호적에 오기가 없도록 서기에게 한자교육을 시키게 하며, 또 신고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통되도록

본적지와 주민등록지 사무소간에 긴밀한 신고행정연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신고서의 양식이 좀 더 간소화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신고서를 1장만 작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건의한 것은 ① 출생이나 사망 모두 병원에서 대신신고를 하도록 하고 ② 출생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아무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통장, 이장, 반장에게 신고를 하면 그들이 대신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점이다. ④ 특히 사망의 경우는 사망진단서없이도 노인사망이나 자연사망경우에는 주민의 인정서류만 있으면 사망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극빈자에게만 해당되는 인우증명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도 허락하여 사망진단서가 없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건의하였다.

< 표 10 > 주민들의 호적신고에 대한 건의사항

내 용	청 주		예 산	
	출 생	사 망	출 생	사 망
①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57 (27.8)	4 ( 4.9)	23 (13.9)	- ( - )
②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주기를	42 (20.5)	7 ( 8.6)	30 (18.2)	4 ( 5.1)
③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면	30 (14.6)	15 (18.5)	23 (13.9)	9 (11.4)
④ 신고를 좀더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59 (28.8)	49 (60.5)	68 (41.2)	61 (77.2)
⑤ 기 타	17 ( 8.3)	6 ( 7.5)	21 (12.8)	5 ( 6.3)
계	205 (100.0)	81 (100.0)	165 (100.0)	79 (100.0)

#### 4.5. 시범사업내용 및 경과

##### (1) 목 적

현행 인구동태신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2) 사 업 개 요

시범지역내의 인구동태신고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Baseline Survey : 1978. 8. 4 ~ 25) 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신고의 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주요사업활동 내용

###### (가) 조사통계국 (중앙) 의 지시 및 조치

2개 시범지역에 대한 인구동태신고 개선을 위한 활동의 첫 단계로 1978.10월부터 집약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인구동태신고개선을 위한 계몽 및 신고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원을 실시하였는 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신고서를 단순히 접수하는 일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촉진하는 업무에는 등한히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시정하여 인구동태신고의 촉진도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다.

시범지역인 청주시와 예산군에 대하여 시행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② 지방호적담당공무원의 교육
- ③ 지방호적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해소시키기 위한 인력 증원
- ④ 지방행정보조요원(통,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의 활용
- ⑤ 지방보건요원 및 가족계획요원의 활용
- ⑥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신고 촉진을 위한 지방관서의 홍보 활동지원
- ⑦ 문맹자들을 위한 무료대서소 운영
- ⑧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엄격한 적용
- ⑨ 인구동태신고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신고필자에 대한 신고증 발급

(나) 시범지역 지방관서에서 1978.10 ~ 1979.8 간에 실시한 제반활동

- ① 청주시 및 예산군에서는 각각 1979. 2월중 인구동태신고개선을 위한 동, 읍, 면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② 매 2개월마다 1회씩 호적담당공무원 회의를 소집하여 사업수행의 촉진 및 교육 실시  
청주시 : 10 회                      예산군 : 10 회
- ③ 2명의 호적신고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1978. 9 ~ 1979. 9까지 활용
- ④ 700명의 각 통, 리장을 1978.10 경제기획원 장관이 인구동태신고 개선요원으로 임명 활용.

- ⑤ 가족계획요원 및 보건요원 활용을 위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관계직원이 시범지역(청주 및 예산)에서 1979.4.17 각각 교육을 실시한 후 청주시에 15명, 예산군에 20명의 요원들을 활용하였음.
- ⑥ 인구동태신고 개선요원(통, 리장, 가족계획, 보건요원)은 각 가구를 방문시 가구에 발생한 인구동태사건의 신고를 계몽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신고서를 대서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고서를 접수토록 하였음. 이들의 실적에 대한 총괄집계는 다음과 같음.

※ 청주, 예산지역 인구동태신고 개선요원 활동실적

구 분	계	출생	사 망	혼 인	이 혼
<u>예산군</u>					
총 신고건수(1)	9,165	4,852	1,761	2,477	105
보 건 요 원(2)	258 ( 2.8)	NA	NA	NA	NA
통 , 리 장(3)	7,036 (76.8)	3,612 (74.4)	1,404 (79.7)	1,977 (80.8)	43 (41.0)
1977년 신고(4) 건 수	8,550	5,019	1,307	2,132	92
증 가 율 (%) (1)/(4)	107.2	96.7	134.8	114.8	114.1

구 분	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청주시					
총 신고건수 * (1)	6,255	4,011	837	1,344	67
개 선 요 원 (2)	1,765 (22.3)	NA	NA	NA	NA
1977 년 신고건수 (3)	4,983	3,117	702	1,079	85
증 가 율 (%) (1) / (3)	125.6	128.7	119.2	124.6	78.8

\*청주시의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건수가 포함되어 청주시 보고건수와 상이함.

#### 4.6. 시범사업의 평가 : 평가조사결과

##### (1) 평가조사 목적과 내용

평가조사는 시범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실시되었다.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조사와 비교될 기초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평가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은 기초조사와 거의 똑같이 이루어졌다. 단지 조사표본은 기초조사로 인해 응답자의 대답에 영향을 있을 수 있으므로 기초조사에서의 조사표본지역을 제외시킨 지역에서 기초조사와 똑같은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했다.

기초조사와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호적신고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시범사업중의 하나인 주민에 대한 호적신고 계몽선전운동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2) 호적신고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

기초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민들 대부분이 집안에 출생이나 사망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호적신고의 무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알았다. <표11>과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조사에서도 기초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생이나 사망등의 사건은 신고해야 한다는 지식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표11> 출생신고의 무에 대한 지식

	기 초 조 사		평 가 조 사	
	수	비 율	수	비 율
<u>청 주 시</u>				
알고 있다	1,985	( 97.7)	2,268	( 97.0)
모 른 다	7	( 0.3)	7	( 0.3)
무 응 답	39	( 1.9)	64	( 2.7)
계	2,031	(100.0)	2,339	(100.0)
<u>예 산 군</u>				
알고 있다	2,027	( 98.5)	2,177	( 95.1)
모 른 다	2	( 0.1)	11	( 0.5)
무 응 답	29	( 1.4)	99	( 4.4)
계	2,058	(100.0)	2,287	(100.0)

<표12 > 사망신고의무에 대한 지식

	기 초 조 사		평 가 조 사	
	수	비율	수	비율
<b>청 주 시</b>				
알고 있다	1,969	( 96.9)	2,266	( 96.9)
모 른 다	12	( 0.6)	10	( 0.4)
무 응 답	50	( 2.5)	63	( 2.7)
계	2,031	(100.0)	2,339	(100.0)
<b>예 산 군</b>				
알고 있다	2,022	( 98.3)	2,178	( 95.2)
모 른 다	1	( 0.0)	12	( 0.5)
무 응 답	35	( 1.7)	97	( 4.2)
계	2,058	(100.0)	2,287	(100.0)

우리나라에서 출생이나 사망신고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유아 사망의 경우이다. 아기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둘다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의무를 알면서도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초조사에서 “아기가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죽었다면 귀하께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둘다 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청주시에서는 14.7%, 예산군에서는 9.5%

에 지나지 않았다. 1년간의 시범사업 실시후에 한 평가조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는 청주시에서는 22.1%, 예산군에서는 31.2%로 영유아 사망의 호적신고에 대한 태도가 조금 향상되었으나 아직 70% 정도의 많은 주민들이 영유아사망의 신고를 부정하고 있다. 영유아사망의 호적신고에 대한 태도변화는 <표13>과 같다.

< 표 13 > 영유아사망의 호적신고에 대한 태도

내 용	기 초 조 사	평 가 조 사
	수 비 율	수 비 율
<u>청 주 시</u>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겠다	186 ( 9.5)	227 ( 10.0)
출생신고를 한 후 며칠후에 사망신고를 하겠다	102 ( 5.2)	274 ( 12.1)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둘다 하지 않겠다	1,544 ( 78.4)	1,717 ( 75.8)
기 타	133 ( 6.8)	43 ( 1.9)
무 응 답	4 ( 0.2)	5 ( 0.2)
계	1,969 (100.1)	2,266 (100.0)
<u>예 산 군</u>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겠다	136 ( 6.7)	265 ( 12.2)
출생신고를 한 후 며칠후에 사망신고를 하겠다	56 ( 2.8)	413 ( 19.0)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둘다 하지 않겠다	1,778 ( 87.9)	1,409 ( 64.7)
기 타	46 ( 2.3)	88 ( 4.0)
무 응 답	6 ( 0.3)	3 ( 0.1)
계	2,022 (100.0)	2,178 (100.0)

우리나라 호적신고 행위에 있어서 문제점은 부정확한 신고와 제때에 신고를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부정확한 신고의 주요한 원인이 법정기간에 신고를 못해 과태료 부과나 해태사유서등의 침부를 피하기 위해 신고일에 맞춰 출생이나 사망일자를 신고하기 때문임을 감안할 때 적기신고는 호적신고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기초조사와 평가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은 호적신고에 법정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정기간이 1달임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매우 적었다. 시범사업실시 결과 정확한 법정기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만 한달안에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에는 아직 너무 요원한 상태다.

시범사업실시전의 기초조사에 의하면 법정기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청주의 경우 출생은 13.39%, 사망은 14.37%이고 예산의 경우는 출생 10.73%, 사망은 10.01%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시범사업후에는 평가조사에 의하면 청주의 경우 출생은 32.3%, 사망은 32.1%이고 예산의 경우는 출생이 34.1%, 사망이 33.9%로 시범사업실시전에 비하여 대개 20%정도의 향상율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실시 전후의 호적신고 법정기간에 대한 지식의 변화는 <표14>와 <표15>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이 생각하는 출생, 사망 호적신고 법정기간은 각양각색으로 1달이내로 생각하는 사람이 70~80%를 차지한다. 이것은 이들의 실기신고율이 70%정도인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이는 주민들은 정확한 법정기간에 대한 지식이 낮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법정기간에 대해서도 흐릿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호적신고 법정기간은 <표16>과 <표17>과 같다.

< 표14 > 호적신고 법정기간에 대한 지식 : 출생

지 역	기초조사	평가조사
	수 비율	수 비율
<u>청 주</u>		
법정기간을 알고 있다	272 ( 13.39)	755 ( 32.3 )
법정기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기간은 모르고 있다.	1,645 ( 80.99)	1,487 ( 63.6 )
법정기간에 대해 모른다	114 ( 5.62)	97 ( 4.1 )
계	2,031 (100.0 )	2,339 (100.0 )
<u>예 산</u>		
법정기간을 알고 있다	221 ( 10.73)	779 ( 34.1 )
법정기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기간은 모르고 있다	1,748 ( 84.94)	1,379 ( 60.3 )
법정기간에 대해 모른다	89 ( 4.33)	129 ( 5.7 )
계	2,058 (100.0 )	2,287 (100.0 )

< 표15 > 호적신고 법정기간에 대한 지식 : 사망

지 역	기초조사	평가조사
	수 비율	수 비율
<u>청 주</u>		
법정기간을 알고 있다	292 ( 14.37)	751 ( 32.1 )
법정기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기간은 모르고 있다	1,551 ( 76.37)	1,470 ( 62.8 )
법정기간에 대해 모른다	188 ( 9.26)	118 ( 5.1 )
계	2,031 (100.0 )	2,339 (100.0 )
<u>예 산</u>		
법정기간을 알고 있다	206 ( 10.01)	775 ( 33.9 )
법정기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기간은 모르고 있다	1,753 ( 85.18)	1,362 ( 59.6 )
법정기간에 대해 모른다	99 ( 4.81)	150 ( 6.5 )
계	2,058 (100.0 )	2,287 (100.0 )

< 표16 > 주민들이 생각하는 호적신고기간 : 출생

지 역	기 초 조 사	평 가 조 사
	수 비 율	수 비 율
<u>청 주</u>		
1 달 이 내	1,428 ( 70.3 )	1,875 ( 80.2 )
1 달 ~ 3 달	40 ( 2.0 )	27 ( 1.2 )
3 달 ~ 1 년	22 ( 1.1 )	44 ( 1.9 )
1 년 이 상	0 ( 0.0 )	0 ( 0.0 )
모 른 다	526 ( 25.9 )	296 ( 12.6 )
무 응 답	15 ( 0.7 )	97 ( 4.1 )
계	2,031 (100.0 )	2,339 (100.0 )
<u>예 산</u>		
1 달 이 내	1,545 ( 75.1 )	1,883 ( 82.3 )
1 달 ~ 3 달	33 ( 1.6 )	48 ( 2.1 )
3 달 ~ 1 년	32 ( 1.6 )	27 ( 1.2 )
1 년 이 상	0 ( 0.0 )	2 ( 0.1 )
모 른 다	359 ( 17.4 )	198 ( 8.7 )
무 응 답	89 ( 4.3 )	129 ( 5.6 )
계	2,058 (100.0 )	2,287 (100.0 )

< 표 17 > 주민들이 생각하는 호적신고기간 : 사망

지 역	기 초 조 사	평 가 조 사
	수 비 율	수 비 율
<u>청 주</u>		
1 달 이 내	982 ( 48.4 )	1,600 ( 68.4 )
1 달 ~ 3 달	37 ( 1.8 )	28 ( 1.2 )
3 달 ~ 1 년	37 ( 1.8 )	28 ( 1.2 )
1 년 이 상	- -	1 ( 0.0 )
모 른 다	896 ( 44.1 )	608 ( 26.0 )
무 응 답	79 ( 3.9 )	74 ( 3.2 )
계	2,031 (100.0)	2,339 (100.0)
<u>예 산</u>		
1 달 이 내	1,262 ( 61.3 )	1,733 ( 75.8 )
1 달 ~ 3 달	236 ( 11.5 )	31 ( 1.4 )
3 달 ~ 1 년	12 ( 0.6 )	19 ( 0.8 )
1 년 이 상	- -	- -
모 른 다	506 ( 24.6 )	404 ( 17.8 )
무 응 답	42 ( 2.0 )	100 ( 4.3 )
계	2,058 (100.0)	2,287 (100.0)

시범사업에서는 호적신고제목을 위해서 포스터, 프랭카드, 현수막, 가두선전탑을 설치했으며, 메스콤을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시범지역내의 이장, 반장, 통장들을 인구동태개선요원으로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제몽하고, 신고독려나 신고서 작성, 대리신고등의 호적행정의 보조적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 청주시와 예산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제몽선전을 하였는데 좋은 성과를 본 것 같다.

호적신고를 일정한 기간내에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곳이 어디냐는 정보출처의 분포는 주민들이 호적신고에 대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정보원을 알려준다.

<표18> 과 <표19>에서 보여주듯이 청주시나 예산군 모두 구·시읍·면·동직원이나 이장, 통장, 반장에게서 호적신고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 그러나 기초조사에서보다 평가조사에서 이들의 정보제공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시범사업전에는 이들이 거의 유일한 정보제공자인데 대하여 시범사업후에는 여러 정보제공자가 생겨 그리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인구동태개선요원으로서 이장, 통장, 반장들이 별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치 않은 탓인 것 같다. 포스터, 프랭카드, 현수막, 가두선전탑은 시범사업기간내내 설치해 두었는데 이들을 통해 호적신고 법정기간을 알게 된 사람은 2%가 채 안되었다. 평가조사 결과로 보면 가능성 있는 제몽매체로 시부에서는 반상회가 군부에서는 반상회와 마을방송을 들 수 있다. 반상회와 마을방송은 시범사업기간 1년동안에 두서너번 정도 실시한 것에 비해 주민들에게 효과가 큰것 같다.

<표18> 호적신고 법정기간에 대한 정보제공자 : 출생

청 주	기 초 조 사		평 가 조 사	
	수	비율	수	비율
구·시·읍·면·동직원	340	( 16.7)	351	( 15.0)
이장, 통장, 반장	225	( 11.1)	165	( 7.1)
보건소 직원	1	( 0.0)	4	( 0.2)
라 디 오	2	( 0.1)	120	( 5.1)
텔 레 비 전	1	( 0.0)	69	( 2.9)
신문, 잡지	1	( 0.0)	91	( 3.9)
포스터, 프랭카드, 현수막, 가두선전탑	1	( 0.0)	46	( 2.0)
마을앰프, 가두방송	1	( 0.0)	9	( 0.4)
새마을교육 새마을지도자	-	-	4	( 0.2)
반상회, 반상회 회보	-	-	441	( 18.9)
응 답 자 수	2,031	(100.0)	2,339	(100.0)
<hr/>				
예 산				
구·시·읍·면·동직원	450	( 21.9)	446	( 19.5)
이장, 통장, 반장	755	( 36.8)	582	( 25.4)
보건소 직원	2	( 0.1)	11	( 0.5)
라 디 오	2	( 0.1)	155	( 6.8)
텔 레 비 전	2	( 0.1)	103	( 4.5)
신문, 잡지	2	( 0.1)	78	( 3.4)
포스터, 프랭카드, 현수막, 가두선전탑	2	( 0.1)	40	( 1.7)
마을앰프, 가두방송	2	( 0.1)	155	( 6.8)
새마을교육, 새마을지도자	-	-	26	( 1.1)
반상회, 반상회 회보	-	-	186	( 8.1)
응 답 자 수	2,058	(100.0)	2,287	(100.0)

<표19> 호적 신고 법정기간에 대한 정보제공자 : 사망

	기초조사 수 비율	평가조사 수 비율
<u>청 주</u>		
구·시·읍·면·동직원	348 ( 17.1)	308 ( 13.2)
이장, 통장, 반장	238 ( 11.7)	156 ( 6.7)
보건소 직원	4 ( 0.2)	4 ( 0.2)
라 디 오	1 ( 0.0)	81 ( 3.5)
텔레비전	1 ( 0.0)	48 ( 2.1)
신문, 잡지	1 ( 0.0)	83 ( 3.5)
포스터, 프랭카드, 현수막, 가두선전탑	1 ( 0.0)	32 ( 1.4)
마을앰프, 가두방송	2 ( 0.1)	7 ( 0.3)
새마을교육, 새마을지도자	- -	2 ( 0.1)
반상회, 반상회 회보	- -	415 ( 17.7)
응답자수	2,031 (100.0)	2,339 (100.0)
<u>예 산</u>		
구·시·읍·면·동직원	448 ( 21.8)	371 ( 16.2)
이장, 통장, 반장	864 ( 42.0)	596 ( 26.1)
보건소 직원	1 ( 0.0)	5 ( 0.2)
라 디 오	- -	104 ( 4.5)
텔레비전	- -	67 ( 2.9)
신문, 잡지	- -	67 ( 2.9)
포스터, 프랭카드, 현수막, 가두선전탑	- -	30 ( 1.3)
마을앰프, 가두방송	- -	134 ( 5.9)
새마을교육, 새마을지도자	- -	25 ( 1.1)
반상회, 반상회 회보	- -	170 ( 7.4)
응답자수	2,058 (100.0)	2,287 (100.0)

## 제 5 장 인 구 동 태 통 계 개 선 권 고 안

( 법령 및 조직에 관하여 )

1. 호적, 인구동태 및 주민등록등 신고제도는 각기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복 또한 많아 행정력의 낭비와 국민에게는 과중한 신고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세 신고제도는 하나의 법령 밑에 통합되어야 한다.
2. 통합의 기본 방향은 호적법 통제법중 인구동태 신고관계조항, 주민등록법등을 폐기하고 주민등록과 같이 현거주지 신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민 신고법을 제정한다. 호적제도는 오랫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므로 국민신고법은 호적법의 폐기에서 오는 법률상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고사무에 대한 감독, 인사 및 예산권은 일원화 되어야 한다. 현 주민등록 및 호적신고 일선기관인 구·시(동)읍·면의 감독, 예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각급 지방관서 및 내무부가 신고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신고기구의 효율적운영과 신고율을 높이는 데 가장 유리할 것이다. 호적사무는 국민의 신분에 관한 공증사무이므로 그 성질상 행정부에 소속된 사무일뿐만 아니라 이를 사법부에서 관장하므로 말미암아 동업무 집행 및 개선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호적사무가 침체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으므로 관장기구의 개편은 호적사무개선에 핵심적인 문제이다.

4.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은 호적신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다. 이를 새로운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담당기관은 동태통계작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특히 신고항목 및 양식변경, 신고기간, 신고서의 수집보관등 사항) 동태통계작성담당기관인 조사통계국과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법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 신고절차 및 행정에 관한 사항 )

5. 각 일선기관의 업무내용을 신고서류의 접수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담당지역의 완전신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한다. 이러한 업무내용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교육훈련계획을 강화하고, 신고통계작성담당기관은 일선에서 업무평가 및 업무계획을 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본적지와 주소지 어느쪽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신고율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따라서 신고부진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모호함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6. 신고에 의한 인구동태통계는 현재 불완전하나 이를 3년이상 누적하면 신고완전율이 95%이상에 달하므로 보완한다면 인구동태통계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원인에 관한 통계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통계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7. 접수증의 발급은 신고인의 신고해야한다는 의지를 만족시켜주어 신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동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역할을 심리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8. 제출신고서의 매수를 줄이고 1매이상 필요한 경우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입방법은 숫자의 한자기입을 폐하고 정정방법은 정정후 날인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등 신고방법을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9. 보건소, 병원 및 조산원등 출생, 사망과 관련있는 의료기관은 동 출생, 사망의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사망원인통제의 작성을 위하여 보건소가 주민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참여한다. 또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의사, 간호원등의 교육과정에 사망원인진단서 사망진단서 발급, 출생증명서 발급, 신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10. 지연신고와 불신고(강제신고)를 구분하여 적절한 벌과금을 부과하고 현과태로 상한선 5,000원을 대폭 인상조치한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로 부과를 엄격히 시행한다. 과태로 부과를 현재와 같이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인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지 말고 현행 전매, 관세등 사범자와 같은 통고처분의 방식과 같은 간편한 처벌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의 신고기피현상이 우려되므로 신고유도, 촉진을 기본으로 하여 법을 운용하여야 한다.
11. 국민의 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정기적인 계몽선전 운동이 필요하며 특히 반상회를 통한 계몽과 통, 리, 반장등을 동원한 미신고진 일소 및 신고독려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사고에 의한 사망등의 경찰처리과정이나 매화장신고등이나 출생,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의 지급절차등에서는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기아 및 신원불명의 행여병사자들을

파악하여 통계작성에 포함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3. 신고항목을 더욱 축소 간소화하여야 한다. 호적신고항목은 새로운 신고제도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인구동태항목은 국민의 사적생활을 침해하는 인상을 주어 신고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교육정도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사회정책수행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혼부부의 피해자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삭제 권고 항목	항목 명칭 변경
출생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동거년월일 → 부모의 실제혼인년월 모의 출산회수 → 출생순위 (몇번째?) (* 사산을 분리) 임신월수 및 태수 → 임신월수 (* 태수는 별도 항목으로)
사망	교육정도	사 망 전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개편
혼인	성혼과정, 혼인장소, 직업, 교육정도	실제상 동거년월일 → 실제혼인년월
이혼		실제상 동거년월일 → 실제혼인년월 * 추가: 연령별 자녀수 (12세 및 20세기준)

14. 호적신고 (인구동태신고)의 개선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계몽 선전주간과 같은 일시적인 동기 부여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정부의 분명하고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 부록 I : 시범 사업 세부 활동

인 구 동 태 신 고 개 선 사 업  
추 진 보 고

1978.10.1 ~ 1979. 8.31

청 주 시

## 1. 추진실적

### 가) 사업계획시달

호적 및 인구동태통제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조치 시달

#### 1) 회의개최

가) 동장회의 : 2 회

나) 사무장회의 : 6 회

다) 통장회의 : 1 회

라) 실무자회의 : 2 회

#### 2) 행정지시 (공문)

가) 시범사업 추진 : 7 회

나) 시범사업 확인반 편성 운용 : 1 개반

다) 보고철저 촉구 : 1 회

라) 신고 안내문 및 포스터 관리 : 1 회

마) 지정무료 대서 통보 : 1 회

### 나) 계몽선전활동

#### 1) 각종 유인물 및 선전탑, 현수막

가) 현수막설치 : 12 개소

나) 가두선전탑 : 2 개소

다) 담화문부착 : 350 매

라) 입간판선전문 : 34 매

마) 시범사업 안내문 배포 : 50,000 매

바) 표어배부 : 9,000 매

사) 방송문 : 30 매

- 아) 리본 : 42,000 매 (학생)
- 자) 학생교육용 안내문 : 20 매
- 차) 안내문 : 220 매
- 카) 포스터 : 105 매
- 타)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 : 356 권

- 2) 반상회 회보 게재 : 8 회
- 3) 신문광고 : 2 개 신문에 각 2 회 보도
- 4) 대담방송실시 : 2 개 방송국에서 3 회 대담방송
- 5) 인구동태개선 계몽요원 활용
  - 동직원 : 210 명
  - 통 장 : 335 명
  - 보건요원 : 10 명

다. 호적신고보조요원 활동

- 1) 배치인원 : 1 명
- 2) 무료대서 : 1,651 건
- 3) 미신고자 최고 : 139 명
- 4) 민원상담 및 안내 : 2,130 명
- 5) 각종 신고 발생상황 신고여부 검토 : 1,765 건

라. 무료대서소 운영

- 1) 지정계약 : 2 개소
- 2) 무료대서소 실적 : 1,447 건

마. 유관기관 협조

- 1) 청주시 소재 각급 학교 : 모든 학생이 계몽선전기간중 인구동

태신고 개선을 위한 리본을 패용토록하고 인구동태신고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2) 의료기관 : 제몽선전기간중 시설내에 인구동태신고에 대한 포스터, 표어를 부착

바. 호적신고 정리의 날 운영

매월 25-27 (3일) 간을 호적정리의 날로 지정 직원과 통장순회 신고 제몽 및 무료대서를 실시하고 호적신고 상담 및 신고 요령을 제도하였음.

사. 직원 담당구역 책임제 실시

담당구역 책임제 동원 인원 : 560명

○ 시 : 5명

○ 동직원 : 210명

○ 통장 : 335명

○ 보건요원 : 10명

아. 소요비용 : ₩ 2,433,500

1) 호적보조요원 수당 : ₩ 864,000

2) 인쇄비 : ₩ 25,000

3) 대서료 : ₩ 816,000

4) 회의비 : ₩ 283,500

5) 훈련비 : ₩ 445,000

(표1) 동별 호적 및 인구농태통제 개선 사업추진 상황

동 별	구 분	발생건수	신고건수	미신고건수	자체최고
영동·북2·북3		31	30	1	
문화·북1·남2		39	29	10	7
서운·남1		62	59	3	2
서문		48	44	4	3
남주		88	74	14	14
석교		41	18	23	19
수동		93	56	37	28
우암		143	136	7	4
내덕		153	153		
탐대성		87	75	12	10
사직		182	174	8	8
모층		168	163	5	1
영운		81	78	3	3
금천		67	67		
용담·명암		73	65	8	8
운천·상봉		67	65	2	2
용암·용정		27	21	6	6
산·미·분·수곡		41	28	13	13
농촌·개신		50	46	4	4
가경·목대		101	100	1	
봉명·송정		45	40	5	5
울량·사천		63	53	10	3
사창		15	15		
계		1,765	1,589	176	139

(표2) 호적 및 인구동태 통계 개선 추진 상황

월 일	구 분	발생건수	신 고		미 신 고		자체최고	비 고
			신	고	미	신 고		
78년	10월	63	63					
	11월	89	89					
	누 계	152	152					
	12월	165	144		21		21	
	누 계	317	296		21		21	
79년	1월	135	122		13		13	
	누 계	452	418		34		34	
	2월	171	148		23		23	
	누 계	623	566		57		57	
	3월	187	154		33		33	
	누 계	810	720		90		90	
	4월	167	140		27		10	
	누 계	977	860		117		100	
	5월	211	184		27		18	
	누 계	1,188	1,044		144		118	
	6월	173	165		8		3	
	누 계	1,361	1,209		152		121	
	7월	185	177		8		8	
	누 계	1,546	1,386		160		129	
	8월	219	203		16		10	
	누 계	1,765	1,589		176		139	

문제점 및 지속적인 대책

문제점 1. 담당 공무원의 업무 폭주 및 주민 호응도의 부족

현황 - 공무원 :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도시 기능이 다원화되어 일선동  
직원의 업무가 이에 비례하여 폭주하고

통 장 : 개선요원인 통장이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아 호적 및  
제반 민원처리에 능력이 부족하며

주 민 : 호적신고가 한자 한글등 기재의 제한을 받고 작명과  
분명한 사회생활 그리고 법규를 잘몰라 방치하는등의  
이유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제양하지 못하고 있음

대책 - 1) 주민생활 민원의 교과화

호적사무를 위시한 각종 민원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있으  
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 교과  
과정에 “생활민원”이란 과목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관계  
법규와 실무를 병행 교육시켜 주민스스로 직접 작성 신  
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

2)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가.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통보

나. 시교육청에서는 분포도가 넓은 학생을 통하여 신고토록  
계몽

다. 방송국 및 신문사에서 시민상담실 시간을 설정하여 주  
기적이고 반복적인 계몽 실시

3) 중앙에서 시민생활 월보를 발간하여 반상회의시 각 가구  
에 배포함으로써 신고 의무감을 고취

문제점 2.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제도화 조치

현황 -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출생, 사망 등 인구동태사건에 대하여 현행법상 당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실기 또는 해태 사례가 허다함.

대책 - - 1) 인구동태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당해가족으로 하여금 신고서류를 작성케하여 징수하여 매주 1회씩 취합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송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2) 보건소의 보건요원 활동중 입수 또는 기록한 인구동태사건 발생 상황을 소정서식을 기록 취합하여 매주 1회씩 당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인 구 동 태 신 고 개 선 사 업  
추 진 경 과 보 고

예 산 군

# 札 山 郡

## 1. 推 進 実 績

### ア) 人 口 動 態 申 告 処 理 現 況

区 分 邑 面 別	計	出 生	死 亡	婚 姻	離 婚	備 考
計	9,179	4,672	1,747	2,653	107	
札 山	1,777	973	380	403	21	
搜 橋	1,075	547	192	320	16	
大 述	558	249	132	171	6	
新 陽	791	410	107	261	13	
光 時	646	341	115	182	8	
大 光	533	238	71	220	4	
戸 降	355	184	66	103	2	
徳 山	623	297	117	205	4	
鳳 山	531	246	145	136	4	
古 徳	808	439	158	207	4	
新 岩	651	328	119	197	3	
吾 可	831	420	145	248	18	

나) 계몽宣傳 및 業務處理 現況

区分 邑面別	계몽宣傳			無料代書	接受證發給	催告狀發付
	엠프防送	會議開催	基 他			
計	21,238	2,358	2,145	3,144	8,096	495
礼 山	4,301	707	1,457	661	1,707	217
插 橋	6,405	435		293	1,075	51
大 述	911	209		263	466	38
新 陽	1,813	34	5	268	660	18
光 時	704	28	29	162	494	18
大 光	393	36	53	222	533	7
戶 降	404	21	13	215	332	5
德 山	791	316		256	623	7
鳳 山	684	12	7	232	290	19
古 德	3,103	228		291	808	64
新 岩	458	230		127	311	
吾 可	1,271	102	581	156	797	51

㉔) 保健要員 및 改善要員 活動狀況

区分 邑面別	保 健 要 員			改 善 要 員				
	計	無料代書	申告接受	計	出生	死亡	婚姻	離婚
計	258	80	178	7,036	3,612	1,404	1,977	43
札 山	30	17	13	1,513	848	334	320	11
搜 橋	22		22	844	424	152	262	6
大 述	16	8	8	469	208	110	147	4
新 陽	27		27	524	274	75	170	5
光 時	27		27	485	264	96	123	2
大 光	18		18	533	238	71	220	4
戶 降	11	7	4	319	173	62	84	
德 山	27	27		428	302	119	205	2
鳳 山	30	3	27	539	258	148	129	4
古 德	14	10	4	656	359	139	157	1
新 岩	13		13	178	116	40	21	1
吾 可	23	8	15	348	148	58	139	3

## 2. 사업추진 개요

### 가. 개선요원 위촉

276명의 각 리장을 인구동태신고 개선요원으로 위촉하였음

### 나. 무료대서소 운영

예산읍 및 삽교면에 각각 1개소씩 무료대서소를 지정 운영하고

276명의 리장도 대서를 해주도록 조치

### 다. 호적보조원 배치

예산읍에 호적보조원을 1명배치 활용

### 라. 접수증 발급

인구동태 신고시 신고인에 접수증을 발급

### 마. 최고장 발부

모든 해태신고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

### 바. 과태료 면제기간 설정 : 1개월간

### 사. 호적신고정리의 날 설정

매월 25일을 호적신고정리의 날로 설정,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주지시킴.

### 아. 호적신고정리기간 설정

2개월간의 호적정리기간을 설정하여 186건의 미신고사건을 적발 처리 하였음.

### 자. 보건요원 교육

인구동태신고개선에 보건요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서

1회, 군 자체교육 1회 도합 2회의 교육을 실시

### 차. 인구동태신고 담당자 회의 및 교육

#### 1) 경제기획원 및 연세대 주최

78. 7. 3 호병제장, 통계제장 교육

가) 해태신고자의 잔존

나) 주민의 관심 희박

다) 계몽선전의 미흡

#### 4. 대책 및 건의사항

가. 지속적인 계몽선전 실시

나.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친 신고 촉진  
활동의 전개가 필요함.

#### 5. 향후 중점 활동계획

가. 보건요원 활동의 강화

○ 활동상황의 일일점검 실시

○ 계몽실적 대장 비치 활용

○ 월별 실적보고 이행

○ 부락 출장시 무료대서용지 휴대

나. 호적신고정리의 날(반상회) 행사 철저

○ 전직원 및 개선요원의 현지지도

○ 전 군민의 참여 유도

○ 법적신고일을 전가족 주지토록 홍보

○ 무료대서 및 신고서 접수처리 강화

다. 농한기 활용

○ 읍·면별 활동반편성

○ 전부락 칩투

○ 계몽선전기간 설정

- 7. 27 기초조사 조사원 교육 (12명)
- 9. 21 자문위원회 개최
- 10. 20 개선요원, 부면장에게 지침 전달
- 11. 24 시범사업 보고회 (내무과장)
- 12. 21 호병제장 월례평가회
- 79. 2. 22 호병제장 월례평가회
- 4. 17 보건요원 교육
- 4. 17 호병제장 월례평가회
- 6. 23 호병제장 월례평가회

2) 군자체 회의 및 교육

- 78. 8. 4 읍·면장 기초조사 협조대책 회의
- 11. 17 호병제장 사업지시
- 11. 17 읍·면장 사업지시
- 12. 4 호병제장 추진사업 평가
- 79. 1. 9 호병제장 추진사업 평가
- 7. 5 통제담당자 지시
- 7. 21 보건요원 교육

카. 시범사업 지침 및 확인

연세대에서 3회, 경제기획원에서 4회, 도에서 1회, 및 군에서 2회씩  
각각 실시

타. 계몽선전

- 1) 앰프방송 : 계몽선전기간 중에는 매주 1회씩 기타 기간에는 매월  
1회씩 실시
- 2) 반상회 활용
- 3) 리장회의 및 교육
- 4) 1개월간의 계몽선전기간 설정 운용
- 5) 각종 유인물의 배포

3. 문제점

- 계몽효과 의 제 고

라. 시범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철저

- 활동상황 정리

- 실적대장 비치

마. 해태 신고자에 대한 강력 조치

- 최고장 발부

- 과태료 부과

## 부록Ⅱ : 중복조사 대조 결과

〈표1〉중복조사 결과에 의한 1978-79 인구동태표본조사 연령별 출생률 보위계수 : C-D  
方法適用

Table L: CDS's Adjustment factors derived from Dual Report Surveys of 1978 and 1979, for Age specific birth rates: C-D method applied (1977. 9-1978. 8)

성 및 연령계급	대조 대상		진수중		추정량조사		추정총 CDS
	CDS 조사	CDS 조사	CDS 누락	CDS 누락	누락 건수	출생자수	
Sax and Age	Detected SRS 조사	Detected SRS 누락	Detected SRS 조사	Detected SRS 누락	(C-D 방법 적용)	Estimated CDS's	Adjustment factors
	by both Surveys	Only by CDS	Only by CDS	Only by SRS	Estimation method by C-D method	total births	
	(1)	(2)	(3)	(4)	(5)	(6)	
총수 Both Sexes	1,373	91	298	19.75	1781.75	1.22	
15 - 19	34	4	8	0.94	46.94	1.24	
20 - 24	409	44	90	9.68	552.68	1.22	
25 - 29	601	30	142	7.09	780.09	1.24	
30 - 34	218	7	41	1.32	267.32	1.19	*
35 - 39	82	5	15	0.91	102.91	1.18	
40 - 44	27	1	1	0.04	29.04	1.04	
45 - 49	2	-	1	-	3.00	1.50	
50+	-	-	-	-	-	-	
남자 Males	694	44	160	10.14	908.14	1.23	
15 - 19	19	4	5	1.05	29.05	1.26	
20 - 24	229	20	44	3.84	296.84	1.19	
25 - 29	289	14	81	3.92	387.92	1.28	
30 - 34	106	4	21	0.79	131.79	1.20	
35 - 39	40	2	9	0.45	51.45	1.23	
40 - 44	11	-	-	-	11.00	1.00	
45 - 49	-	-	-	-	-	-	
50+	-	-	-	-	-	-	
여자 Females	679	47	137	9.48	872.48	1.20	
15 - 19	15	-	3	-	18.00	1.20	
20 - 24	180	24	46	6.13	256.13	1.26	
25 - 29	312	16	60	3.08	391.08	1.19	
30 - 34	112	3	20	0.54	135.54	1.18	
35 - 39	42	3	6	0.43	51.43	1.14	
40 - 44	16	1	1	0.06	18.06	1.06	
45 - 49	2	-	1	-	3.00	1.50	
50+	-	-	-	-	-	-	

<표2> : 중부조사 결과에 의한 1978-79 인구동태표본조사 연령별 출생률 보완계수 : C-D 방법適用

Table 2 : CDS's Adjustment factors derived from Dual Report Surveys of 1978 and 1979, for Age specific birth rates: C-D method applied (1978, 8-1979, 7)

성 및 연령계급	대조 대상		진수중		추정량조사 누락건수 (C-D 방법 적용)	추정 총 출생자수	추정 계수 CDS's Adjustment factors
	CDS 조사 SRS 조사 by both Surveys	CDS 조사 SRS 조사 Only by CDS	CDS 조사 SRS 조사 Only by SRS	CDS 조사 SRS 조사 Only by SRS			
	(1)	(2)	(3)	(4)	(5)	(6)	
<b>총수 Both sexes</b>	1,395	70	136	6.82	1607.82	1.10	
15 - 19	31	3	5	0.48	39.48	1.16	
20 - 24	458	33	40	2.88	533.88	1.09	
25 - 29	573	21	53	1.94	648.94	1.09	
30 - 34	249	10	26	1.04	286.04	1.10	
35 - 39	68	2	11	0.32	81.32	1.16	
40 - 44	15	1	1	0.07	17.07	1.07	
45 - 49	1	-	-	-	1.00	1.00	
50+	-	-	-	-	-	-	
<b>남자 Males</b>	724	37	67	3.42	831.42	1.09	
15 - 19	15	2	3	0.40	20.40	1.20	
20 - 24	236	17	17	1.22	271.22	1.07	
25 - 29	314	12	23	0.88	349.88	1.07	
30 - 34	123	4	15	0.49	142.49	1.12	
35 - 39	33	2	8	0.48	43.48	1.24	
40 - 44	3	-	1	-	4.00	1.33	
45 - 49	-	-	-	-	-	-	
50+	-	-	-	-	-	-	
<b>여자 Females</b>	671	33	69	3.39	776.39	1.10	
15 - 19	16	1	2	0.13	19.13	1.13	
20 - 24	222	16	23	1.66	262.66	1.10	
25 - 29	259	9	30	1.04	299.04	1.12	
30 - 34	126	6	11	0.52	143.52	1.09	
35 - 39	35	-	3	-	38.00	1.09	
40 - 44	12	1	-	-	13.00	1.00	
45 - 49	1	-	-	-	1.00	1.00	
50+	-	-	-	-	-	-	

<표3> 성 및 연령별 보완출생율, 1978-79 C - D 方法適用

Table 3: Adjusted Age Specific Birth Rates by Sex, 1978-79  
(C-D method applied)

연령 Ages	평균인구 Average population	CDS 출생자수 Births detected by CDS	보완 출생자수 Adjusted Births	보완 출생율 Adjusted ASBRS
<u>1977. 10-1978. 9</u>				
15 - 19	5,478	55	68.2	11.46
20 - 24	4,660	639	779.6	167.30
25 - 29	3,659	805	998.2	272.81
30 - 34	3,146	276	328.4	104.39
35 - 39	3,240	97	114.5	35.34
40 - 44	2,903	30	31.2	10.75
45 - 49	2,469	2	3.0	1.22
총수 All Ages	25,555	1,904	2323.1	90.91
<u>1978. 7-1979. 6</u>				
15 - 19	5,745	60	69.6	12.11
20 - 24	5,523	686	747.7	135.40
25 - 29	4,040	775	844.8	209.11
30 - 34	3,490	285	313.5	89.83
35 - 39	3,305	75	87.0	26.32
40 - 44	3,018	24	25.7	8.50
45 - 49	2,615	2	2.0	0.76
총수 All Ages	27,736	1,907	2090.3	75.36

〈표 4〉 重復調査 結果에 의한 1978 - 79 인구상태 표본조사 연령별 사망률 보완계수 : C-D方法 適用

Table 4 CDS's Adjustment Factors, Derived from Dual Report Surveys of 1978 and 1979, for Age Specific Death Rates: C-D Method Applied

( 1977 9 ~ 1978, 8 )

성 및 연령계급	대조대상 진수중						추정 총 사망자수 Estimated total deaths by C-D method	추정 계수 CDS's Adjusted factors
	CDS 조사 SRS Detected by both Surveys	CDS 조사 SRS Detected Only by CDS	사 략 SRS Detected Only by SRS	CDS 조사 SRS Detected Only by SRS	추정량조사 누락 진수 ( C-D 방법 적용 ) Estimation made by C-D method	추정 계수 CDS's Adjusted factors		
Sex and Age	(1)	(2)	(3)	(4)	(5)	(6)		
총수 Both Sexes	440	88	93	18.60	639.60	1,211.8		
1 ~ 39	19	19	16	16.00	70.00	1,842.1		
40 +	71	15	21	4.44	111.44	1,295.8		
남자 Males	256	42	52	8.53	358.53	1,203.1		
0	8	4	10	5.00	27.00	2,250.0		
1 ~ 39	42	8	11	2.10	63.10	1,262.0		
40 +	206	30	31	4.51	271.51	1,150.5		
여자 Females	184	46	40	10.00	280.00	1,217.4		
0	11	15	6	8.18	40.18	1,545.4		
1 ~ 39	29	7	9	2.17	47.17	1,310.3		
40 +	144	24	25	4.17	197.17	1,173.6		

$$\begin{aligned}
 \text{Notes (1)} &= [(1)+(2)] \times [(1)+(3)] \times (1) \\
 \text{(5)} &= (1)+(2)+(3)+(4) \\
 \text{(6)} &= (5) \times [(1)+(2)]
 \end{aligned}$$

< 표 5 > 重復調査 結果에 의한 1978 ~ 79 인구동태 표본조사 연령별 사망을 보완계수 :  
C-D方法 適用

Table 5: CDS's Adjustment Factors, Derived from Dual Report Surveys of 1978 and 1979, for Age Specific Death Rate: C-D Method Applied.

( 1978. 8 ~ 1979. 7 )

성 및 연령별 계급	대조대상 건수 중			추정량 조사 수 ( C-D 방법 적용 )	사망자 수 Estimated total deaths	추정 계수 CDS's Adjustment Factors
	CDS 조사 SRS 조사 Detected by both Surveys	CDS 조사 SRS 누락 Detected Only by CDS	CDS 누락 SRS 조사 Detected Only by SRS			
총수 Both Sexes	(1) 446	(2) 61	(3) 35	(4) 4.79	(5) 546.79	(6) 1.0785
0	22	9	12	4.91	47.91	1.5455
1 ~ 39	59	21	4	1.42	85.42	1.0678
40*	365	31	19	1.61	416.61	1.0520
남자 Males	261	33	18	2.28	314.28	1.0690
0	12	4	7	2.33	25.33	1.5831
1 ~ 39	41	12	3	0.88	56.88	1.0732
40*	208	17	8	0.65	233.65	1.0384
여자 Females	185	28	17	2.57	232.57	1.0919
0	10	5	5	2.50	22.50	1.5000
1 ~ 39	18	9	1	0.50	28.50	1.0556
40	157	14	11	0.98	182.98	1.0701

〈표 6〉 성 및 연령별 보완사망률; 1978 ~ 79 ( C-D 方法適用 )

Table 6. Adjusted Age Specific Death Rates by Sex, 1978~79 (C-D method applied)

〈男子, males〉

연령	1977. 10 ~ 1978. 9				1978. 8. ~ 1979. 7				1978~79	
	평균인구 Average popula- tion	CDS 사망자수 Deaths detected by CDS	보완 사망자수 Adjusted #Deaths	보완 사망률 Adjusted ASDRs	평균 인구수 Av. Pop.	CDS 사망자수 Deaths detected by CDS	보완 사망자수 Adjusted #Deaths	보완 사망률 Adjusted ASDRs	보완 사망률 Adjusted ASDRs	평균 사망률 Average ASDR
0	1,094	14	31.5	28.79	1,117	25	39.6	35.43	32.11	
1~4	4,616	10	12.6	2.73	4,754	10	10.7	2.26	2.49	
5~9	6,893	8	10.1	1.47	6,902	5	5.4	0.78	1.13	
10~14	6,496	3	3.8	0.58	6,881	4	4.3	0.65	0.62	
15~19	5,955	8	10.1	1.70	6,054	9	9.7	1.60	1.65	
20~24	3,460	6	7.6	2.19	4,088	5	5.4	1.31	1.75	
25~29	3,351	5	6.3	1.88	3,758	7	7.5	2.00	1.94	
30~34	3,219	7	8.8	2.74	3,637	8	8.6	2.36	2.55	
35~39	3,253	19	24.0	7.37	3,274	16	17.2	5.24	6.31	
40~44	2,832	18	20.7	7.31	3,036	23	25.1	8.27	7.79	
45~49	2,128	25	28.8	13.52	2,309	13	14.2	6.15	10.01	
50~54	1,632	25	28.6	17.62	1,663	28	30.6	18.38	13.00	
55~59	1,397	32	36.8	22.56	1,479	36	39.3	26.58	24.57	
60~64	989	41	47.2	47.69	1,040	39	42.6	40.94	44.32	
65~69	732	39	44.9	61.30	734	43	47.0	63.96	62.45	
70~74	393	31	35.7	90.76	443	39	42.6	96.12	93.44	
75~79	198	25	28.8	145.25	216	18	19.7	90.97	118.11	
80+	88	30	35.7	405.68	83	33	36.1	434.94	420.31	
총 수	48,726	346	416.30	8.54	51,168	361	385.9	7.54	8.04	
All ages										

< 표 6 > 성 및 연령별 보완사망율, 1978 ~ 79 ( C-D 方法適用 ) : 계속

Table 6. Adjusted Age Specific Death Rates by Sex, 1978~79 (C-D method applied): Con.

< 女子, Females >

연령 Ages	1977.10 ~ 1978. 9				1978. 8 ~ 1979. 7				1978~79	
	평균인구 Average Population	CDS 사망자수 Deaths detected by CDS	보완 사망자수 Adjusted Deaths	보완 사망율 Adjusted ASDR	평균 인구수 Av. Pop.	CDS 사망자수 Deaths detected by CDS	보완 사망자수 Adjusted Deaths	보완 사망율 Adjusted ASDRs	보완 사망율 Adjusted ASDR	평균 사망율 Average ASDR
0	1,015	30	44.8	45.67	1,044	27	40.5	38.79	42.24	
1~4	4,326	20	26.2	6.06	4,425	11	11.6	2.62	4.34	
5~9	6,386	4	5.2	0.82	6,467	2	2.1	0.33	0.58	
10~14	6,089	3	3.9	0.65	6,165	4	4.2	0.68	0.67	
15~19	5,478	2	2.6	0.48	5,745	5	5.3	0.92	0.70	
20~24	4,660	6	7.9	1.69	5,523	5	5.3	0.96	1.33	
25~29	3,659	4	5.2	1.43	4,040	4	4.2	1.04	1.24	
30~34	3,146	5	6.6	2.08	3,490	2	2.1	0.60	1.34	
35~39	3,240	2	2.6	0.81	3,305	2	2.1	0.64	0.73	
40~44	2,903	11	12.9	4.45	3,018	12	12.8	4.25	4.35	
45~49	2,469	10	11.7	4.75	2,615	9	9.6	3.68	4.22	
50~54	1,864	14	16.4	8.81	1,932	20	21.4	11.08	9.95	
55~59	1,505	12	14.1	9.36	1,623	4	4.3	2.64	6.00	
60~64	1,233	22	25.8	20.94	1,277	19	20.3	15.92	18.43	
65~69	1,031	28	32.9	31.87	1,102	26	27.8	25.25	28.56	
70~74	716	18	21.1	29.50	766	33	35.3	46.10	37.80	
75~79	486	39	45.8	94.18	515	36	38.5	74.80	84.49	
80+	237	47	52.2	232.91	275	47	50.4	133.27	208.09	
총 All ages	50,443	276	336	6.66	53,327	268	292.63	5.49	6.08	

부 록 Ⅲ

1 차 및 2 차 특별 회 고 조 사  
결 과 표

TABLE 1 . POPULATION BY AGE AND SEX : 1978

AGE	TOTAL	MALE	FEMAL	SEX RATIO
0 ~ 4	10,784 (10.9)	5,514 (11.3)	5,270 (10.5)	104.6
0	2,032 ( 2.0)	1,026 ( 2.1)	1,006 ( 2.0)	
1	2,125 ( 2.1)	1,041 ( 2.1)	1,084 ( 2.2)	
2	2,052 ( 2.1)	1,061 ( 2.2)	991 ( 2.0)	
3	2,246 ( 2.3)	1,149 ( 2.3)	1,097 ( 2.2)	
4	2,329 ( 2.3)	1,237 ( 2.5)	1,092 ( 2.2)	
5 ~ 9	13,090 (13.2)	6,770 (13.8)	6,320 (12.6)	107.1
5	2,495 ( 2.5)	1,290 ( 2.6)	1,205 ( 2.4)	
6	2,738 ( 2.8)	1,450 ( 3.0)	1,288 ( 2.6)	
7	2,726 ( 2.7)	1,429 ( 2.9)	1,297 ( 2.6)	
8	2,607 ( 2.6)	1,310 ( 2.8)	1,297 ( 2.6)	
9	2,524 ( 2.5)	1,291 ( 2.6)	1,233 ( 2.5)	
10 ~ 14	12,626 (12.7)	6,584 (13.5)	6,042 (12.0)	109.0
10	2,698 ( 2.7)	1,411 ( 2.9)	1,287 ( 2.6)	
11	2,391 ( 2.4)	1,228 ( 2.5)	1,163 ( 2.3)	
12	2,526 ( 2.5)	1,333 ( 2.7)	1,193 ( 2.4)	
13	2,461 ( 2.5)	1,304 ( 2.7)	1,157 ( 2.3)	
14	2,550 ( 2.6)	1,308 ( 2.7)	1,242 ( 2.5)	
15 ~ 19	11,115 (11.2)	5,775 (11.8)	5,340 (10.6)	108.1
15	2,513 ( 2.5)	1,317 ( 2.7)	1,196 ( 2.4)	
16	2,278 ( 2.3)	1,155 ( 2.4)	1,123 ( 2.2)	
17	2,255 ( 2.3)	1,186 ( 2.4)	1,069 ( 2.1)	
18	2,166 ( 2.2)	1,131 ( 2.3)	1,035 ( 2.1)	
19	1,903 ( 1.9)	986 ( 2.0)	917 ( 1.8)	
20 ~ 24	8,273 ( 8.3)	3,600 ( 7.4)	4,673 ( 9.3)	77.0
20	1,890 ( 1.9)	926 ( 1.9)	964 ( 1.9)	
21	1,724 ( 1.7)	755 ( 1.5)	969 ( 1.9)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22	1,555 ( 1.6)	589 ( 1.2)	966 ( 1.9)	
23	1,641 ( 1.7)	680 ( 1.4)	961 ( 1.9)	
24	1,463 ( 1.5)	650 ( 1.3)	813 ( 1.6)	
25 ~ 29	6,924 ( 7.0)	3,340 ( 6.8)	3,584 ( 7.7)	93.2
25	1,379 ( 1.4)	637 ( 1.3)	742 ( 1.5)	
26	1,550 ( 1.6)	770 ( 1.6)	780 ( 1.6)	
27	1,227 ( 1.2)	568 ( 1.2)	659 ( 1.3)	
28	1,317 ( 1.3)	645 ( 1.3)	672 ( 1.3)	
29	1,451 ( 1.5)	720 ( 1.5)	731 ( 1.5)	
30 ~ 34	6,518 ( 6.6)	3,314 ( 6.8)	3,204 ( 6.4)	103.4
30	1,395 ( 1.4)	706 ( 1.4)	689 ( 1.4)	
31	1,523 ( 1.5)	762 ( 1.6)	761 ( 1.5)	
32	1,205 ( 1.2)	617 ( 1.3)	588 ( 1.2)	
33	1,179 ( 1.2)	602 ( 1.2)	577 ( 1.1)	
34	1,216 ( 1.2)	627 ( 1.3)	589 ( 1.2)	
35 ~ 39	6,511 ( 6.6)	3,231 ( 6.6)	3,280 ( 6.5)	98.5
35	1,179 ( 1.2)	594 ( 1.2)	585 ( 1.2)	
36	1,383 ( 1.4)	716 ( 1.5)	667 ( 1.3)	
37	1,358 ( 1.4)	657 ( 1.3)	701 ( 1.4)	
38	1,247 ( 1.3)	582 ( 1.2)	665 ( 1.3)	
39	1,344 ( 1.4)	682 ( 1.4)	662 ( 1.3)	
40 ~ 44	5,810 ( 5.9)	2,965 ( 6.1)	2,845 ( 5.7)	104.2
40	1,179 ( 1.2)	649 ( 1.3)	530 ( 1.1)	
41	1,188 ( 1.2)	589 ( 1.2)	599 ( 1.2)	
42	1,139 ( 1.1)	556 ( 1.1)	583 ( 1.2)	
43	1,232 ( 1.2)	618 ( 1.3)	614 ( 1.2)	
44	1,072 ( 1.1)	553 ( 1.1)	519 ( 1.0)	
45 ~ 49	4,745 ( 4.8)	2,224 ( 4.5)	2,521 ( 5.0)	88.2
45	981 ( 1.0)	487 ( 1.0)	494 ( 1.0)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46	1,041 ( 1.1)	487 ( 1.0)	554 ( 1.1)	
47	976 ( 1.0)	443 ( 0.9)	533 ( 1.1)	
48	855 ( 0.9)	397 ( 0.8)	458 ( 0.9)	
49	892 ( 0.9)	410 ( 0.8)	482 ( 1.0)	
50 ~ 54	3,474 ( 3.5)	1,643 ( 3.4)	1,831 ( 3.6)	89.7
50	715 ( 0.7)	330 ( 0.7)	385 ( 0.8)	
51	754 ( 0.8)	378 ( 0.8)	376 ( 0.7)	
52	733 ( 0.7)	324 ( 0.7)	409 ( 0.8)	
53	629 ( 0.6)	297 ( 0.6)	332 ( 0.7)	
54	643 ( 0.6)	314 ( 0.6)	329 ( 0.7)	
55 ~ 59	2,994 ( 3.0)	1,450 ( 3.0)	1,544 ( 3.1)	93.9
55	674 ( 0.7)	334 ( 0.7)	340 ( 0.7)	
56	660 ( 0.7)	316 ( 0.6)	344 ( 0.7)	
57	621 ( 0.6)	294 ( 0.6)	327 ( 0.7)	
58	567 ( 0.6)	283 ( 0.6)	284 ( 0.6)	
59	472 ( 0.5)	223 ( 0.5)	249 ( 0.5)	
60 ~ 64	2,245 ( 2.3)	1,032 ( 2.1)	1,213 ( 2.4)	85.1
60	464 ( 0.5)	230 ( 0.5)	234 ( 0.5)	
61	487 ( 0.5)	226 ( 0.5)	261 ( 0.5)	
62	473 ( 0.5)	226 ( 0.5)	247 ( 0.5)	
63	417 ( 0.4)	175 ( 0.4)	242 ( 0.2)	
64	404 ( 0.4)	175 ( 0.4)	229 ( 0.5)	
65 ~ 69	1,775 ( 1.8)	740 ( 1.5)	1,035 ( 2.1)	71.5
65	396 ( 0.4)	159 ( 0.3)	237 ( 0.5)	
66	401 ( 0.4)	177 ( 0.4)	224 ( 0.4)	
67	356 ( 0.4)	150 ( 0.3)	206 ( 0.4)	
68	291 ( 0.3)	134 ( 0.3)	157 ( 0.3)	
69	331 ( 0.3)	120 ( 0.2)	211 ( 0.4)	
70 ~ 74	1,116 ( 1.1)	437 ( 0.9)	679 ( 1.4)	64.3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70	256 ( 0.3)	117 ( 0.2)	139 ( 0.3)	
71	229 ( 0.2)	85 ( 0.2)	144 ( 0.3)	
72	256 ( 0.3)	102 ( 0.2)	154 ( 0.3)	
73	225 ( 0.2)	86 ( 0.2)	139 ( 0.3)	
74	150 ( 0.2)	47 ( 0.1)	103 ( 0.2)	
75 ~ 79	671 ( 0.7)	193 ( 0.4)	478 ( 1.0)	40.4
75	140 ( 0.1)	35 ( 0.1)	105 ( 0.2)	
76	149 ( 0.2)	47 ( 0.1)	102 ( 0.2)	
77	143 ( 0.1)	49 ( 0.1)	94 ( 0.2)	
78	130 ( 0.1)	39 ( 0.1)	91 ( 0.2)	
79	109 ( 0.1)	23 ( 0.0)	86 ( 0.2)	
80 ~ 84	309 ( 0.3)	85 ( 0.2)	224 ( 0.4)	37.9
80	81 ( 0.1)	26 ( 0.1)	55 ( 0.1)	
81	70 ( 0.1)	20 ( 0.0)	50 ( 0.1)	
82	71 ( 0.1)	17 ( 0.0)	54 ( 0.1)	
83	43 ( 0.0)	11 ( 0.0)	32 ( 0.1)	
84	44 ( 0.0)	11 ( 0.0)	33 ( 0.1)	
85 ~ 89	130 ( 0.1)	27 ( 0.1)	103 ( 0.2)	26.2
85	27 ( 0.0)	7 ( 0.0)	20 ( 0.0)	
86	35 ( 0.0)	7 ( 0.0)	28 ( 0.1)	
87	35 ( 0.0)	7 ( 0.0)	28 ( 0.1)	
88	20 ( 0.0)	4 ( 0.0)	16 ( 0.0)	
89	13 ( 0.0)	2 ( 0.0)	11 ( 0.0)	
90 ~ 94	24 ( 0.0)	5	19	26.3
90	11 ( 0.0)	3	8	
91	7 ( 0.0)	2	5	
92	5 ( 0.0)	-	5	
93	- ( 0.0)	-	-	
94	1 ( 0.0)	-	1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95 ~ 99	1 ( 0.0)	-	1	
95	1 ( 0.0)	-	1	
96	- ( 0.0)	-	-	
97	- ( 0.0)	-	-	
98	- ( 0.0)	-	-	
99	-	-	-	
100+	1 ( 0.0)	-	1	
<b>TOTAL</b>	<b>99,136(100.0)</b>	<b>48,929(100.0)</b>	<b>50,207(100.0)</b>	

TABLE 2 . POPULATION BY AGE AND SEX:1979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0 ~ 4	11,088 (10.7)	5,725 (11.2)	5,363 (10.1)	106.7
0	2,112 ( 2.0)	1,089 ( 2.1)	1,023 ( 1.9)	
1	2,226 ( 2.1)	1,161 ( 2.3)	1,065 ( 2.0)	
2	2,152 ( 2.1)	1,085 ( 2.1)	1,067 ( 2.0)	
3	2,191 ( 2.1)	1,127 ( 2.2)	1,064 ( 2.0)	
4	2,407 ( 2.3)	1,263 ( 2.5)	1,144 ( 2.2)	
5 ~ 9	13,448 (12.9)	6,975 (13.6)	6,473 (12.2)	107.8
5	2,504 ( 2.4)	1,269 ( 2.5)	1,235 ( 2.3)	
6	2,543 ( 2.4)	1,339 ( 2.6)	1,204 ( 2.3)	
7	2,888 ( 2.8)	1,551 ( 3.0)	1,337 ( 2.5)	
8	2,779 ( 2.7)	1,432 ( 2.8)	1,347 ( 2.5)	
9	2,734 ( 2.6)	1,384 ( 2.7)	1,350 ( 2.6)	
10 ~ 14	12,864 (12.4)	6,671 (13.0)	6,193 (11.7)	107.7
10	2,609 ( 2.5)	1,364 ( 2.7)	1,245 ( 2.4)	
11	2,752 ( 2.6)	1,415 ( 2.8)	1,337 ( 2.5)	
12	2,480 ( 2.4)	1,238 ( 2.4)	1,242 ( 2.4)	
13	2,543 ( 2.4)	1,364 ( 2.7)	1,179 ( 2.2)	
14	2,480 ( 2.4)	1,290 ( 2.5)	1,190 ( 2.3)	
15 ~ 19	11,556 (11.1)	5,961 (11.6)	5,595 (10.6)	106.5
15	2,498 ( 2.4)	1,286 ( 2.5)	1,212 ( 2.3)	
16	2,439 ( 2.3)	1,259 ( 2.5)	1,180 ( 2.2)	
17	2,335 ( 2.2)	1,202 ( 2.3)	1,133 ( 2.1)	
18	2,147 ( 2.1)	1,122 ( 2.2)	1,025 ( 1.9)	
19	2,137 ( 2.1)	1,092 ( 2.1)	1,045 ( 2.0)	
20 ~ 24	9,230 ( 8.9)	3,967 ( 7.7)	5,263 (10.0)	75.4
20	2,003 ( 1.9)	939 ( 1.8)	1,064 ( 2.0)	
21	1,835 ( 1.8)	775 ( 1.5)	1,060 ( 2.0)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22	1,759 ( 1.7)	687 ( 1.3)	1,072 ( 2.0)	
23	1,621 ( 1.6)	670 ( 1.3)	951 ( 1.8)	
24	2,012 ( 1.9)	896 ( 1.7)	1,116 ( 2.1)	
25 ~ 29	7,587 ( 7.3)	3,750 ( 7.3)	3,837 ( 7.3)	97.7
25	1,565 ( 1.5)	763 ( 1.5)	802 ( 1.5)	
26	1,519 ( 1.5)	729 ( 1.4)	790 ( 1.5)	
27	1,727 ( 1.7)	866 ( 1.7)	861 ( 1.6)	
28	1,311 ( 1.3)	633 ( 1.2)	678 ( 1.3)	
29	1,465 ( 1.4)	759 ( 1.5)	706 ( 1.3)	
30 ~ 34	7,057 ( 6.8)	3,519 ( 6.9)	3,538 ( 6.7)	99.5
30	1,433 ( 1.4)	678 ( 1.3)	755 ( 1.4)	
31	1,525 ( 1.5)	753 ( 1.5)	772 ( 1.5)	
32	1,597 ( 1.5)	784 ( 1.5)	813 ( 1.5)	
33	1,278 ( 1.2)	692 ( 1.4)	586 ( 1.1)	
34	1,224 ( 1.2)	612 ( 1.2)	612 ( 1.2)	
35 ~ 39	6,644 ( 6.4)	3,317 ( 6.5)	3,327 ( 6.3)	99.7
35	1,230 ( 1.2)	630 ( 1.2)	600 ( 1.1)	
36	1,269 ( 1.2)	633 ( 1.2)	636 ( 1.2)	
37	1,422 ( 1.4)	717 ( 1.4)	705 ( 1.3)	
38	1,372 ( 1.3)	667 ( 1.3)	705 ( 1.3)	
39	1,351 ( 1.3)	670 ( 1.3)	681 ( 1.3)	
40 ~ 44	6,054 ( 5.8)	3,072 ( 6.0)	2,982 ( 5.6)	103.0
40	1,307 ( 1.3)	676 ( 1.3)	631 ( 1.2)	
41	1,184 ( 1.1)	632 ( 1.2)	552 ( 1.0)	
42	1,203 ( 1.2)	578 ( 1.1)	625 ( 1.2)	
43	1,145 ( 1.1)	569 ( 1.1)	576 ( 1.1)	
44	1,215 ( 1.2)	617 ( 1.2)	598 ( 1.1)	
45 ~ 49	5,109 ( 4.9)	2,429 ( 4.7)	2,680 ( 5.1)	90.6
45	1,134 ( 1.1)	568 ( 1.1)	566 ( 1.1)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46	1,025 ( 1.0)	493 ( 1.0)	532 ( 1.0)	
47	1,065 ( 1.0)	507 ( 1.0)	558 ( 1.1)	
48	980 ( 0.9)	438 ( 0.9)	542 ( 1.0)	
49	905 ( 0.9)	423 ( 0.8)	482 ( 0.9)	
50 ~ 54	3,745 ( 3.6)	1,737 ( 3.4)	2,008 ( 3.8)	86.5
50	856 ( 0.8)	392 ( 0.8)	464 ( 0.9)	
51	787 ( 0.8)	398 ( 0.8)	389 ( 0.7)	
52	759 ( 0.7)	358 ( 0.7)	401 ( 0.8)	
53	713 ( 0.7)	313 ( 0.6)	400 ( 0.8)	
54	670 ( 0.6)	316 ( 0.6)	354 ( 0.7)	
55 ~ 59	3,210 ( 3.1)	1,547 ( 3.0)	1,663 ( 3.1)	93.0
55	680 ( 0.6)	337 ( 0.7)	343 ( 0.6)	
56	686 ( 0.7)	335 ( 0.7)	351 ( 0.7)	
57	645 ( 0.6)	298 ( 0.6)	347 ( 0.7)	
58	633 ( 0.6)	297 ( 0.6)	336 ( 0.6)	
59	566 ( 0.5)	280 ( 0.5)	286 ( 0.5)	
60 ~ 64	2,282 ( 2.2)	1,040 ( 2.0)	1,242 ( 2.4)	83.7
60	453 ( 0.4)	220 ( 0.4)	233 ( 0.4)	
61	469 ( 0.5)	201 ( 0.4)	268 ( 0.5)	
62	462 ( 0.4)	211 ( 0.4)	251 ( 0.5)	
63	491 ( 0.5)	239 ( 0.5)	252 ( 0.5)	
64	407 ( 0.4)	169 ( 0.3)	238 ( 0.5)	
65 ~ 69	1,860 ( 1.8)	759 ( 1.5)	1,101 ( 2.1)	68.9
65	425 ( 0.4)	177 ( 0.3)	248 ( 0.5)	
66	400 ( 0.4)	162 ( 0.3)	238 ( 0.5)	
67	358 ( 0.3)	155 ( 0.3)	203 ( 0.4)	
68	373 ( 0.4)	140 ( 0.3)	233 ( 0.4)	
69	304 ( 0.4)	125 ( 0.2)	179 ( 0.3)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70 ~ 74	1,188 ( 1.1)	445 ( 0.9)	743 ( 1.4)	59.9
70	274 ( 0.3)	100 ( 0.2)	174 ( 0.3)	
71	251 ( 0.2)	109 ( 0.2)	142 ( 0.3)	
72	222 ( 0.2)	73 ( 0.1)	149 ( 0.3)	
73	231 ( 0.2)	96 ( 0.2)	135 ( 0.3)	
74	210 ( 0.2)	67 ( 0.1)	143 ( 0.3)	
75 ~ 79	663 ( 0.6)	213 ( 0.4)	450 ( 0.9)	47.3
75	131 ( 0.1)	49 ( 0.1)	82 ( 0.2)	
76	121 ( 0.1)	30 ( 0.1)	91 ( 0.2)	
77	148 ( 0.1)	52 ( 0.1)	96 ( 0.2)	
78	137 ( 0.1)	45 ( 0.1)	92 ( 0.2)	
79	126 ( 0.1)	37 ( 0.1)	89 ( 0.2)	
80 ~ 84	333 ( 0.3)	80 ( 0.2)	253 ( 0.5)	31.6
80	87 ( 0.1)	21 -	66 ( 0.1)	
81	76 ( 0.1)	21 -	55 ( 0.1)	
82	71 ( 0.1)	15 -	56 ( 0.1)	
83	60 ( 0.1)	15 -	45 ( 0.1)	
84	39 -	8 -	31 ( 0.1)	
85 ~ 89	141 ( 0.1)	33 ( 0.1)	108 ( 0.2)	30.6
85	47 -	10 -	37 ( 0.1)	
86	23 -	5 -	18 -	
87	29 -	11 -	18 -	
88	26 -	4 -	22 -	
89	16 -	3 -	13 -	
90 ~ 94	29 -	5 -	24 -	20.8
90	10	1 -	9 -	

AGE	TOTAL	MALE	FEMALE	SEX RATIO
91	12 -	1	11	20.8
92	3 -	2	1	
93	4 -	1	3	
94	0 -	0	0	
95 +	1 -	0	1	
Unknown	1	1		
Total	104,090(100.0)	51,246(100.0)	52,844(100.0)	

TABLE 3 . POPULATION BY AGE, AREA AND SEX : 1978 ( MALE )

AGE	SEOUL	CITIES	RURAL AREAS
0 ~ 4	1,218 (11.7)	1,673 (11.5)	2,623 (10.9)
5 ~ 9	1,369 (13.1)	1,894 (13.0)	3,507 (14.6)
10 ~ 14	1,129 (10.8)	1,793 (12.3)	3,662 (15.3)
15 ~ 19	1,315 (12.6)	965 (13.5)	2,495 (10.4)
20 ~ 24	882 ( 8.5)	1,233 ( 8.5)	1,485 ( 6.2)
25 ~ 29	934 ( 8.9)	1,123 ( 7.7)	1,283 ( 5.4)
30 ~ 34	924 ( 8.9)	1,084 ( 7.5)	1,306 ( 5.4)
35 ~ 39	809 ( 7.8)	988 ( 6.8)	1,434 ( 6.0)
40 ~ 44	635 ( 6.1)	872 ( 6.0)	1,458 ( 6.1)
45 ~ 49	450 ( 4.3)	595 ( 4.1)	1,179 ( 4.9)
50 ~ 54	269 ( 2.6)	432 ( 3.0)	942 ( 3.9)
55 ~ 59	235 ( 2.3)	346 ( 2.4)	869 ( 3.6)
60 ~ 64	128 ( 1.2)	247 ( 1.7)	657 ( 2.7)
65 ~ 69	70 ( 0.7)	148 ( 1.0)	522 ( 2.2)
70 ~ 74	46 ( 0.4)	76 ( 0.5)	315 ( 1.3)
75 ~ 79	14 ( 0.1)	33 ( 0.2)	146 ( 0.6)
80 ~ 84	7 ( 0.1)	10 ( 0.1)	68 ( 0.3)
85 ~ 89	3 -	7 -	17 ( 0.1)
90 +	0 -	0 -	5 -
Total	10,437 (100.0)	14,519 (100.0)	23,937 (100.0)
0 ~ 14	3,716 (35.6)	5,360 (36.9)	9,792 (40.8)
15 ~ 59	6,453 (61.8)	8,638 (59.5)	12,451 (51.9)
60 +	268 ( 2.6)	521 ( 3.6)	1,730 ( 7.2)

POPULATION BY AGE, AREA AND SEX : 1978 (FEMALE)

AGE	SEOUL	CITIES	RURAL AREAS
0 ~ 4	1,118 (10.3)	1,548 (10.4)	2,604 (10.6)
5 ~ 9	1,287 (11.9)	1,741 (11.7)	3,292 (13.4)
10 ~ 14	1,045 ( 9.6)	1,565 (10.5)	3,432 (14.0)
15 ~ 19	1,268 (11.7)	1,949 (13.1)	2,123 ( 8.7)
20 ~ 24	1,354 (12.5)	1,666 (11.2)	1,653 ( 6.7)
25 ~ 29	995 ( 9.2)	1,190 ( 8.0)	1,399 ( 5.7)
30 ~ 34	885 ( 8.1)	1,068 ( 7.2)	1,251 ( 5.1)
35 ~ 39	744 ( 6.9)	964 ( 6.5)	1,572 ( 6.4)
40 ~ 44	582 ( 5.4)	791 ( 5.3)	1,472 ( 6.0)
45 ~ 49	455 ( 4.2)	656 ( 4.4)	1,410 ( 5.8)
50 ~ 54	307 ( 2.8)	494 ( 3.3)	1,030 ( 4.2)
55 ~ 59	241 ( 2.2)	394 ( 2.7)	909 ( 3.7)
60 ~ 64	218 ( 2.0)	265 ( 1.8)	730 ( 3.0)
65 ~ 69	164 ( 1.5)	245 ( 1.6)	626 ( 2.6)
70 ~ 74	103 ( 0.9)	149 ( 1.0)	427 ( 1.7)
75 ~ 79	55 ( 0.5)	97 ( 0.7)	326 ( 1.3)
80 ~ 84	21 ( 0.2)	48 ( 0.3)	155 ( 0.6)
85 ~ 89	13 ( 0.1)	14 ( 0.1)	76 ( 0.3)
90 +	4 -	5 -	12 -
Total	10,859 (100.0)	14,849 (100.0)	24,499 (100.0)
0 ~ 14	3,450 (31.8)	4,854 (32.7)	9,328 (38.1)
15 ~ 59	6,831 (62.9)	9,172 (61.8)	12,819 (52.3)
60 +	578 ( 5.3)	823 ( 5.5)	2,352 ( 9.6)

TABLE 4 . POPULATION BY AGE, AREA AND SEX : 1979 (MALE)

AGE	SEOUL	CITIES	RURAL AREAS
0 ~ 4	1,387 (11.7)	1,738 (11.3)	2,600 (10.9)
5 ~ 9	1,557 (13.1)	2,018 (13.1)	3,400 (14.2)
10 ~ 14	1,283 (10.8)	1,835 (11.9)	3,553 (14.8)
15 ~ 19	1,351 (11.3)	2,072 (13.4)	2,538 (10.6)
20 ~ 24	999 ( 8.4)	1,356 ( 8.8)	1,612 ( 6.7)
25 ~ 29	1,109 ( 9.3)	1,262 ( 8.2)	1,379 ( 5.8)
30 ~ 34	1,057 ( 8.9)	1,190 ( 7.7)	1,272 ( 5.3)
35 ~ 39	988 ( 8.3)	991 ( 6.4)	1,338 ( 5.6)
40 ~ 44	739 ( 6.2)	880 ( 5.7)	1,453 ( 6.1)
45 ~ 49	510 ( 4.3)	687 ( 4.5)	1,232 ( 5.1)
50 ~ 54	333 ( 2.8)	453 ( 2.9)	951 ( 4.0)
55 ~ 59	259 ( 2.2)	386 ( 2.5)	902 ( 3.8)
60 ~ 64	157 ( 1.3)	235 ( 1.5)	648 ( 2.7)
65 ~ 69	97 ( 0.8)	159 ( 1.0)	503 ( 2.1)
70 ~ 74	48 ( 0.4)	84 ( 0.5)	313 ( 1.3)
75 ~ 79	20 ( 0.2)	41 ( 0.3)	152 ( 0.6)
80 ~ 84	6 ( 0.0)	14 ( 0.1)	60 ( 0.3)
85 ~ 89	2 ( 0.0)	7 ( 0.0)	24 ( 0.1)
90 +	1 ( 0.0)	0	4 ( 0.0)
UNKNOWN	1	0	0
<b>Total</b>	<b>11,904 (100.0)</b>	<b>15,408 (100.0)</b>	<b>23,934 (100.0)</b>
0 ~ 14	4,227 (35.5)	5,591 (36.3)	9,553 (39.9)
15 ~ 59	7,345 (61.7)	9,277 (60.2)	12,677 (53.0)
60 +	331 ( 2.8)	540 ( 3.5)	1,704 ( 7.1)
UNKNOWN	1 ( 0.0)		

POPULATION BY AGE, AREA AND SEX : 1979 ( FEMALE )

AGE	SEOUL	CITIES	RURAL AREAS
0 ~ 4	1,268 (10.2)	1,699 (10.7)	2,396 ( 9.8)
5 ~ 9	1,454 (11.7)	1,824 (11.5)	3,195 (13.0)
10 ~ 14	1,132 ( 9.1)	1,693 (10.7)	3,368 (13.7)
15 ~ 19	1,427 (11.5)	1,968 (12.4)	2,200 ( 9.0)
20 ~ 24	1,630 (13.1)	1,831 (11.6)	1,802 ( 7.3)
25 ~ 29	1,164 ( 9.3)	1,296 ( 8.2)	1,377 ( 5.6)
30 ~ 34	1,097 ( 8.8)	1,121 ( 7.1)	1,320 ( 5.4)
35 ~ 39	854 ( 6.9)	1,007 ( 6.4)	1,466 ( 6.0)
40 ~ 44	639 ( 5.1)	828 ( 5.2)	1,515 ( 6.2)
45 ~ 49	540 ( 4.3)	746 ( 4.7)	1,394 ( 5.7)
50 ~ 54	364 ( 2.9)	523 ( 3.3)	1,121 ( 4.6)
55 ~ 59	262 ( 2.1)	428 ( 2.7)	973 ( 4.0)
60 ~ 64	207 ( 1.7)	287 ( 1.8)	748 ( 3.0)
65 ~ 69	196 ( 1.6)	262 ( 1.7)	643 ( 2.6)
70 ~ 74	134 ( 1.1)	146 ( 0.9)	463 ( 1.9)
75 ~ 79	50 ( 0.4)	96 ( 0.6)	304 ( 1.2)
80 ~ 84	22 ( 0.2)	53 ( 0.3)	178 ( 0.7)
85 ~ 89	12 ( 0.1)	18 ( 0.1)	78 ( 0.3)
90 +	4 ( 0.0)	7 ( 0.0)	14 ( 0.1)
Total	12,456 (100.0)	15,833 (100.0)	24,555(100.0)
0 ~ 14	3,854 (30.9)	5,216 (32.9)	8,959 (36.5)
15 ~ 59	7,977 (64.0)	9,748 (61.6)	13,168 (53.6)
60 +	625 ( 5.0)	869 ( 5.5)	2,428 ( 9.9)

TABLE 5 . POPULATION PROPOR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SEX:1978 (FOR AGE OF 6 AND OVER)

	MALE	FEMALE	TOTAL
NON-EDUCATION	11.2	21.0	16.2
PRIMARY S.	38.4	43.9	41.2
MIDDLE S.	22.2	18.8	20.5
HIGH S.	20.6	13.8	17.1
COLLEGE OR MORE	7.6	2.5	5.0
TOTAL	100.0	100.0	100.0

TABLE 6.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1978

AGE	NON-FORMAL S.	PRIMARY S.	MIDDLE S.	HIGH S.	COLLEGE OR MORE	NO RESPONSE	TOTAL
6 ~ 9	1,787 (16.9)	8,798 (83.0)	11 (0.1)	-	-	4 (0.0)	10,595 (100.0)
10 ~ 14	89 (0.7)	7,298 (57.8)	5,125 (40.6)	109 (0.9)	-	5 (0.0)	12,626 (100.0)
15 ~ 19	109 (1.0)	1,925 (17.3)	3,475 (31.3)	5,303 (47.7)	305 (2.7)	- (0.0)	11,117 (100.0)
20 ~ 24	132 (1.6)	2,367 (28.6)	2,260 (27.3)	2,574 (31.1)	937 (11.3)	5 (0.1)	8,275 (100.0)
25 ~ 29	154 (2.2)	2,100 (30.4)	1,814 (26.2)	2,093 (30.2)	762 (11.0)	1 (0.0)	6,924 (100.0)
30 ~ 34	266 (4.1)	2,315 (35.5)	1,550 (23.8)	1,704 (26.1)	683 (10.5)	- (0.0)	6,518 (100.0)
35 ~ 39	617 (9.5)	2,716 (41.7)	1,290 (19.8)	1,228 (18.9)	660 (10.1)	- (0.0)	6,511 (100.0)
40 ~ 44	866 (14.9)	2,556 (44.0)	934 (16.1)	963 (16.6)	491 (8.5)	- (0.0)	5,810 (100.0)
45 ~ 49	1,247 (26.3)	2,038 (43.0)	590 (12.4)	542 (11.4)	328 (6.9)	- (0.0)	4,745 (100.0)
50 ~ 54	1,384 (39.8)	1,336 (38.5)	337 (9.7)	274 (7.9)	142 (4.1)	1 (0.0)	3,474 (100.0)
55 ~ 59	1,583 (52.9)	989 (33.0)	214 (7.2)	114 (3.8)	94 (3.1)	- (0.0)	2,994 (100.0)
60 +	4,881 (77.8)	1,050 (16.7)	167 (2.7)	114 (1.8)	61 (1.0)	- (0.0)	6,273 (100.0)

TABLE 7.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REA:1979

EDUCATION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UNDER 7	3,630 (14.9)	4,668 (14.9)	7,225 (14.9)	15,523 (14.9)
NON	1,132 ( 4.6)	2,076 ( 6.6)	7,370 (15.2)	10,578 (10.2)
PRIMARY S.	6,541 (26.9)	9,874 (31.6)	19,490 (40.2)	35,905 (34.5)
MIDDLE S.	4,627 (19.0)	6,309 (20.2)	8,495 (17.5)	19,431 (18.7)
HIGH S.	5,803 (23.8)	6,519 (20.9)	5,053 (10.4)	17,380 (16.7)
COLLEGE OR MORE	2,625 (10.8)	1,783 ( 5.7)	839 ( 1.7)	5,247 ( 5.0)
N · R	2 ( 0.0)	12 ( 0.0)	12 ( 0.0)	26 ( 0.0)
TOTAL	24,360 (100.0)	31,241 (100.0)	48,489 (100.0)	104,090 (100.0)

TABLE 8 .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 1979

AGE	NON- FORMAL S.	PRIMARY S	MIDDLE S.	HIGH S.	COLLEGE OR MORE	NO- RESPONSE	TOTAL
6 ~ 9	1,554 (14.2)	9,361 (85.5)	-	-	-	29 ( 0.3)	10,944 (100.0)
10 ~ 14	105 ( 0.8)	7,239 (56.2)	5,436 (42.3)	84 ( 0.7)	-	3 ( 0.0)	12,864 (100.0)
15 ~ 1	99 ( 0.9)	1,662 (14.4)	3,421 (29.6)	5,969 (51.8)	404 ( 3.5)	1 ( 0.0)	11,556 (100.0)
20 ~ 24	173 ( 1.9)	2,206 (23.9)	2,567 (27.8)	3,155 (34.1)	1,122 (12.2)	7 ( 0.1)	9,230 (100.0)
25 ~ 29	147 ( 1.9)	1,891 (24.9)	2,164 (28.5)	2,482 (32.7)	899 (11.8)	4 ( 0.1)	7,587 (100.0)
30 ~ 34	223 ( 3.2)	2,267 (31.2)	1,715 (24.3)	1,978 (28.0)	871 (12.3)	3 ( 0.0)	7,057 (100.0)
35 ~ 39	499 ( 7.5)	2,637 (39.7)	1,421 (21.4)	1,362 (20.5)	723 (10.9)	2 ( 0.0)	6,644 (100.0)
40 ~ 44	769 (12.7)	2,638 (43.6)	1,081 (17.9)	1,034 (17.1)	529 ( 8.7)	3 ( 0.0)	6,054 (100.0)
45 ~ 49	1,112 (21.8)	2,215 (43.4)	748 (14.6)	685 (13.4)	347 ( 6.8)	2 ( 0.0)	5,109 (100.0)
50 ~ 54	1,325 (35.4)	1,548 (41.3)	391 (10.4)	324 ( 8.7)	157 ( 4.2)	-	3,745 (100.0)
55 ~ 59	1,592 (49.6)	1,085 (33.8)	259 ( 8.1)	164 ( 5.1)	110 ( 3.4)	-	3,210 (100.0)
60 +	4,946 (76.1)	1,132 (17.4)	214 ( 3.3)	126 ( 1.9)	76 ( 1.2)	3 ( 0.0)	6,497 (100.0)
TOTAL	12,544 (13.9)	35,881 (39.6)	19,414 (21.5)	17,363 (19.2)	5,238 ( 5.8)	57 ( 0.0)	6,497 (100.0)

TABLE 9 . POPULATION PROPORTION BY MARITAL STATUS (FOR AGE OF 15 AND OVER) : 1978

STATUS	MALE	FEMALE	TOTAL
SINGLE	36.9	28.0	32.3
CURRENTLY M.	60.6	56.0	58.1
DIVORCED	0.7	1.5	1.1
WIDOWED	1.8	14.5	7.5
TOTAL	100.0	100.0	100.0

TABLE 10 . POPULATION BY MARITAL STATUS AND AGE (FOR AGE OF 15 AND OVER) : 1979

AGE	SINGLE	CURRENTLY MARRIED	DIVORCED	WIDOWED	NO-RESPONSE	TOTAL
15 ~ 19	11,438 (99.0)	110 ( 1.0)	4 ( 0.0)	4 ( 0.0)	-	11,556 (100.0)
20 ~ 24	6,793 (73.6)	2,339 (25.3)	7 ( 0.1)	12 ( 0.1)	79 ( 0.9)	9,230 (100.0)
25 ~ 29	2,060 (27.2)	5,468 (72.1)	34 ( 0.4)	15 ( 0.2)	10 ( 0.1)	7,587 (100.0)
30 ~ 34	274 ( 1.9)	6,614 (45.2)	86 ( 0.6)	73 ( 0.5)	10 ( 0.1)	7,057 (100.0)
35 ~ 39	63 ( 0.9)	6,300 (94.8)	108 ( 1.6)	161 ( 2.4)	12 ( 0.2)	6,644 (100.0)
40 ~ 44	30 ( 0.5)	5,652 (93.4)	102 ( 1.7)	261 ( 4.3)	9 ( 0.1)	6,054 (100.0)
45 ~ 49	13 ( 0.3)	4,531 (88.7)	83 ( 1.6)	475 ( 9.3)	7 ( 0.1)	5,109 (100.0)
50 ~ 54	10 ( 0.3)	3,039 (81.1)	60 ( 1.6)	623 (16.6)	13 ( 0.3)	3,745 (100.0)
55 ~ 59	8 ( 0.2)	2,426 (75.6)	38 ( 1.2)	728 (22.7)	10 ( 0.3)	3,210 (100.0)
60 +	19 ( 0.3)	3,288 (50.6)	49 ( 0.8)	3,098 (47.7)	43 ( 0.7)	6,497 (100.0)
TOTAL	20,708 (31.1)	39,767 (59.5)	571 ( 0.9)	5,450 ( 8.2)	193 ( 0.3)	66,689 (100.0)

TABLE 11 . POPULATION BY MARITAL STATUS AND AREA ( FOR AGE OF  
15 AND OVER ) : 1979

STATUS	SEOUL	OTHER CITIES	RURAL AREAS	TOTAL
SINGLE	5,655 (34.7)	7,189 (35.2)	7,997 (26.7)	20,841 (31.3)
MARRIED	9,427 (57.9)	11,610 (56.8)	18,756 (62.6)	39,793 (59.7)
DIVORCED	174 ( 1.1)	175 ( 0.9)	229 ( 0.8)	578 ( 0.9)
WIDOWED	1,020 ( 6.3)	1,457 ( 7.1)	2,993 (10.0)	5,470 ( 8.2)
N . R	3 -	3 -	2 -	8 -
TOTAL	16,279 (100.0)	20,434(100.0)	29,977 (100.0)	66,690 (100.0)

TABLE 12 . NUMBER OF EVER-MARRIED WOMEN BY MARITAL STATUS  
AND AGE : 1978

AGE	CURRENTLY MARRIED	DIVORCED	WIDOWED	TOTAL
15 ~ 19	131 (93.6)	3 ( 2.1)	6 ( 4.3)	140 (100.0)
20 ~ 24	1,695 (98.4)	10 ( 0.6)	17 ( 1.0)	1,722 (100.0)
25 ~ 29	3,069 (98.2)	39 ( 1.3)	17 ( 0.5)	3,125 (100.0)
30 ~ 34	2,987 (95.6)	96 ( 3.1)	41 ( 1.3)	3,124 (100.0)
35 ~ 39	3,020 (93.5)	85 ( 2.6)	125 ( 3.9)	3,230 (100.0)
40 ~ 44	2,471 (88.3)	82 ( 2.9)	247 ( 8.8)	2,800 (100.0)
45 ~ 49	1,946 (78.1)	93 ( 3.7)	455 (18.2)	2,494 (100.0)
50 ~ 54	1,232 (67.8)	43 ( 2.4)	540 (29.8)	1,815 (100.0)
55 ~ 59	852 (55.8)	29 ( 1.9)	646 (42.3)	1,527 (100.0)
60 +	1,028 (27.8)	26 ( 0.7)	2,649 (71.5)	3,703 (100.0)
TOTAL	18,431 (77.9)	506 ( 2.1)	4,743 (20.0)	23,680 (100.0)

TABLE 13 . NUMBER OF EVER-MARRIED WOMEN BY MARITAL STATUS  
AND AGE : 1979

AGE	MARRIED	DIVORCED	WIDOWED	TOTAL
15 ~ 19	91 (94.8)	2 ( 2.1)	3 ( 3.1)	96 (100.0)
20 ~ 24	1,967 (99.4)	4 ( 0.2)	8 ( 0.4)	1,979 (100.0)
25 ~ 29	3,312 (99.0)	24 ( 0.7)	11 ( 0.3)	3,347 (100.0)
30 ~ 34	3,347 (96.2)	64 ( 1.8)	67 ( 2.0)	3,478 (100.0)
35 ~ 39	3,071 (93.1)	78 ( 2.4)	148 ( 4.5)	3,297 (100.0)
40 ~ 44	2,661 (89.6)	66 ( 2.2)	242 ( 8.2)	2,969 (100.0)
45 ~ 49	2,161 (81.0)	69 ( 2.6)	440 (16.4)	2,670 (100.0)
50 ~ 54	1,372 (68.8)	48 ( 2.4)	575 (28.8)	1,995 (100.0)
55 ~ 59	966 (58.5)	27 ( 1.6)	658 (39.9)	1,651 (100.0)
60 +	1,112 (28.7)	33 ( 0.9)	2,727 (70.4)	3,872 (100.0)
NO RESPONSE	13 (41.9)	5 (16.1)	13 (41.9)	31 (100.0)
TOTAL	20,073	420	4,892	25,385

TABLE 14 . NUMBER OF HOUSEHOLDS BY HOUSEHOLD SIZE AND AREA :  
1979

HOUSEHOLD SIZE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1	252 ( 4.5)	488 ( 6.7)	651 ( 6.2)	1,391 ( 6.0)
2	645 (11.5)	936 (12.9)	1,218 (11.7)	2,799 (12.2)
3	887 (15.8)	1,157 (15.9)	1,347 (12.8)	3,391 (14.5)
4	1,280 (22.9)	1,491 (20.5)	1,792 (16.5)	4,563 (19.6)
5	1,208 (21.6)	1,418 (19.5)	1,952 (18.7)	4,578 (19.6)
6	753 (13.4)	860 (11.8)	1,544 (14.8)	3,157 (13.5)
7	339 ( 6.1)	547 ( 7.5)	1,037 ( 9.9)	1,923 ( 8.2)
8	133 ( 2.4)	212 ( 2.9)	564 ( 5.4)	909 ( 3.9)
9	56 ( 1.0)	101 ( 1.4)	219 ( 2.1)	376 ( 1.6)
10 +	46 ( 0.8)	56 ( 0.8)	126 ( 1.2)	228 ( 1.0)
TOTAL	5,599(100.0)	7,266(100.0)	10,450(100.0)	23,315(100.0)
MEAN	4.353	4,287	4,648	4,464

TABLE 15 . NUMBER OF HOUSEHOLDS BY GENERATIONS IN HOUSEHOLD:  
1979

GENERATIONS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1 GENERATION	803 (14.4)	1,216 (16.8)	1,489 (14.2)	3,508 (15.0)
2 GENERATIONS	3,994 (71.3)	4,872 (67.1)	6,377 (60.9)	15,243 (65.9)
3 GENERATIONS	710 (12.7)	995 (13.7)	2,379 (22.8)	4,084 (17.5)
4 GENERATIONS	12 ( 0.2)	17 ( 0.2)	94 ( 0.9)	123 ( 0.5)
5 GENERATIONS	-	-	2 -	2 -
QUASI-HOUSEHOLD	75 ( 1.3)	155 ( 2.1)	102 ( 1.0)	332 ( 1.4)
NO-RESPONSE	5 ( 0.1)	1 -	17 ( 0.2)	23 ( 0.1)
TOTAL	5,599(100.0)	7,266(100.0)	10,450(100.0)	23,315(100.0)

TABLE 16 . NUMBER OF HOUSEHOLDS BY TYPE OF FAMILY : 1979

TYPE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NUCLEAR FAMILY	3,996 (71.4)	5,089 (70.0)	7,086 (67.8)	16,171 (69.4)
STEM FAMILY	778 (13.9)	1,051 (14.5)	2,553 (24.4)	4,382 (18.8)
JOINT FAMILY	403 ( 7.2)	364 ( 5.0)	365 ( 3.5)	1,132 ( 4.9)
OTHER TYPE	343 ( 6.1)	594 ( 8.2)	335 ( 3.2)	1,272 ( 5.5)
QUASI-HOUSEHOLD	75 ( 1.3)	157 ( 2.2)	106 ( 1.0)	338 ( 1.4)
NO-RESPONSE	4 ( 0.1)	11 ( 0.2)	5 -	20 ( 0.1)
TOTAL	5,599 (100.0)	7,266 (100.0)	10,450 (100.0)	23,315 (100.0)

TABLE 17 . NUMBER OF EVER-MARRIED WOME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1979

AGE	NON- FORMAL, S.	PRIMARY S.	MIDDLE S.	HIGH S.	COLLEGE OR MORE	N . R	TOTAL
15 ~ 19	4 ( 4.2)	55 ( 57.2)	30 ( 31.3)	6 ( 6.3)	-	1 ( 1.0)	96 (100.0)
20 ~ 24	26 ( 1.3)	737 ( 37.2)	734 ( 37.1)	415 ( 21.0)	55 ( 2.8)	12 ( 0.6)	1,979 (100.0)
25 ~ 29	61 ( 1.8)	1,155 ( 34.5)	1,121 ( 33.5)	786 ( 23.5)	207 ( 6.2)	17 ( 0.5)	3,347 (100.0)
30 ~ 34	150 ( 4.3)	1,530 ( 44.0)	940 ( 27.0)	632 ( 18.2)	207 ( 6.0)	19 ( 0.5)	3,478 (100.0)
35 ~ 39	352 ( 10.7)	1,734 ( 52.5)	648 ( 19.7)	390 ( 11.8)	148 ( 4.5)	25 ( 0.8)	3,297 (100.0)
40 ~ 44	567 ( 19.1)	1,629 ( 54.8)	455 ( 15.3)	245 ( 8.3)	50 ( 1.7)	23 ( 0.8)	2,969 (100.0)
45 ~ 49	834 ( 31.2)	1,335 ( 50.1)	252 ( 9.4)	190 ( 7.1)	38 ( 1.4)	21 ( 0.8)	2,670 (100.0)
50 ~ 54	958 ( 48.0)	798 ( 40.0)	112 ( 5.6)	92 ( 4.6)	15 ( 0.8)	20 ( 1.0)	1,995 (100.0)
55 ~ 59	1,062 ( 64.3)	480 ( 29.1)	57 ( 3.5)	27 ( 1.6)	7 ( 0.4)	18 ( 1.1)	1,651 (100.0)
60 +	3,298 ( 85.1)	445 ( 11.5)	33 ( 0.9)	29 ( 0.7)	11 ( 0.3)	58 ( 1.5)	3,874 (100.0)
TOTAL	7,312 ( 28.8)	9,898 ( 39.1)	4,382 ( 17.3)	2,812 ( 11.1)	738 ( 2.9)	214 ( 0.8)	25,356 (100.0)

TABLE 18 . NUMBER OF HOUSEHOLDS BY NUMBER OF EVER-MARRIED  
WOMEN : 1979

NUMBER OF WOMEN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955 (17.1)	1,616 (22.2)	2,412 (23.1)	4,983 (21.4)
1	4,534 (81.0)	5,549 (76.4)	7,797 (74.6)	17,880 (76.7)
2	104 ( 1.9)	99 ( 1.4)	236 ( 2.3)	439 ( 1.9)
3	6 ( 0.1)	1 -	5 -	12 ( 0.1)
4	-	1 -	- -	1 -
TOTAL	5,599(100.0)	7,266(100.0)	10,450(100.0)	23,315(100.0)

TABLE 19 .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  
1978

NUMBER OF CHILDREN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215 ( 5.4)	219 ( 4.3)	204 ( 2.6)	638 ( 3.8)
1	663 (16.8)	775 (15.1)	771 ( 9.8)	2,209 (13.0)
2	1,038 (26.3)	1,171 (22.8)	1,083 (13.8)	3,292 (19.4)
3	907 (23.0)	1,147 (22.3)	1,327 (16.9)	3,381 (19.9)
4	585 (14.8)	783 (15.2)	1,241 (15.8)	2,609 (15.4)
5	287 ( 7.3)	563 (10.9)	1,240 (15.8)	2,090 (12.3)
6	161 ( 4.1)	268 ( 5.2)	985 (12.5)	1,414 ( 8.3)
7	61 ( 1.5)	128 ( 2.5)	557 ( 7.1)	746 ( 4.4)
8	21 ( 0.5)	53 ( 1.0)	291 ( 3.7)	365 ( 2.2)
9	8 ( 0.2)	24 ( 0.5)	115 ( 1.5)	147 ( 0.9)
10 +	2 ( 0.0)	11 ( 0.2)	59 ( 0.7)	72 ( 0.4)
TOTAL	3,948(100.0)	5,142(100.0)	7,873(100.0)	16,963(100.0)

TABLE 20 .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DEAD CHILDREN : 1978

NUMBER OF DEAD CHILDREN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3,419 (86.7)	4,334 (84.3)	5,980 (76.0)	13,733 (80.9)
1	407 (10.3)	611 (11.9)	1,298 (16.5)	2,316 (13.7)
2	93 ( 2.3)	141 ( 2.7)	420 ( 5.3)	653 ( 3.8)
3	25 ( 0.6)	41 ( 0.8)	130 ( 1.7)	196 ( 1.2)
4	5 ( 0.1)	11 ( 0.2)	35 ( 0.4)	51 ( 0.3)
5 +	0 ( 0.0)	3 ( 0.1)	10 ( 0.1)	13 ( 0.1)
TOTAL	3,948(100.0)	5,141(100.0)	7,873(100.0)	16,962(100.0)

TABLE 21 .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INDUCED ABORTIONS :  
1978

NUMBER OF INDUCED ABORTIONS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2,130 (54.0)	3,054 (59.4)	5,615 (71.3)	10,799 (63.7)
1	734 (18.6)	843 (16.4)	1,175 (14.9)	2,752 (16.2)
2	436 (11.0)	574 (11.2)	561 ( 7.1)	1,571 ( 9.3)
3	293 ( 7.4)	301 ( 5.9)	270 ( 3.4)	864 ( 5.1)
4	147 ( 3.7)	143 ( 2.8)	100 ( 1.3)	390 ( 2.3)
5 +	208 ( 5.3)	227 ( 4.4)	152 ( 1.9)	587 ( 3.5)
TOTAL	3,948(100.0)	5,142(100.0)	7,873(100.0)	16,963(100.0)

TABLE 22.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SPONTANEOUS ABORTIONS:  
1978

NUMBER OF SPONTANEOUS ABORTIONS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3,483 (88.2)	4,630 (90.0)	7,269 (92.4)	15,382 (90.7)
1	365 ( 9.2)	371 ( 7.2)	457 ( 5.8)	1,193 ( 7.0)
2	64 ( 1.6)	85 ( 1.7)	102 ( 1.3)	251 ( 1.5)
3	21 ( 0.5)	36 ( 0.7)	35 ( 0.4)	92 ( 0.5)
4	9 ( 0.2)	10 ( 0.2)	4 ( 0.1)	23 ( 0.1)
5 +	6 ( 0.2)	10 ( 0.2)	4 ( 0.1)	20 ( 0.1)
TOTAL	3,948(100.0)	5,142(100.0)	7,871(100.0)	16,961(100.0)

TABLE 23.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STILL BIRTHS : 1978

NUMBER OF STILL BIRTHS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3,884 (98.4)	5,025 (97.7)	7,729 (98.2)	16,638 (98.1)
1	54 ( 1.4)	91 ( 1.8)	125 ( 1.6)	270 ( 1.6)
2	8 ( 0.2)	20 ( 0.4)	10 ( 0.1)	38 ( 0.2)
3	1 ( 0.0)	4 ( 0.1)	2 ( 0.0)	7 ( 0.0)
4	1 ( 0.0)	1 ( 0.0)	4 ( 0.1)	6 ( 0.0)
5 +	0 ( 0.0)	1 ( 0.0)	1 ( 0.0)	2 ( 0.0)
TOTAL	3,948(100.0)	5,142(100.0)	7,871(100.0)	16,961(100.0)

TABLE 24.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DEAD CHILDREN AND NUMBER OF PREGNANCIES :  
1978

NUMBER OF PREGNANCIES	NUMBER OF DEAD CHILDREN						TOTAL
	0	1	2	3	4	5+	
	638(100.0)						638(100.0)
1	2,155 (97.6)	53 ( 2.4)					2,209(100.0)
2	3,123 (94.9)	156 ( 4.7)	13 ( 0.4)				3,292(100.0)
3	3,064 (90.6)	299 ( 8.8)	17 ( 0.5)	1 ( 0.1)			3,381(100.0)
4	2,092 (80.2)	456 (17.5)	56 ( 2.1)	5 ( 0.2)			2,609(100.0)
5	1,435 (68.7)	523 (25.0)	114 ( 5.5)	14 ( 0.7)	3 ( 0.1)	1 ( 0.0)	2,090(100.0)
6	783 (55.4)	444 (31.4)	144 (10.2)	34 ( 2.4)	7 ((0.5)	2 ( 0.1)	1,414 (100.0)
7	300 (40.2)	233 (31.2)	161 (21.6)	43 ( 5.8)	7 ( 0.9)	2 ( 0.3)	746(100.0)
8	100 (27.4)	116 (31.8)	89 (24.4)	44 (12.1)	15 ( 4.1)	1 ( 0.3)	365(100.0)
9	37 (25.2)	29 (19.7)	43 (29.2)	31 (21.1)	5 ( 3.4)	2 ( 1.4)	147(100.0)
10 +	6 ( 8.3)	8 (11.1)	16 (22.3)	23 (32.0)	14 (19.4)	5 ( 6.9)	72(100.0)
TOTAL	13,733 (81.0)	2,317 (13.7)	653 ( 3.8)	195 ( 1.1)	51 ( 0.3)	13 ( 0.1)	16,962(100.0)

TABLE 25.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INDUCED ABORTIONS AND NUMBER OF PREGNANCIES : 1978

NUMBER OF PREGNANCIES	NUMBER OF INDUCED ABORTIONS					TOTAL	
	0	1	2	3	4		5 +
0	68 (100.0)					68 (100.0)	
1	1,798 (97.5)	46 ( 2.5)				1,838 (100.0)	
2	2,173 (90.8)	214 ( 8.9)	8 ( 0.3)			2,395 (100.0)	
3	1,908 (75.7)	555 (22.0)	57 ( 2.3)	1 ( 0.0)		2,521 (100.0)	
4	1,549 (61.4)	659 (26.1)	294 (11.6)	23 ( 0.9)	1 ( 0.0)	2,526 (100.0)	
5	1,290 (56.5)	492 (21.6)	361 (15.8)	124 ( 5.6)	11 ( 0.5)	1 ( 0.0)	2,283 (100.0)
6	961 (49.2)	350 (18.0)	353 (18.1)	216 (11.1)	62 ( 3.2)	7 ( 0.4)	1,949 (100.0)
7	555 (41.8)	216 (16.3)	234 (17.6)	149 (14.2)	101 ( 7.6)	33 ( 2.5)	1,328 (100.0)
8	297 (34.0)	108 (12.3)	146 (16.7)	141 (16.1)	94 (10.7)	89 (10.2)	875 (100.0)
9	123 (22.9)	63 (11.7)	70 (13.0)	105 (19.5)	66 (12.3)	111 (20.6)	538 (100.0)
10 +	82 (12.8)	48 ( 7.5)	48 ( 7.5)	61 ( 9.5)	55 ( 8.6)	345 (54.1)	639 (100.0)
TOTAL	10,799 (63.6)	2,751 (16.2)	1,571 ( 9.3)	464 ( 5.1)	390 ( 2.3)	586 ( 3.5)	16,961 (100.0)

TABLE 26.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SPONTANEOUS ABORTIONS AND NUMBER OF PREGNANCIES : 1978

NUMBER OF PREGNANCIES	NUMBER OF SPONTANEOUS ABORTIONS						TOTAL
	0	1	2	3	4	5 +	
0	68 (100.0)						68 (100.0)
1	1,804 ( 98.2)	34 ( 1.8)					1,838 (100.0)
2	2,277 ( 95.0)	108 ( 4.5)	11 ( 0.5)				2,396 (100.0)
3	2,336 ( 92.7)	157 ( 6.2)	22 ( 0.9)	6 ( 0.2)			2,521 (100.0)
4	2,278 ( 90.2)	195 ( 7.7)	42 ( 1.7)	11 ( 0.4)			2,526 (100.0)
5	2,039 ( 89.3)	178 ( 7.8)	41 ( 1.8)	22 ( 1.0)	3 ( 0.1)		2,283 (100.0)
6	1,756 ( 90.1)	142 ( 7.3)	34 ( 1.7)	12 ( 0.6)	3 ( 0.2)	2 ( 0.1)	1,949 (100.0)
7	1,171 ( 88.1)	119 ( 9.0)	26 ( 2.0)	9 ( 0.7)	1 ( 0.1)	2 ( 0.1)	1,328 (100.0)
8	736 ( 84.2)	96 (11.0)	25 ( 2.9)	11 ( 1.3)	3 ( 0.3)	3 ( 0.3)	874 (100.0)
9	444 ( 82.7)	64 (11.9)	14 ( 2.6)	5 ( 0.9)	7 ( 1.3)	3 ( 0.6)	537 (100.0)
10	471 ( 73.7)	100 (15.7)	36 ( 5.6)	16 ( 2.5)	6 ( 0.9)	10 ( 1.6)	639 (100.0)
TOTAL	15,380 ( 90.8)	1,193 ( 7.0)	251 ( 1.5)	92 ( 0.5)	28 ( 0.1)	20 ( 0.1)	16,959 (100.0)

missing case : 4

TABLE 27. NUMBER OF WOMEN BY NUMBER OF STILL BIRTHS AND NUMBER OF PREGNANCIES :  
1978

NUMBER OF PREGNANCIES	NUMBER OF STILL BIRTHS						TOTAL
	0	1	2	3	4	5 +	
0	68 (100.0)						68 (100.0)
1	1,832 (99.7)	6 (0.3)					1,838 (100.0)
2	2,373 (99.0)	23 (1.0)					2,396 (100.0)
3	2,432 (98.5)	35 (1.4)	4 (0.1)				2,521 (100.0)
4	2,468 (97.7)	45 (1.8)	12 (0.5)	1 (0.0)			2,526 (100.0)
5	2,237 (98.0)	37 (1.6)	7 (0.3)	2 (0.1)			2,283 (100.0)
6	1,916 (98.4)	29 (1.5)	1 (0.1)	2 (0.1)	1 (0.1)		1,949 (100.0)
7	1,298 (97.6)	26 (2.0)	2 (0.2)	1 (0.1)	1 (0.1)		1,328 (100.0)
8	842 (96.3)	24 (2.8)	5 (0.6)	1 (0.1)	2 (0.2)		874 (100.0)
9	519 (96.6)	14 (2.6)	2 (0.4)	0	2 (0.4)		537 (100.1)
10 +	601 (94.0)	31 (4.9)	5 (0.8)	0	0	2 (0.3)	639 (100.0)
TOTAL	16,636 (98.2)	270 (1.6)	38 (0.2)	7 (0.0)	6 (0.0)	2 (0.0)	16,959 (100.0)

missing case 4

TABLE 28 . NUMBER OF HOUSEHOLDS BY NUMBER OF BIRTHS OCCURRED DURING 1977. 1. 1 ~ 1978. 9

NUMBER OF BIRTHS	HOUSEHOLD	PERCENT
1	3,381	99.0
2	36	1.0
TOTAL	3,417	100.0

TABLE 29 . NUMBER OF HOUSEHOLDS BY NUMBER OF BIRTHS OCCURRED DURING 1978. 1. 1 ~ 1979. 9

NUMBER OF BIRTHS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1	884 (98.0)	1,083 (97.3)	1,451 (97.7)	3,418 (97.7)
2	18 ( 2.0)	30 ( 2.7)	34 ( 2.3)	82 ( 2.3)
TOTAL	902(100.0)	1,113(100.0)	1,485(100.0)	3,500(100.0)

TABLE 30 . NUMBER OF BIRTHS OCCURRED DURING 1977. 1. 1 ~ 1978. 9. BY SEX

SEX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MALE	374 (47.7)	559 (51.5)	835 (52.8)	1,768 (51.2)
FEMALE	410 (52.3)	527 (48.5)	746 (47.2)	1,683 (48.8)
TOTAL	784(100.0)	1,086(100.0)	1,581(100.0)	3,451(100.0)

\* missing cases = 2

TABLE 31 . NUMBER OF BIRTHS BY SEX : 1978 . 1 . 1 ~ 1979 . 9 .

SEX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MALE	491 ( 53.4)	591 ( 51.7)	786 ( 51.7)	1,868 ( 52.2)
FEMALE	429 ( 46.6)	552 ( 48.3)	733 ( 48.3)	1,714 ( 47.8)
TOTAL	920 (100.0)	1,143 (100.0)	1,519 (100.0)	3,582 (100.0)

TABLE 32 . NUMBER OF BIRTHS OCCURRED DURING 1977 . 1 . 1 ~ 1978 . 9 .

YEAR OF BIRTH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1977 . 1 . 1 ~ 12.31 .	471 ( 60.0)	631 ( 58.0)	900 ( 56.9)	2,002 ( 58.0)
1978 . 1 . 1 ~ 9 .	313 ( 39.9)	456 ( 42.0)	681 ( 43.1)	1,450 ( 42.0)
NO-RESPONSE	1 ( 0.1)	-	-	1 ( 0.0)
TOTAL	785 (100.0)	1,087 (100.0)	1,581 (100.0)	3,453 (100.0)

TABLE 33 . NUMBER OF BIRTHS OCCURRED DURING 1978. 1. 1 ~  
1979. 9.

YEAR OF BIRTH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1978. 1. 1~12.31.	503 ( 54.7)	604 ( 52.8)	828 ( 54.5)	1,935 ( 54.0)
1979. 1. 1~9.	417 ( 45.3)	539 ( 47.2)	691 ( 45.5)	1,647 ( 46.0)
TOTAL	920 (100.0)	1,143 (100.0)	1,519 (100.0)	3,582 (100.0)

TABLE 34 . NUMBER OF DEATHS OCCURRED DURING 1977. 1. 1 ~  
1978. 9.

YEAR OF DEATH	SEOUL	GITIES	RURAL AREAS	TOTAL
1977. 1. 1~12.31.	67 ( 51.9)	96 ( 45.5)	262 ( 49.5)	425 ( 48.9)
1978. 1. 1~9.	62 ( 48.1)	115 ( 54.5)	266 ( 50.3)	443 ( 51.0)
N . R	-	-	1 ( 0.2)	1 ( 0.1)
TOTAL	129 (100.0)	211 (100.0)	529 (100.0)	869 (100.0)

TABLE 35 . NUMBER OF DEATHS OCCURRED DURING 1978 1. 1 ~  
1979. 9.

YEAR OF DEATH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1978. 1. 1~12.31.	71 (51.1)	114 (52.8)	304 (55.7)	489
1979. 1. 1~9	68 (48.9)	101 (46.8)	242 (44.3)	411
N . R	-	1 ( 0.5)	-	1
TOTAL	139 (100.0)	216(100.1)	546(100.0)	901

TABLE 36 . NUMBER OF DEATHS BY SEX : 1977. 1. 1 ~ 1978. 9.

SEX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MALE	77 (59.7)	132 (62.6)	318 (60.1)	527 (60.6)
FEMALE	52 (40.3)	79 (37.4)	211 (39.9)	342 (39.4)
TOTAL	129(100.0)	211(100.0)	529(100.0)	869(100.0) *

TABLE 37 . NUMBER OF DEATHS BY SEX : 1978. 1. 1 ~ 1979. 9.

SEX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MALE	86 (61.9)	130 (60.2)	319 (58.4)	535 (59.4)
FEMALE	53 (38.1)	86 (39.8)	227 (41.6)	366 (40.6)
TOTAL	139(100.0)	216(100.0)	546(100.0)	901(100.0)

TABLE 38 . NUMBER OF DEATHS BY AGE AT DEATH : 1977. 1. 1 ~  
1978. 9.

AGE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17(13.2)	19 ( 9.0)	36 ( 6.8)	72 ( 8.3)
1 ~ 4	4 ( 3.1)	7 ( 3.3)	21 ( 4.0)	32 ( 3.7)
5 ~ 59	51 (39.5)	90 (42.7)	200 (37.8)	341 (39.2)
60*	57 (44.2)	94 (44.6)	271 (51.2)	422 (48.6)
N . R .	-	1 ( 0.5)	1 ( 0.2)	2 ( 0.2)
TOTAL	129(100.0)	211(100.1)	529(100.1)	869(100.0)

TABLE 39 . NUMBER OF DEATHS BY AGE AT DEATH : 1978. 1. 1 ~  
1979. 9.

AGE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0	7 ( 5.0)	7 ( 3.2)	36 ( 6.6)	50 ( 5.5)
1 ~ 4	5 ( 3.6)	10 ( 4.6)	24 ( 4.4)	39 ( 4.3)
5 ~ 59	61 (43.9)	88 (40.7)	188 (34.4)	337 (37.4)
60*	66 (47.5)	108 (50.0)	298 (54.6)	472 (52.4)
N . R .	- -	3 ( 1.4)	- -	3 ( 0.3)
TOTAL	139(100.0)	216(100.0)	546(100.0)	901(100.0)

TABLE 40 . NUMBER OF DEATHS BY AGE AT DEATH : 1978. 1. 1 ~  
1979. 9

AGE	SEOUL	CITIES	RUNAL AREAS	TOTAL
0	7 ( 5.0)	7 ( 3.2)	36 ( 6.6)	50 ( 5.5)
1 ~ 4	5 ( 3.6)	10 ( 4.6)	24 ( 4.4)	39 ( 4.3)
5 ~ 9	4 ( 2.9)	4 ( 1.9)	6 ( 1.1)	14 ( 1.6)
10 ~ 14	4 ( 2.9)		6 ( 1.1)	11 ( 1.2)
15 ~ 19	1 ( 0.7)	4 ( 1.9)	8 ( 1.5)	13 ( 1.4)
20 ~ 24		4 ( 1.9)	13 ( 2.4)	17 ( 1.9)
25 ~ 29	4 ( 2.9)	6 ( 2.8)	6 ( 1.1)	16 ( 1.8)
30 ~ 34	5 ( 3.6)	5 ( 2.3)	7 ( 1.3)	17 ( 1.9)
35 ~ 39	4 ( 2.9)	9 ( 4.2)	11 ( 2.0)	24 ( 2.7)
40 ~ 44	6 ( 4.3)	16 ( 7.4)	29 ( 5.3)	51 ( 5.7)
45 ~ 49	10 ( 7.2)	15 ( 6.9)	23 ( 4.2)	48 ( 5.3)
50 ~ 54	13 ( 9.4)	12 ( 5.6)	35 ( 6.4)	60 ( 6.7)
55 ~ 59	10 ( 7.2)	13 ( 6.0)	44 ( 8.1)	67 ( 7.4)
60 ~ 64	15 (10.8)	19 ( 8.8)	52 ( 9.5)	86 ( 9.5)
65 ~ 69	15 (10.8)	23 (10.5)	59 (10.8)	97 (10.8)
70 ~ 74	15 (10.8)	19 ( 8.8)	62 (11.4)	96 (10.7)
75 ~ 79	6 ( 4.3)	22 (10.2)	41 ( 7.5)	69 ( 7.7)
80+	15 (10.8)	25 (11.6)	84 (15.4)	124 (13.8)
UN-KNOWN	-	3 ( 1.4)	-	3 ( 0.3)
TOTAL	139(100.1)	216(100.0)	546(100.0)	901(100.0)

TABLE 41 . NUMBER OF THE DEATHS BY EVER-MARRIED OR NOT AT DEATH : 1978

	NUMBER	PERCENT
EVER-MARRIED	679	78.1
SINGLE	190	21.9
TOTAL	869	100.0

TABLE 42 . NUMBER OF THE DEATHS BY MARITAL STATUS AT DEATH : 1979

STATUS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SINGLE	27 (19.4)	38 (17.6)	95 (17.4)	160 (17.7)
MARRIED	81 (58.3)	107 (49.6)	301 (55.1)	489 (54.3)
DIVORCED	-	2 ( 0.9)	-	2 ( 0.2)
WIDOWED	31 (22.3)	69 (31.9)	150 (27.5)	250 (27.7)
TOTAL	139(100.0)	216(100.0)	546 (100.0)	901(100.0)

TABLE 43. POPULATION IN MORBIDITY BY TREATMENT METHOD, AGE AND SEX : 1978 ( FOR A MONTH BEFORE THE TIME OF INTERVIEWING )

AGE	HOME				HERB.			DENTAL CLINIC	NO RESPONSE	TOTAL
	TREATMENT OR NON	DRUGSTORE	MEDICAL CLINIC	MEDICAL CLINIC	MEDICAL CLINIC	MEDICAL CLINIC	MEDICAL CLINIC			
<b>MALE</b>										
0 ~ 4	12 ( 3.8)	91 (28.5)	2 ( 0.6)	214 (67.1)	-	-	-	-	-	319 (100.0)
5 ~ 9	15 ( 6.8)	91 (41.2)	7 ( 3.2)	108 (48.7)	-	-	-	-	-	321 (100.0)
10 ~ 14	17 (13.7)	46 (37.1)	6 ( 4.8)	55 (44.4)	-	-	-	-	-	124 (100.0)
15 ~ 19	12 ( 8.6)	54 (38.8)	10 ( 7.2)	63 (45.4)	-	-	-	-	-	139 (100.0)
20 ~ 24	12 (10.2)	48 (40.7)	7 ( 5.9)	51 (43.2)	-	-	-	-	-	118 (100.0)
25 ~ 29	14 ( 8.9)	59 (37.6)	8 ( 5.9)	72 (45.9)	3 ( 1.9)	1 ( 0.6)	1 ( 0.6)	1 ( 0.6)	157 (100.0)	
30 ~ 34	10 ( 6.1)	85 (51.5)	5 ( 3.0)	64 (38.8)	-	-	-	1 ( 0.6)	165 (100.0)	
35 ~ 39	19 ( 9.0)	96 (45.5)	8 ( 3.8)	88 (41.7)	-	-	-	-	211 (100.0)	
40 ~ 44	29 (14.0)	99 (47.8)	16 ( 7.7)	61 (29.5)	1 ( 0.5)	1 ( 0.5)	1 ( 0.5)	1 ( 0.5)	207 (100.0)	
45 ~ 49	17 ( 9.7)	83 (47.1)	10 ( 5.7)	66 (37.5)	-	-	-	-	176 (100.0)	
50 ~ 54	18 (14.9)	54 (44.6)	11 ( 9.1)	38 (31.4)	-	-	-	-	121 (100.0)	
55 ~ 59	21 (13.7)	71 (46.4)	11 ( 7.2)	50 (32.7)	-	-	-	-	153 (100.0)	
60 +	57 (20.7)	124 (44.9)	23 ( 8.3)	71 (25.7)	-	1 ( 0.4)	1 ( 0.4)	1 ( 0.4)	276 (100.0)	
<b>TOTAL</b>	<b>253 (10.6)</b>	<b>1,001 (41.9)</b>	<b>124 ( 5.2)</b>	<b>1,001 (41.9)</b>	<b>4 ( 0.2)</b>	<b>4 ( 0.2)</b>	<b>4 ( 0.2)</b>	<b>4 ( 0.2)</b>	<b>2,387 (100.0)</b>	

AGE	HOME		HERB		MEDICAL CLINIC	DENTAL CLINIC	NO RESPONSE	TOTAL
	TREATMENT OR NON	DRUGSTORE	MEDICAL CLINIC	MEDICAL CLINIC				
FEMALE								
0 ~ 4	11 ( 5.0)	70 (31.4)	5 ( 2.3)	133 (60.0)	3 ( 1.4)	-	222 (100.0)	
5 ~ 9	20 (13.4)	66 (44.3)	3 ( 2.0)	59 (39.6)	1 ( 0.7)	-	149 (100.0)	
10 ~ 14	16 (14.3)	51 (45.5)	5 ( 4.5)	40 (35.7)	-	-	112 (100.0)	
15 ~ 19	14 (11.3)	54 (43.4)	6 ( 4.8)	48 (38.7)	1 ( 0.8)	1 ( 0.8)	124 (100.0)	
20 ~ 24	19 (10.1)	70 (37.2)	8 ( 4.3)	88 (46.8)	3 ( 1.6)	-	188 (100.0)	
25 ~ 29	19 (10.3)	72 (39.1)	9 ( 4.9)	82 (44.6)	2 ( 1.1)	-	184 (100.0)	
30 ~ 34	18 ( 7.7)	100 (42.7)	21 ( 9.0)	95 (40.6)	-	-	234 (100.0)	
35 ~ 39	27 (10.4)	100 (38.6)	20 ( 7.7)	112 (43.3)	-	-	259 (100.0)	
40 ~ 44	25 (11.1)	103 (45.8)	10 ( 4.4)	85 (37.8)	2 ( 0.9)	-	225 (100.0)	
45 ~ 49	19 ( 9.0)	109 (51.4)	13 ( 6.1)	70 (33.0)	1 ( 0.5)	-	212 (100.0)	
50 ~ 54	17 (11.1)	65 (42.5)	18 (11.8)	53 (34.6)	-	-	153 (100.0)	
55 ~ 59	20 (14.7)	56 (41.2)	8 ( 5.9)	52 (38.2)	-	-	136 (100.0)	
60 +	65 (19.0)	150 (43.7)	31 ( 9.0)	96 (28.0)	1 ( 0.3)	-	343 (100.0)	
TOTAL	290 (11.4)	1,066 (41.9)	157 ( 6.2)	1,013 (39.9)	14 ( 0.6)	1 ( 0.0)	2,541 (100.0)	

TABLE 44 . POPULATION IN MORBIDITY BY TREATMENT METHOD AND EDUCATIONAL ATTAINMENT  
:1978 (FOR A MONTH BEFORE THE TIME OF INTERVIEWING)

CLINICS	NON	PRIMARY S. MIDDLE S. HIGH S.	COLLEGE OR MORE	TOTAL		
HOME-TREATMENT OR NON	208 (12.2)	185 (10.6)	64 ( 8.7)	73 (12.6)	23 (13.0)	553 (11.2)
DRUGSTORE	675 (39.5)	812 (46.3)	324 (43.9)	210 (36.3)	53 (29.9)	2,074 (41.8)
HERB MEDICAL CLINIC	100 ( 5.9)	96 ( 5.5)	43 ( 5.8)	33 ( 5.7)	10 ( 5.6)	282 ( 5.7)
MEDICAL CLINIC	717 (42.0)	654 (37.3)	304 (41.1)	255 (41.1)	91 (51.5)	2,021 (40.8)
DENTAL CLINIC	5 ( 0.3)	4 ( 0.2)	3 ( 0.4)	6 ( 1.0)	-	18 ( 0.4)
NO RESPONSE	2 ( 0.1)	1 ( 0.1)	1 ( 0.1)	2 ( 0.3)	-	6 ( 0.1)
TOTAL	1,707(100.0)	1,752(100.0)	739 (100.0)	739(100.0)	177(100.0)	4,954(100.0)

TABLE 45 . INJURED POPULATION BY INJURED PART AND SEX:1978  
(FOR A YEAR BEFORE THE TIME OF INTERVIEWING)

	TOTAL	MALE	FEMALE
	N %	N %	N %
SKULL	154 ( 8.4)	96 ( 7.5)	58 (10.4)
SCALP	45 ( 2.5)	30 ( 2.4)	15 ( 2.7)
FACE	184 (10.1)	138 (10.8)	46 ( 8.3)
BACK	44 ( 2.4)	32 ( 2.5)	12 ( 2.2)
THORACIC VERTEBRA	57 ( 3.1)	38 ( 3.0)	19 ( 3.4)
SACRUM	13 ( 0.7)	7 ( 0.6)	6 ( 1.1)
ABDOMEN	39 ( 2.1)	23 ( 1.8)	16 ( 2.9)
CHEST	74 ( 4.0)	48 ( 3.8)	26 ( 4.7)
EAR	11 ( 0.6)	8 ( 0.6)	3 ( 0.5)
EYE	33 ( 1.8)	28 ( 2.2)	5 ( 0.9)
SHOULDER	37 ( 2.0)	26 ( 2.0)	11 ( 2.0)
ARM	45 ( 2.5)	31 ( 2.4)	14 ( 2.5)
ELBOW	45 ( 2.5)	33 ( 2.6)	12 ( 2.2)
FOREARM	175 ( 9.6)	117 ( 9.2)	58 (10.4)
WRIST	40 ( 2.2)	25 ( 2.0)	15 ( 2.7)
HAND	223 (12.2)	176 (13.8)	47 ( 8.5)
BUTTOCK	21 ( 1.1)	15 ( 1.2)	6 ( 1.1)
THIGH	33 ( 1.8)	22 ( 1.7)	11 ( 2.0)
KNEE	63 ( 3.4)	44 ( 3.5)	19 ( 3.4)
LOW LEG	242 (13.2)	164 (12.9)	78 (14.0)
ANKLE	53 ( 2.9)	34 ( 2.7)	19 ( 3.4)
FOOT	175 ( 9.6)	125 ( 9.8)	50 ( 9.0)
NO RESPONSE	22 ( 1.2)	12 ( 0.9)	10 ( 1.8)
TOTAL	1,828(100.0)	1,272(100.0)	556(100.0)

TABLE 46 .EXTERNAL CAUSE OF INJURY BY AGE AND SEX:1978

EXTERNAL CAUSE OF INJURY					
AGE	Total	motor vehicle accidents	other transport accidents	medicine poisoning	gas poisoning
<b>M A L E</b>					
0 ~ 4	98 ( 99.9)	4 ( 4.1)	14 ( 14.3)	-	2 ( 2.0)
5 ~ 9	133 (100.0)	8 ( 6.0)	20 ( 15.0)	-	-
10 ~ 14	126 ( 99.9)	9 ( 7.1)	10 ( 7.9)	-	-
15 ~ 19	144 (100.2)	18 ( 12.5)	18 ( 12.5)	-	1 ( 0.7)
20 ~ 24	105 (100.2)	6 ( 5.7)	18 ( 17.1)	1 ( 1.0)	1 ( 1.0)
25 ~ 29	120 ( 99.9)	21 ( 17.5)	13 ( 10.8)	-	1 ( 0.8)
30 ~ 34	108 (100.2)	10 ( 9.3)	18 ( 16.7)	1 ( 0.9)	1 ( 0.9)
35 ~ 39	108 (100.1)	11 ( 10.2)	9 ( 8.3)	2 ( 1.9)	-
40 ~ 44	107 (100.1)	17 ( 15.9)	8 ( 7.5)	-	1 ( 0.9)
45 ~ 49	68 (100.0)	12 ( 17.6)	8 ( 11.8)	-	-
50 +	135 (100.0)	17 ( 12.6)	16 ( 11.9)	2 ( 1.5)	1 ( 0.7)
Total	1,252 (100.1)	133 ( 10.6)	152 ( 12.1)	6 ( 0.5)	8 ( 0.6)
<b>FEMALE</b>					
0 ~ 4	54 (100.3)	3 ( 5.6)	7 ( 13.0)	-	1 ( 1.9)
5 ~ 9	60 (100.1)	3 ( 5.0)	10 ( 16.7)	-	2 ( 3.3)
10 ~ 14	44 (100.1)	6 ( 13.6)	5 ( 11.4)	-	-
15 ~ 19	40 (100.0)	6 ( 15.0)	11 ( 27.5)	-	1 ( 2.5)
20 ~ 24	42 (100.0)	9 ( 21.4)	5 ( 11.9)	1 ( 2.4)	1 ( 2.4)
25 ~ 29	23 ( 99.9)	4 ( 17.4)	2 ( 8.7)	-	2 ( 8.7)
30 ~ 34	30 ( 99.9)	3 ( 10.0)	2 ( 6.7)	1 ( 3.3)	1 ( 3.3)
35 ~ 39	28 (100.1)	2 ( 7.1)	4 ( 14.3)	-	-
40 ~ 44	39 (100.0)	5 ( 12.8)	4 ( 10.3)	2 ( 5.1)	-
45 ~ 49	23 (100.2)	2 ( 8.7)	1 ( 4.3)	-	-
50 +	123 ( 99.9)	16 ( 13.0)	15 ( 12.2)	-	3 ( 2.4)
Total	506 (100.1)	59 ( 11.7)	66 ( 13.0)	4 ( 0.8)	11 ( 2.1)

AGE	EXTERNAL CAUSE OF INJURY			
	accidental falls			accidents caused by fires
	falls	collapse	bump & hits	
<b>M A L E</b>				
0 ~ 4	6 ( 16.3)	26 ( 26.5)	4 ( 4.1)	9 ( 9.2)
5 ~ 9	23 ( 17.3)	37 ( 27.8)	20 ( 15.0)	1 ( 0.8)
10 ~ 14	12 ( 9.5)	27 ( 21.4)	27 ( 21.4)	1 ( 0.8)
15 ~ 19	9 ( 6.3)	15 ( 10.4)	27 ( 18.8)	3 ( 2.1)
20 ~ 24	7 ( 6.7)	11 ( 10.5)	12 ( 11.4)	1 ( 1.0)
25 ~ 29	4 ( 3.3)	9 ( 7.5)	10 ( 8.3)	2 ( 1.7)
30 ~ 34	11 ( 10.2)	7 ( 6.5)	18 ( 16.7)	2 ( 1.9)
35 ~ 39	11 ( 10.2)	11 ( 10.2)	13 ( 12.0)	3 ( 2.8)
40 ~ 44	16 ( 15.0)	13 ( 12.1)	12 ( 11.2)	1 ( 0.9)
45 ~ 49	5 ( 7.4)	7 ( 10.3)	6 ( 8.8)	-
50 +	17 ( 12.6)	28 ( 20.7)	16 ( 11.9)	1 ( 0.7)
Total	131 ( 10.5)	191 ( 15.3)	165 ( 13.2)	24 ( 1.9)
<b>FEMALE</b>				
0 ~ 4	9 ( 16.7)	12 ( 22.2)	5 ( 9.3)	2 ( 3.7)
5 ~ 9	4 ( 6.7)	20 ( 33.3)	9 ( 15.0)	1 ( 1.7)
10 ~ 14	5 ( 11.4)	11 ( 25.0)	4 ( 9.1)	1 ( 2.3)
15 ~ 19	1 ( 2.5)	4 ( 10.0)	3 ( 7.5)	1 ( 2.5)
20 ~ 24	3 ( 7.1)	4 ( 9.5)	2 ( 4.8)	-
25 ~ 29	2 ( 8.7)	2 ( 8.7)	4 ( 17.4)	1 ( 4.3)
30 ~ 34	2 ( 6.7)	4 ( 13.3)	7 ( 21.3)	-
35 ~ 39	1 ( 3.6)	7 ( 25.0)	2 ( 7.1)	-
40 ~ 44	3 ( 7.7)	7 ( 17.9)	3 ( 7.7)	2 ( 5.1)
45 ~ 49	4 ( 17.4)	5 ( 21.7)	3 ( 13.0)	-
50 +	21 ( 17.1)	38 ( 30.9)	5 ( 4.1)	-
Total	55 ( 10.9)	114 ( 22.5)	49 ( 9.7)	8 ( 1.6)

EXTERNAL CAUSE OF INJURY				
AGE	accidental drowning and submersion	accidents mainly of industrial type	suicide and inflicted injury	injury purposely inflicted by other persons
<b>M A L E</b>				
0 ~ 4	-	2 ( 2.0)	4 ( 4.1)	-
5 ~ 9	1 ( 0.8)	-	-	2 ( 1.5)
10 ~ 14	-	6 ( 4.8)	4 ( 3.2)	3 ( 2.4)
15 ~ 19	-	24 ( 16.7)	2 ( 1.4)	6 ( 4.2)
20 ~ 24	1 ( 1.0)	23 ( 21.9)	5 ( 4.8)	10 ( 9.5)
25 ~ 29	-	26 ( 21.7)	-	11 ( 9.2)
30 ~ 34	-	16 ( 14.8)	2 ( 1.9)	7 ( 6.5)
35 ~ 39	-	21 ( 19.4)	2 ( 1.9)	2 ( 1.9)
40 ~ 44	2 ( 1.9)	14 ( 13.1)	2 ( 1.9)	2 ( 1.9)
45 ~ 49	1 ( 1.5)	15 ( 22.1)	-	2 ( 2.9)
50 +	5 ( 3.7)	10 ( 7.4)	-	2 ( 1.5)
Total	10 ( 0.8)	157 ( 12.5)	21 ( 1.7)	47 ( 3.8)
<b>FEMALE</b>				
0 ~ 4	-	-	1 ( 1.9)	-
5 ~ 9	-	1 ( 1.7)	2 ( 3.3)	1 ( 1.7)
10 ~ 14	1 ( 2.3)	( ( 2.3)	-	-
15 ~ 19	-	3 ( 7.5)	3 ( 7.5)	1 ( 2.5)
20 ~ 24	-	4 ( 9.5)	1 ( 2.4)	1 ( 2.4)
25 ~ 29	-	2 ( 8.7)	-	1 ( 4.3)
30 ~ 34	-	1 ( 3.3)	-	2 ( 6.7)
35 ~ 39	1 ( 3.6)	5 ( 17.9)	1 ( 3.6)	1 ( 3.6)
40 ~ 44	-	3 ( 7.7)	-	3 ( 7.7)
45 ~ 49	-	1 ( 4.3)	-	-
50 +	-	6 ( 4.9)	5 ( 4.1)	3 ( 2.4)
Total	2 ( 0.4)	27 ( 5.3)	13 ( 2.6)	13 ( 2.6)

EXTERNAL CAUSE OF INJURY		
AGE	electric shocks	all other accidents
<b>M A L E</b>		
0 ~ 4	-	17 ( 17.3)
5 ~ 9	-	21 ( 15.8)
10 ~ 14	-	27 ( 21.4)
15 ~ 19	-	21 ( 14.6)
20 ~ 24	-	9 ( 8.6)
25 ~ 29	1 ( 0.8)	22 ( 18.3)
30 ~ 34	-	15 ( 13.9)
35 ~ 39	-	23 ( 21.3)
40 ~ 44	-	19 ( 17.8)
45 ~ 49	-	12 ( 17.6)
50 +	-	20 ( 14.8)
<b>Total</b>	<b>1 ( 0.1)</b>	<b>206 ( 16.5)</b>
<b>FEMALE</b>		
0 ~ 4	1 ( 1.9)	13 ( 24.1)
5 ~ 9	-	7 ( 11.7)
10 ~ 14	-	10 ( 22.7)
15 ~ 19	-	6 ( 15.0)
20 ~ 24	-	11 ( 26.2)
25 ~ 29	-	3 ( 13.0)
30 ~ 34	-	7 ( 23.3)
35 ~ 39	-	4 ( 14.3)
40 ~ 44	1 ( 2.6)	6 ( 15.4)
45 ~ 49	-	8 ( 34.8)
50 +	-	17 ( 13.8)
<b>Total</b>	<b>2 ( 0.4)</b>	<b>106 ( 20.9)</b>

TABLE 47 . POPULATION IN HOSPITALIZATION BY IT'S CAUSE:1978  
 (FOR A YEAR BEFORE THE TIME OF INTERVIEWING)

CAUSES OF MORBIDITY	N	%
INFECTIVE AND PARASTIC DISEASES	105	4.1
Cholera	3	0.1
Typhoid fever	14	0.5
Paratyphoid fever and other salmonella infections	1	-
Bacillary dysentery and amoebiasis	5	0.2
Enteritis and other diarrhoeal diseases	14	0.5
Tuberculosis	17	0.7
Pleuritis	25	1.0
Leprosy	-	-
Diphtheria	2	0.1
Whooping cough	6	0.2
Streptococcal sore throat and scarlet fever	1	-
Tetanus	1	-
Smallpox	-	-
Measles	1	-
Viral encephalitis	7	0.3
Infectious hepatitis	4	0.2
Syphilis	-	-

CAUSES OF MORBIDITY	N	%
Gonococcal infections	-	-
Parasitic diseases	4	0.2
ENDOCRINE NUTRITION AND METABOLIC DISEASES	19	0.7
Goitre	13	0.5
Diabetes mellitus	6	0.2
Avitaminoses and other nutritional deficiency	-	-
DISEASES OF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11	0.4
Anaemias	7	0.3
Other diseases of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4	0.2
MENTAL DISORDERS	44	1.7
Psychoses	13	0.5
Neuroses, personality disorders and other non-psychotic mental disorders	27	1.1
Mental retardation	4	0.2
DISEASES OF NERVOUS SYSTEM AND SENSE ORGANS	67	2.6
Meningitis	13	0.5
Epilepsy	2	0.1
Inflammatory diseases of eye	2	0.1
Cataract	3	0.1
Glaucoma	-	-
Visual difficulty	13	0.5

CAUSES OF MORBIDITY	N	%
Otitis media	5	0.2
Hearing difficulty	4	0.2
Other deseases of nervous system and sense organs	25	1.0
<b>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b>	<b>99</b>	<b>3.9</b>
Rheumatic fever	3	0.1
Hypertensive disease	40	1.6
Heart disease	19	0.7
Paralysis	8	0.3
Cerebrovascular disease	5	0.2
Discases of arteries, arterioles and capillaries	1	-
Hemorrhoids or piles	11	0.4
Other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12	0.5
<b>DISEASES OF RESPIRATORY SYSTEM</b>	<b>110</b>	<b>4.3</b>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5	0.2
Influenza	9	0.4
Pneumonia	24	0.9
Bronchitis, emphysema and asthma	18	0.7
Hypertrophy of tonsils	15	0.6
Sinusitis	20	0.8
Empyema and abscess of lung	3	0.1

CAUSES OF MORBIDITY	N	%
Other diseases of respiratory system	16	0.6
<b>DISEASES OF DIGESTIVE SYSTEM</b>	<b>553</b>	<b>21.7</b>
Diseases of teeth and supporting structures	4	0.2
Peptic ulcer	81	3.2
Gastritis and duodenitis	40	1.6
Appendicitis	219	8.6
Proctitis	7	0.3
Cirrhosis of liver	39	1.5
Peritonitis	41	1.6
Pancreatitis	12	0.5
Intestinal obstruction	4	0.2
Cholelithiasis and cholecystitis	36	1.4
Other diseases of digestive system	70	2.7
<b>DISEASES OF GENITO-URINARY SYSTEM</b>	<b>110</b>	<b>4.3</b>
Nephritis	4	0.2
Infections of kidney	29	1.1
Calculus of urinary system	-	-
Hyperplasia of prostate	-	-
Diseases of breast	1	-
Diseases of uterus	40	1.6

CAUSES OF MORBIDITY	N	%
Oophoritis	6	0.2
Other diseases of genito-urinary system	30	1.2
COMPLICATIONS OF PREGNANCY, DELIVERY AND THE PUERPERIUM	537	21.1
Toxaemias of pregnancy and the puerperium, Haemorrhag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37	1.4
Abortion	31	1.2
Delivery	469	18.4
DISEASES O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10	0.4
Infections o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10	0.4
DISEASES OF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106	4.2
Arthritis	21	0.8
Osteomyelitis and periostitis	17	0.7
Ankylosis and acquired musculoskeletal deformities	2	0.1
Disease of spine	31	1.2
Other diseases of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35	1.4
CONGENITAL ANOMALIES	8	0.3
Congenital anomalies of heart and spine	1	-
Cleft palate and cleft lip	2	0.1
Other congenital anomalies	5	0.2
INJURY	450	17.6
Fracture, laceration, contusion, dislocation	195	7.6

CAUSES OF MORBIDITY	N	%
Internal injury of skull, chest, abdomen and pelvis	82	3.2
Burn	23	0.9
Other injury	150	5.9
<b>MALIGNANT NEOPLASM</b>	<b>49</b>	<b>1.9</b>
Malignant neoplasm of buccal cavity, pharynx and oesophagus	5	0.2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5	0.2
Malignant neoplasm of intestine	2	0.1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2	0.1
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bronchus and lung	1	-
Malignant neoplasm of bone	2	0.1
Malignant neoplasm of skin	7	0.3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2	0.1
Malignant neoplasm of uterus	12	0.5
Leukaemia	-	-
Benign neoplasms and neoplasms of unspecified nature	11	0.4
<b>SYMPTOMS AND OTHER ILL-DEFINED CONDITIONS</b>	<b>214</b>	<b>8.4</b>
N · R	55	2.2
<b>Total</b>	<b>2,550</b>	<b>100.0</b>

TABLE 48. POPULATION IN HOSPITALIZATION BY ITS CAUSE AND PERIOD:  
1978 (FOR A YEAR BEFORE THE TIME OF INTERVIEWING)

CAUSE	HOSPITALIZATION PERIOD(DAYS)								TOTAL
	1-5	6-10	11-15	16-20	21-25	26-30	30+	N.R	
Infective and parastic (N) diseases	26	27	14	8	3	13	13	1	105
(%)	3.0	3.7	4.5	6.3	4.9	7.3	5.4	1.8	4.1
Endocrine, nutrition and metabolic diseases	4	6	6	1	-	-	2	-	19
(%)	0.5	0.8	1.9	0.8			0.8		0.7
Diseases of 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5	4	2	-	-	-	-	-	11
(%)	0.6	0.6	0.6						0.4
Mental disorders	7	10	4	2	2	10	8	1	44
(%)	0.8	1.4	1.3	1.6	3.3	5.6	3.3	1.8	1.7
Diseases of nervous system and sense organs	15	20	12	3	3	7	7	-	67
(%)	1.8	2.8	3.9	2.3	4.9	4.0	2.9		2.6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24	35	13	7	5	7	7	1	99
(%)	2.8	4.8	4.2	5.5	8.2	4.0	2.9	1.8	3.9
Diseases of respiratory system	32	45	13	6	-	7	7	-	110
(%)	3.8	6.2	4.2	4.7		4.0	2.9		4.3
Diseases of digestive system	114	220	104	33	15	34	25	8	553
(%)	13.4	30.3	33.4	25.8	24.6	19.2	10.5	14.5	21.7
Diseases of genito-urin- ary system	24	47	19	7	2	6	5	-	110
(%)	2.8	6.5	6.1	5.5	3.3	3.4	2.1		4.3
Complications of pregnancy, delivery and the puerperium	409	94	18	3	1	2	5	5	537
(%)	47.9	12.9	5.8	2.3	1.6	1.1	2.1	9.1	21.1
Diseases of skin and sub- cutaneous tissue	2	3	1	-	-	1	3	-	10
(%)	0.2	0.4	0.3			0.6	1.3		0.4
Diseases of musculouskel- 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18	23	14	4	7	11	29	-	106
(%)	2.1	3.2	4.5	3.1	11.5	6.2	12.1		4.2
Congenital anomalies	1	3	1	-	-	-	1	2	8
(%)	0.1	0.4	0.3				0.4	3.6	0.3
Injury	89	90	55	35	17	61	95	8	450
(%)	10.4	12.4	17.7	27.3	27.9	34.5	39.7	14.5	17.6
Malignant neoplasm	8	16	12	2	1	3	6	1	49
(%)	0.9	2.2	3.9	1.6	1.6	1.7	2.5	1.8	1.9
Symptoms and other ill- defined conditions	50	68	20	11	4	10	24	27	214
(%)	5.9	9.4	6.4	8.6	6.6	5.6	10.0	49.1	8.4
No response	25	15	3	6	1	5	2	1	58
(%)	2.9	2.1	1.0	4.7	1.6	2.8	0.8	1.8	2.3
Total	853	726	311	128	61	177	239	55	2,5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49.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 BY AGE AND SEX:1978

AGE	TOTAL	THE BLIND	THE DEAF	THE MUTE	THE INCONVENIENT BODY & LIMB	THE BLIND & DEAF
남자 MALE						
0 ~ 4	10	-	-	-	7	-
5 ~ 9	18	1	-	6	10	-
10 ~ 14	42	-	1	5	35	-
15 ~ 19	44	-	2	3	38	-
20 ~ 24	32	1	-	2	25	1
25 ~ 29	31	1	-	3	27	-
30 ~ 34	39	6	1	2	28	-
35 ~ 39	31	4	-	3	22	1
40 ~ 44	34	-	3	1	30	-
45 ~ 49	59	4	2	3	49	-
50 ~ 54	38	3	-	1	34	-
55 ~ 59	38	1	-	1	36	-
60	87	7	5	2	72	-
TOTAL	503	28	14	32	413	2

AGE	THE DEAF MUTE	THE BLIND- THE INCONVENIENT BODY & LIMB	THE DEAF- THE INCONVENI- ENT BODY& LIMB	THE MUTE- THE INCONVENIENT BODY & LIMB
남자 MALE				
0~ 4	1	-	-	2
5~ 9	1	-	-	-
10~ 14	1	-	-	-
15~ 19	-	-	-	1
20~ 24	2	-	-	1
25~ 29	-	-	-	-
30~ 34	2	-	-	-
35~ 39	1	-	-	-
40~ 44	-	-	-	-
45~ 49	1	-	-	-
50~ 54	-	-	-	-
55~ 59	-	-	-	-
60	1	-	-	-
TOTAL	10	-	-	4

AGE	TOTAL	THE BLIND	THE DEAF	THE MUTE	THE INCONVENIENT BODY & LIMB	THE BLIND-DEAF
여자 FEMALE						
0 ~ 4	12	-	1	1	8	-
5 ~ 9	30	3	1	6	17	-
10 ~ 14	21	-	2	2	17	-
15 ~ 19	14	-	-	1	13	-
20 ~ 24	20	1	1	3	14	-
25 ~ 29	18	-	1	3	13	-
30 ~ 34	7	1	-	1	4	-
35 ~ 39	19	4	2	2	9	-
40 ~ 44	18	-	-	4	12	-
45 ~ 49	22	-	-	1	18	-
50 ~ 54	18	1	3	1	13	-
55 ~ 59	15	2	2	1	8	-
60	81	11	10	-	52	1
TOTAL	295	23	23	26	198	1

AGE	THE DEAF-MUTE	THE BLIND- THE INCONVENIENT BODY & LIMB	THE DEAF- THE INCONVENIENT BODY & LIMB	THE MUTE-THE IN- CONVENIENT BODY & LIMB
0 ~ 4	-	-	-	2
5 ~ 9	1	-	1	-
10 ~ 14	-	-	-	-
15 ~ 19	-	-	-	-
20 ~ 24	1	-	-	-
25 ~ 29	1	-	-	-
30 ~ 34	1	-	-	-
35 ~ 39	1	-	-	1
40 ~ 44	2	-	-	-
45 ~ 49	2	-	-	1
50 ~ 54	-	-	-	-
55 ~ 59	1	-	-	1
60	1	1	1	5
TOTAL	11	1	2	10

여자 FEMALE

TABLE 50. MENTALLY HANDICAPPED PERSON BY AGE AND SEX:1978

MALE	PSYCHOSIS	MENTAL WEAKNESS	EPILEPSY	PSYCHOSIS & PSYCHOSIS MENTAL WEAKNESS	PSYCHOSIS & PSYCHOSIS & EPILEPSY	TOTAL
0~4	1	0	0	0	0	1
5~9	6	1	2	0	0	9
10~14	16	0	1	0	0	17
15~19	14	4	4	0	0	22
20~24	5	5	1	0	0	11
25~29	2	5	0	0	0	7
30~34	3	8	1	0	0	12
35~39	2	2	2	0	0	6
40~44	0	8	0	1	0	9
45~49	1	7	0	0	0	8
50~54	1	2	0	0	0	3
55~59	2	0	0	0	0	2
60 +	1	2	0	0	0	3
TOTAL	54	45	11	1	0	111

	PSYCHOSIS	MENTAL WEAKNESS	EPILEPSY	PSYCHOSIS & PSYCHOSIS & MENTAL WEAKNESS	EPILEPSY	TOTAL
FEMALE						
0~4	2	2	1	0	0	5
5~9	10	0	0	0	0	10
10~14	2	0	0	0	1	3
15~19	8	3	1	0	0	12
20~24	6	3	0	1	1	11
25~29	4	5	1	0	0	10
30~34	2	2	0	0	0	4
35~39	10	6	2	0	0	18
40~44	3	1	0	0	0	4
45~49	1	4	0	0	0	5
50~54	1	2	0	0	0	3
55~59	3	1	0	0	0	4
60+	2	3	0	0	0	5
TOTAL	54	32	5	1	2	94

TABLE 51. MIGRATION POPULATION BY RESIDENCE PROVINCE IN-MIGRATION: 1979

	SEOUL N %	CITIES N %	RURAL AREAS N %	TOTAL N %
SEOUL	11,496(87.6)	468 (3.3)	804 (8.1)	12,768(34.5)
PUSAN	57 (0.4)	2,837(20.3)	247 (2.5)	3,141 (8.5)
GYEONGYI DO	656 (5.0)	2,123(15.2)	2,478(25.0)	5,257(14.2)
GANGWEON DO	104 (0.8)	595 (4.3)	602 (6.1)	1,301 (3.5)
CHUNGCHONGNAM DO	71 (0.5)	583 (4.2)	347 (3.5)	1,001 (2.7)
CHUNGCHONGNAM DO	170 (1.3)	503 (3.6)	1,299(13.1)	1,972 (5.3)
JEONLABUG DO	135 (1.0)	607 (4.3)	545 (5.5)	1,287 (3.5)
JEONLANAM DO	151 (1.2)	1,755(12.5)	802 (8.1)	2,708 (7.3)
GYEONGSANGBUG DO	162 (1.2)	2,765(19.8)	1,608(16.3)	4,535(12.3)
CYEONGSANGNAM DO	65 (0.5)	1,523(10.9)	998(10.1)	2,586 (7.0)
JEJU DO	3 ( - )	186 (1.3)	90 (0.9)	297 (0.8)
FOREIGN COUNTRY	5 ( - )	- ( - )	6 (0.1)	11 (0.0)
ARMY	42 (0.3)	45 (0.3)	63 (0.6)	150 (0.4)
NO RESPONSE	2 ( - )	4 ( - )	4 ( - )	10 (0.0)
TOTAL	13,119(100.0)	13,994(100.0)	9,893(100.0)	37,006(100.0)

TABLE 52. MIGRATION POPULATION BY MIGRATION PATTERN:1979

MIGRATION PATTERN	N	%
<u>URBAN TO URBAN</u>		
BIG CITY → BIG CITY	18,949	51.4
within same Gu	14,398	39.1
between Gu&within same city	4,084	11.1
between big cities	467	1.3
SMALL&MEDIUM CITY → BIG CITY	640	1.7
intra province	46	0.1
inter province	594	1.6
BIG CITY → SMALL&MEDIUM CITY	390	1.1
intra province	76	0.2
inter province	314	0.9
SMALL & MEDIUM CITY → SMALL & MEDIUM CITY	4,311	11.7
within same city	4,106	11.2
intra province	94	0.3
inter province	111	0.3
<u>URBAN TO RURAL</u>		
BIG CITY → GUN	1,207	3.3
intra province	194	0.5
inter province	1,013	2.8
SMALL&MEDIUM CITY → GUN	594	1.6
intra province	338	0.9
inter province	256	0.7
<u>RURAL TO URBAN</u>		
GUN → BIG CITY	1,834	5.0
intra province	285	0.8
inter province	1,549	4.2
GUN → SMALL&MEDIUM CITY	1,049	2.9
intra province	733	2.0

MIGRATION PATTERN	N	%
inter province	316	0.9
RURAL TO RURAL		
INTER PROVINCE	7,377	20.0
within same Eup or Myon	5,990	16.3
from the other Eup or Myon in same Gun	748	2.0
from the other Gun	639	1.7
INTER PROVINCE	385	1.1
FROM FOREIGN COUNTRY	12	0.0
NO RESPONSE	87	0.2
TOTAL	36,835	100.0

TABLE 53 . MIGRATION POPULATION BY MIGRATION MOTIVE:1979

MOTIVE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M / T
TO SEEK A JOB	148 (1.1)	225 (1.6)	205 (2.1)	578 (1.6)	61.8
BECAUSE OF WORK PLACE	698 (5.3)	729 (5.2)	657 (6.6)	2,084 (5.6)	71.3
BECAUSE OF BUSINESS	231 (1.7)	374 (2.7)	289 (2.9)	894 (2.4)	82.3
EXPIRATION OF HOUSE LENDING CONTRACT	666 (5.1)	681 (4.9)	298 (3.0)	1,645 (4.4)	78.8
FOR LOWER RENT HOUSE	232 (1.8)	123 (0.9)	52 (0.5)	407 (1.1)	75.4
FOR A LARGER HOUSE OR ROOM	333 (2.5)	334 (2.4)	178 (1.8)	845 (2.3)	89.1
REMOVAL OF HOUSE	122 (0.9)	88 (0.6)	173 (1.7)	383 (1.0)	74.9
PREPARATION OF ONE'S OWN HOUSE	299 (2.3)	240 (1.7)	327 (3.3)	866 (2.3)	88.3
OTHER FINANCIAL MATTERS	64 (0.5)	59 (0.4)	40 (0.4)	163 (0.4)	77.3
FOR EDUCATION OF CHILD-REN	78 (0.6)	116 (0.8)	27 (0.3)	221 (0.6)	62.4
FOR EDUCATION OF ONESELF	109 (0.8)	301 (2.2)	126 (1.3)	536 (1.4)	70.1
FOR LIVING TOGETHER WITH ONE'S FAMILY	347 (2.6)	338 (2.4)	380 (3.8)	1,065 (2.9)	44.2
BECAUSE OF MARRIAGE OR INDEPENDENT LIFE	76 (0.6)	84 (0.6)	197 (2.0)	357 (1.0)	54.6
BECAUS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38 (0.3)	45 (0.3)	125 (1.3)	208 (0.6)	99.0
FOR BETTER TRANSPORTATION	276 (2.1)	357 (2.6)	230 (2.3)	863 (2.3)	76.6

MOTIVE	SEOUL	CITIES	RURAL AREAS	TOTAL	M / T
TO LIVE NEAR ONE'S RELATIVES OR FRIENDS	150 (1.1)	188 (1.3)	143 (1.4)	481 (1.3)	76.1
LONGING FOR BIG CITY	8 (0.1)	15 (0.1)	10 (0.1)	33 (0.1)	84.8
FOR BETTER ENVIRONMENT	229 (1.7)	233 (1.7)	168 (1.7)	630 (1.7)	78.6
NO SPECIAL MOTIVE	121 (0.9)	164 (1.2)	24 (0.2)	309 (0.8)	78.3
BECAUSE OF MOVING OF HOUSEHOLDER	8,766(66.8)	9,151(65.4)	6,161(62.2)	24,078 (65.1)	37.2
OTHER MOTIVES	48 (0.4)	69 (0.5)	45 (0.5)	155 (0.4)	
NO RESPONSE	80 (0.6)	80 (0.6)	38 (0.4)	198 (0.5)	
TOTAL	13,119(100.0)	13,994(100.0)	9,893(100.0)	37,006(100.0)	

\* M / T = MALE / TOTAL × 100

TABLE 54 . MIGRATION POPULATION BY MIGRATION MOTIVE AND MIGRATION PATTERN: 1979

	URBAN-URBAN					URBAN-RURAL		RURAL-URBAN		RURAL-RURAL			FOREIGN COUNTRY
	Within same city	City small & medium	Big city	Big city-small & medium city	Between small & medium city	Big city-Gun	Small & medium city-Gun	Gun-big city	Gun-small & medium city	Between same or Myeon	Intra-Gun Eup or Myeon	Other Gun Eup or Myeon	
To seek a job	94 (0.5)	33 ( 0.8)	14 ( 3.0)	47 ( 4.6)	15 ( 7.3)	29 ( 2.4)	24 ( 4.0)	123 ( 6.7)	47 ( 0.1)	85 ( 1.4)	21 ( 2.8)	42 ( 4.1)	0
Because of work place	561 (3.0)	116 ( 2.8)	74 (15.8)	186 (18.1)	41 (19.9)	157 (13.0)	87 (14.6)	314 (127.1)	147 (14.0)	145 ( 2.4)	65 ( 8.7)	178 (17.4)	3 (27.2)
Because of business	364 (2.0)	133 ( 3.2)	12 ( 2.6)	41 ( 4.0)	4 ( 1.9)	499 (4.1)	30 ( 5.1)	29 ( 1.6)	28 ( 2.7)	163 ( 2.7)	15 ( 2.0)	26 ( 2.5)	0
Expiration of house	1,100 (6.0)	221 ( 5.4)	2 ( 0.4)	10 ( 1.0)	1 ( 0.5)	8 ( 0.7)	4 ( 0.7)	12 ( 0.7)	3 ( 0.3)	255 ( 4.3)	19 ( 2.5)	10 ( 1.0)	0
For lower rent house	286 (1.5)	57 ( 1.4)	2 ( 0.4)	1 ( 0.1)	1 ( 0.5)	3 ( 0.2)	0 ( - )	6 ( 0.3)	5 ( 0.5)	44 ( 0.7)	0 ( - )	2 ( 0.2)	0
For a larger house or room	538 (2.9)	128 ( 3.1)	0 ( - )	1 ( 0.1)	0 ( - )	5 ( 0.4)	0 ( - )	3 ( 0.2)	1 ( 0.1)	163 ( 2.7)	6 ( 0.8)	0 ( - )	0
Removal of house	171 (0.9)	28 ( 0.7)	2 ( 0.4)	2 ( 0.2)	0 ( - )	5 ( 0.4)	0 ( - )	4 ( 0.2)	3 ( 0.3)	163 ( 2.7)	3 ( 0.4)	2 ( 0.2)	0
Preparation of one's own house	440 (2.4)	90 ( 2.2)	2 ( 0.4)	8 ( 0.8)	0 ( - )	26 ( 2.2)	2 ( 0.3)	8 ( 0.4)	0 ( - )	262 ( 4.4)	19 ( 2.5)	9 ( 0.9)	0
Other financial matters	92 (0.5)	22 ( 0.5)	1 ( 0.2)	5 ( 0.5)	0 ( - )	8 ( 0.7)	3 ( 0.5)	3 ( 0.2)	2 ( 0.2)	22 ( 0.4)	5 ( 0.7)	0 ( - )	0
For education of children	73 (0.4)	17 ( 0.4)	4 ( 0.9)	7 ( 0.7)	6 ( 2.9)	1 ( 0.1)	0 ( - )	56 ( 3.1)	31 ( 3.0)	18 ( 0.3)	1 ( 0.1)	7 ( 0.7)	0
For education of oneself	112(0.6)	42 ( 1.0)	9 ( 1.9)	36 ( 3.5)	3 ( 1.5)	11 ( 0.9)	10 ( 1.7)	114 ( 6.2)	89 ( 8.5)	43 ( 0.7)	36 ( 4.8)	26 ( 2.5)	0
Because of marriage or for independent life	392 (2.1)	103 ( 2.5)	26 ( 5.6)	48 ( 4.7)	5 ( 2.4)	69 ( 9.7)	45 ( 7.6)	82 ( 4.5)	42 ( 4.0)	145 ( 2.4)	42 ( 5.6)	60 ( 5.9)	0
For living together with one's family	69 (0.4)	18 ( 0.4)	9 ( 1.9)	25 ( 2.4)	2 ( 1.0)	82 ( 6.8)	37 ( 6.2)	30 ( 1.6)	7 ( 0.7)	32 ( 0.5)	5 ( 0.7)	27 ( 2.6)	5 (45.5)
Becaus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9 ( - )	2 ( - )	3 ( 0.6)	2 ( 0.2)	1 ( 0.5)	35 ( 2.9)	6 ( 1.0)	3 ( 0.2)	2 ( 0.2)	13 ( 0.2)	5 ( 0.7)	18 ( 1.8)	0
For better transportation	414 (2.2)	93 ( 2.3)	12 ( 2.6)	26 ( 2.5)	5 ( 2.4)	25 ( 2.1)	13 ( 2.2)	49 ( 2.7)	34 ( 3.2)	120 ( 2.0)	57 ( 7.6)	12 ( 1.2)	0
For better environment	346 (1.9)	99 ( 2.4)	3 ( 0.6)	5 ( 0.5)	1 ( 0.5)	22 ( 1.8)	4 ( 0.7)	9 ( 0.5)	4 ( 0.4)	112 ( 1.9)	7 ( 0.9)	15 ( 1.5)	0
To live near one's relatives or friends	196 (1.1)	38 ( 0.9)	15 ( 3.2)	29 ( 2.8)	4 ( 1.9)	29 ( 2.4)	16 ( 2.7)	42 ( 2.3)	18 ( 1.7)	56 ( 0.9)	13 ( 1.7)	23 ( 2.2)	0
Longing for big city	1 ( - )	0 ( - )	0	2 ( 0.2)	0 ( - )	0 ( - )	0 ( - )	16 ( 0.9)	4 ( 0.4)	2 ( - )	2 ( 0.3)	6 ( 0.6)	0
Because of moving of householder	12,867(69.6)	2,801 (68.2)	267 (57.2)	536 (52.0)	117 (56.8)	628 (52.0)	305 (51.3)	912 (49.7)	565 (53.9)	4,097 (68.4)	414 (55.3)	553 (54.0)	1 ( 9.1)
No special motives	234 (1.3)	39 ( 0.9)	1 ( 0.2)	7 ( 0.7)	0 ( - )	2 ( 0.2)	1 ( 0.2)	3 ( 0.2)	1 ( 0.1)	17 ( 0.3)	3 ( 0.4)	1 ( 0.1)	0
Other motives	63 (0.3)	14 ( 0.3)	8 ( 1.7)	5 ( 0.5)	0 ( - )	13 ( 1.1)	4 ( 0.7)	14 ( 0.8)	8 ( 0.8)	16 ( 0.3)	9 ( 1.2)	2 ( 0.2)	2 (18.2)
No response	60 (0.3)	12 ( 0.3)	1 ( 0.2)	1 ( 0.1)	0 ( - )	0	3 ( 0.5)	2 ( 0.1)	8 ( 0.8)	17 ( 0.3)	1 ( 0.1)	3 ( 0.3)	0
Total	18,482(100.0)	4,106(100.0)	467(100.0)	1,030(100.0)	206(100.0)	1,207(100.0)	594(100.0)	834(100.0)	1,049(100.0)	5,990(100.0)	748(100.0)	1,024(100.0)	11(100.0)

TABLE 55 . MIGRATION POPULATION BY MIGRATION MOTIVE, AGE AND SEX : 1979

MALE		AGE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N · R	TOTAL
MOTIVE																	
To seek a job			0	0	21	68	85	70	31	23	17	14	8	9	11	0	377
Because of work place			0	0	9	116	250	430	326	161	100	46	20	17	5	4	1,484
Because of business			0	0	1	7	27	123	176	159	84	56	52	30	16	5	736
Expiration of house lending contract			0	3	6	21	65	2221	320	254	148	95	52	46	58	7	1,296
For lower rent house			0	2	2	5	14	49	62	48	42	30	12	15	22	4	307
For a larger house or room			0	2	4	9	32	122	153	175	113	63	29	22	23	6	753
Removal of house			0	1	7	4	13	19	36	29	45	43	33	22	33	2	287
Preparation of one's own house			0	10	5	3	6	65	174	177	120	80	57	35	33	0	765
For school attendancy			0	10	44	245	71	16	27	38	33	7	10	7	6	0	514
Because of marriage or for independent life			0	0	1	6	68	254	177	11	3	4	0	0	4	3	471
For living together with one's family			4	6	7	33	52	37	14	15	7	2	2	3	13	0	195
Becaus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0	0	0	7	113	63	13	4	2	4	0	0	0	0	205
For better transportation			0	2	17	122	76	152	125	84	52	15	6	3	7	0	661
For better environment			0	0	1	18	33	77	122	86	53	40	22	22	21	0	495
To live near one's relatives or friends			20	5	9	26	31	45	58	28	14	7	4	3	15	0	265
Because of moving of householder			2,288	2,291	1,619	1,409	719	345	87	21	14	10	10	24	109	0	8,946
Total migrants			2,350	2,351	1,768	2,119	1,707	2,192	1,356	1,405	908	558	343	283	398		18,338

FEMALE																
MIGRATION MOTIVE	AGE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N.R.	TOTAL
To seek a job		0	0	12	66	83	21	6	10	3	7	4	4	5	0	221
Because of work place		0	0	11	231	223	43	23	7	16	8	7	6	10	14	599
Because of business		0	0	0	2	18	27	25	37	13	20	4	9	2	1	158
Expiration of house lending contract		0	1	0	27	59	24	21	40	32	45	33	22	43	2	349
For lower rent house		0	0	0	5	16	8	11	13	10	9	14	5	7	1	99
For a larger house or room		0	1	0	7	18	10	7	12	9	10	6	7	3	2	92
Removal of house		0	9	10	8	3	2	2	5	15	9	3	6	18	6	96
Preparation of one's own house		0	0	6	5	7	6	9	10	18	9	11	9	6	5	101
For school attendance		0	11	24	117	25	3	6	7	8	15	2	4	21	0	243
Because of marriage or for independent life		0	0	0	38	373	138	12	8	3	2	2	8	10	0	593
For living together with one's family		6	1	4	28	40	17	3	4	3	6	5	9	36	0	162
For better transportation		0	2	6	83	63	15	6	6	3	3	5	6	4	0	202
For better environment		0	0	1	22	36	14	10	9	7	9	6	6	14	1	135
To live near one's relatives or friends		14	5	9	38	50	27	9	6	6	5	4	6	36	0	215
Because of moving of householder		2,171	2,148	1,436	1,338	1,774	1,860	1,481	904	536	408	282	230	564	0	15,132
Total migrants		2,227	2,198	1,530	2,044	2,842	2,247	1,648	1,103	696	580	405	345	803		18,668

< 표 1 > 1973. 7. 1 ~ 1978. 6.30 출생·사망호적대조율 및 신고율  
( 1978.12.31 현재 대조상황 )

	청 주		예 산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조사에서 발견된 총동태건수	1,039	120	1,164	252
호적과 대조된 건수	695	80	1,058	230
호적과 대조되지 않은 건수	344	40	106	20
호적대조율 ( 대조건수 / 발견건수 )	66.89 %	66.67 %	90.89 %	91.29 %
호적신고건수	653	64	1,010	194
미신고건수	42	16	48	36
신고율 ( 신고건수 / 대조건수 )	93.96 %	80.00 %	95.46 %	84.351 %

인구동태통계자료로서의 호적신고는 단순히 높은 신고율만으로는 전혀 유용성이 없다. 인구동태통계는 매년마다 인구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그때 그때 생산되어야 뜻이 있다. 제때의 인구동태통계라야만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호적법상 출생, 사망 모두가 1달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출생, 사망의 적기신고율은 출생이 26.05%이고 사망이 27.45%이다. 그리고 발생년도에 신고한 당년 신고율은 출생이 58.87%이고, 사망은 44.06%이다. 이렇게 당년신고율이 반정도이므로 우리나라는 호적신고가 인구동태통계자료로서 별 의미도 없는 실정이다.

출생, 사망신고기간에 대한 자세한 건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실제의 적기신고율과 호적상의 적기신고율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실제 출생적기신고율은 26.05%인데 호적상의 출생적기신고율은 54.78%로 28.73%의 차이가 나고, 사망의 경우는 실제의 적기신고율이 27.45%인데 호적상의 적기신고율은 55.25%로 27.90%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호적기록의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확신고율은 매우 낮아 본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신고된 것은 출생이 청주가 총 신고건수중에 42.57%, 예산이 30.00%로 34.43%에 지나지 않으며, 사망의 경우는 청주가 29.68%, 예산이 23.71%로 25.19%이며 출생 보다도 더욱 낮다.

#### 4.4.3. 신고 지식

우리나라 주민들은 거의 다 출생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생신고의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총 응답자의 98.11%이고 사망신고의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97.60%였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고의무에 대한 지식은 청주시와 예산군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지식율을 보였는데 출생의 경우는 95.10%이고 사망은 91.95%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청주시보다 예산군이 신고지에 대한 지식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출생과 사망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 록 Ⅳ : 조 사 표

조사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 구 번 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인구동태통계 개선 사업 1978년 중복조사 질문표

주소 : \_\_\_\_\_

시
구
동
리
번지

가구주 성명 : \_\_\_\_\_

## 조 사 결 과

방 문 회 수	1 회	2 회	3 회
방 문 일 자	월 일	월 일	월 일
응 답 자 성 명			
조 사 원 성 명			
면 접 시 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면 접 결 과	완료, 거절, 미완	완료, 거절, 미완	완료, 거절, 미완
다음방문예정일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현지지도원확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연세대학교 인구및 가족계획연구소

##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연세대학교 인구및 가족계획연구소에서 나온 ○○○입니다.

귀택을 찾아온 이유는 의료보건사업이나 국민복지를 위한 사업등을 하는데 꼭 필요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동리는 전국에서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뽑혀졌으며 저희들은 이 동리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출생과 사망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우리나라 통계법에 의해서 숫자로 바뀌어져서 처리되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바쁘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여쭙어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78년 9월



103. 맥의 가족이외에 늘 같이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지가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04. 이밖에 맥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정부나 고용인 또는 하숙인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가 구 원 기 록 표 —

6세 이상의 교육 정도	부 모 생 존 여 부						15세 이상의 배우관계	개인질문표 대상부인
	112	113	114	115	116	117		
이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배우관계		이분은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조사원: 15~51세의 기혼 부인에 V표를 할 것]
	이분의 아버지는 현재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이분의 아버지는 현재 살아 있는 자녀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까?	이분의 어머니는 현재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이분의 어머니는 현재 살아 있는 자녀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까?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및 별거 4. 사별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및 별거 4. 사별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및 별거 4. 사별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및 별거 4. 사별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및 별거 4. 사별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및 별거 4. 사별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및 별거 4. 사별	

122. 혹시 군에 입대중이거나 학교 또는 취업으로 밖에 나가 있는 식구중에 위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삭제할 것)  없다

## 제 2 장 출생 · 사망에 관한 사항

[조사원 : 다음 질문들은,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이택에서 일어난 출생과 사망에 관한 사항이다]

201.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이택에 살고 있는 식구중에 아기를 낳은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2.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친척, 하숙인, 고용인중에서 아기를 낳은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3-1. 이택에 위에서 말씀하신 아기가외에 1년 8개월이 안된 아기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03-2. 그 아기의 어머니는 현재 이택에 살고 있습니까?

1. 그렇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아니다.

204.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이택에서 태어나서 곧 죽은 아기는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 — 출 생 기 록 표 —

출생아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모의 이름	모가 구원호	출생년월일	성별	출생아 생존여부	출생아 동거여부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이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사원: 아기의 모가 구원호를 기입한다]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이 아기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아기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년 월 일	음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동거 2. 별거
				년 월 일	음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동거 2. 별거
				년 월 일	음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동거 2. 별거

[조사원 : 질문 208에서 아기의 모가 가구원이 아닐 경우는 사망이라든가 전출 등과 같은 사유를 기재한다]

213.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댁에서 살고 있던 식구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14.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댁에서 살고 있던 친척, 친지, 하숙인, 가정부, 고승인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15.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댁에서 살고 있던 어린애 중에서 죽은 애가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16.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댁에서 살고 있던 식구중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거나, 아기를 낳은 후 곧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17. 그 아기는 살았습니까?

1. 생존       2. 출생후 사망       3. 사산  
 (출생기록표에 기재 되었나 확인하고 없으면 기입)      (출생및 사망기록표에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없으면 기입)

— 사 망 기 록 표 —

사망자의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사 망 년 월 일	사망당시 연 령	사망당시 등거여부	사망자의 배우관계	51세이하의기혼부인의출산
218	219	220	221	222	223	223	225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이분은 사망당시 만으로 몇살이었습니까?	이분은 사망당시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까?	이분은 살아서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분은 혹시 77년 1월 이후 사망시까지 출산한 적이 있었습니까?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만 세	1. 예 2. 아니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05로) 2. 없다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만 세	1. 예 2. 아니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05로) 2. 없다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만 세	1. 예 2. 아니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05로) 2. 없다

### 제 3 장 건강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이제부터는 백의 각 식구의 건강과 보건상태에 관해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구원 번호	가구원 이름	유 병 기 간		치 료 처		치과이용	부 상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조사원: 제 1장을 보고 가구원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분은 지난 한달 동안 아파서 평소와 하던 일(또는 공부·놀이)에 지장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아파서 모두 몇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이분은 치료를 주로 어디에서 하였습니다?	이분은 지난 한달 동안에 아파서 의사를 찾아 갔거나 의사가 왕진을 온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번이나 됩니까?	이분은 지난 한달 동안에 치과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번이나 됩니까?	이분은 작년 정초 이후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입니까?	이분은 어떤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까?
01	가 구 주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02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03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04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05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06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07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08		1. 있다 2. 없다 (305로)	_____ 일	1. 자가·무치료 2. 약국 3. 한의 4. 양의 5. 치과	1. 한의 _____ 번 2. 양의 _____ 번 3. 없다	1. _____ 번 2. 없다	1. 있다 _____년 _____월 2. 없다 (311로)	

부 상		수 술		입 원			불 구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어디서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조사원: *보기를 보고 기입]	몸의 어느 부분에 부상을 입었습니까?	이분은 작년 정초 이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몸의 어떤 부분을 수술 받았습니까?	이분은 작년 정초 이후에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모두 몇일 동안 입원했습니까?	이분은 주로 어떤 이유로 입원했습니까?	이분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까?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이분은 다음과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3으로)		1. ____년 ____월 2. 없다 (316으로)	____일		1.맹인 2.귀머거리 3.병어리 4.지체부자유	1.정신박약 2.정신병 3.간질	

- \* 보기 1. 자기집내 2. 남의 집 3. 철도 및 도로(차도 및 보도)  
4. 농토(논, 밭, 과수원등) 5. 산업장소(공장, 사무실, 상점등)  
6. 학교 7. 오락이나 운동장소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한다)



409. 가구주이외에 택의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질문 411로)

410.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름	직업(직장·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월수입
		원
		원
		원

411. 택의 수입을 모두 합한다면 택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원

412. 택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1. 짓는다  2. 안짓는다(질문 414로)

413.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종류	규모
논	평	특용작물( )	평	소가축( )	마리
밭	평	수원지	평	가금( )	수
과수원	평	대가축( )	두	누에	g
고등원에( )	평	중가축( )	두	벌	통

414. 택에서 살고 있는 집은 자가입니까? 아니면 세를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밖에 무엇입니까?

1. 자가  2. 셋집  3. 세없이 빌려든 집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415.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_\_\_\_\_ 평

416. 현재 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은 모두 몇개입니까?

\_\_\_\_\_ 개

--

417. 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 (가) 시 계  1. 있다  2. 없다    (사) 세 탁 기  1. 있다  2. 없다  
 (나) 라 디 오  1. 있다  2. 없다    (아) 자 전 거  1. 있다  2. 없다  
 (다) 텔레비전  1. 있다  2. 없다    (자) 오토바이  1. 있다  2. 없다  
 (라) 전 축  1. 있다  2. 없다    (차) 재 봉 틀  1. 있다  2. 없다  
 (마) 선 풍 기  1. 있다  2. 없다    (카) 전 화  1. 있다  2. 없다  
 (바) 냉 장 고  1. 있다  2. 없다    (타) 신문구독  1. 있다  2. 없다

--

**※ 조사구내의 출생·사망사건 발견**

1. 이 동네에서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아기를 낳은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2. 이 동네에서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3. 이 동네에서 작년 정초 이후(1977년 1월 이후)에 죽은 어린애나 돌이 안되서 죽은 아기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조사원 : 출생이나 사망사건이 있는 집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기록한다]

사 건	가구주(또는 가구원) 이름	집의 주소나 위치

## 보조 질문표 : 출산력에 관한 사항

응답부인 이름 \_\_\_\_\_

가 구 원 번호 

--	--

아주머니께서 지금까지 낳으신 아기가 모두 몇명이나 되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1. 아주머니께서 낳으신 자녀 가운데 현재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_\_\_\_\_명
  
2. 아주머니께서 낳으신 자녀 가운데 현재 이집 이외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_\_\_\_\_명
  
3. 아주머니께서 낳으신 자녀 가운데 죽은 자녀는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_\_\_\_\_명
  
4. [조사원: 질문 1. 2. 3의 응답결과를 합계하여 그 결과를 아래 난에 써 넣고 확인한다.]

정상 출생아 총수: \_\_\_\_\_명

그러면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는 모두 \_\_\_\_\_명(합계)이 되는 셈이군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

아니오(필요한 경우 수정할 것)

5. [조사원: 다음중 적당한 란에 표시하십시오]

정상 출생아 있음

정상 출생아 없음

(정상 출산 기록표상의

(비출산 임신 기록표상의

질문 6으로 간다)

질문 19로 간다)

---

그러면 아주머니께서 낳으신 자녀 한분 한분에 대해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상출생(1941~1950)기록표 : 작업표에 기록해 가면서 물으시오.

아이의 세는 나이	띠 (윤달)	어머니의 세는 나이	출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이름	사망년월일			수유기간	출생순위	
			(첫번째, 두번째...) 몇년도에 났습니까? (응답자의 나이와 아기의 띠를 들어보아 내어 해당년도에 동그라미를 치시오.)	(첫번째, 두번째...) 아 기는 몇월 몇 날 났 었 습니까?	그날 짜 는 양 력 입 니 까? 아 름 력 입 니 까?				그 아 이 는 남 자 입 니 까? 아 름 력 입 니 까?	그 아 이 는 살 아 있 었 습니까?	그 아 이 의 이 름 은 무 엇 입 니 까?			그 아 이 는 몇 년 도 에 죽 었 었 습니까? (필요한 경우) 그 당 시 부 인 계 서 는 몇 살 이 었 었 습니까? (년도를 알아 내어 기록 하시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8	뽕(6)		1941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7	갈		1942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6	양		1943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5	원숭이(4)		1944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4	탑		1945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3	개		1946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2	패지(2)		1947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1	쥐		1948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0	소(7)		1949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29	호랑이		1950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비출산 임신(1941~1950) 기록표: 작업표에 기록해가면서 물으시오.

양력 년도	임신여부	임신년도			임신기간	정상출산여부	인공유산여부	임신재확인		임신회수
	(첫애기를 낳기 전 첫애기와 둘째애기 사이...막내애기를 낳은 후) 그 애기 이외에 부인계서는 단지 한두달간이라도 임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19-27를 반복할 것 없다면: 바로 27로 가시오.	(첫번째, 두번째, ...)그 임신은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필요한경우)그당시 아주머니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양력 년도를 써넣으시오.)	그 임신이 끝난 달은 어느달입니까?	그달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그임신은 몇달째 끝났습니까?	7개월 이상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울었습니까? 아니면 울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10-18로 되돌아가 들어본 후, 26-27를 확인하십시오.	7개월 미만 부인이나, 의사, 또는 그밖의 누가 그 임신을 빨리 끝내도록 인공유산을 시키셨습니까?	(첫 애기를 낳기 전, 첫 애기와 둘째 애기 사이에...) 부인계서는 이 밖에 또 그러한 임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19-26를 반복하고 없다면: 27를 확인하십시오	이 사이에 부인이나 의사 또는 그밖에 누가 그 임신을 빨리 끝내도록 인공유산을 시킨 적은 없었습니까? 있다면: 20-23, 25-26를 반복하고, 없다면: 다음임신간격 19로 가시오.	임신회수 (현재임신포함) 특수출생의 경우 1회로 계산하십시오.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41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2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3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4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5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6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7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8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49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0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상출생(1951~1960)기록표 : 작업표에 기록해 가면서 물으시오.

아이의 세는 나이	띠 (윤달)	어머니의 세는 나이	출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이름	사망년월일			수유기간	출생순위
			출생년	출생월	출생일				사망년	사망월	사망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8	토끼		1951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7	용(5)		1952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6	뱀		1953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5	말		1954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4	양(3)		1955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3	원숭이		1956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2	닭(8)		1957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1	개		1958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20	돼지		1959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19	쥐(6)		1960	월	일	양음	남여	예 아니오				그렇다 아니오	

비출산 임신 (1951~1960) 기록표 : 작업표에 기록해가면서 들으시오.

양력 년도	임신여부		임신년도		임신기간	정상출산여부	인공유산여부	임신재확인		임신회수			
	7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첫애기를 낳기 전, 첫 아기와 둘째 아기 사이에 ...)	이 사이에 부인이나 의사 또는 그밖에 누가 그 임신울 빨리 끝내도록 인공유산을 시킨 적은 없었습니까?	있다면 : 19~27를 반복하고 없다면 : 27를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 20~23, 25~26를 반복하고, 없다면 : 다음임신 간격 19로 가시오.	임신회수 (현재임신 포함) 복수출생의 경우 1회로 계산하십시오.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51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2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3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4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5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6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7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8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59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0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상출생 (1961~1970) 기록표 : 작업표에 기록해가면서 물으시오.

아동의 호칭 나이	피 (월/일)	출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이름	사망년월일			수유기간	출생순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소		1961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7	호랑이		1962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6	토끼 (4)		1963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5	용		1964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4	뱀		1965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3	말 (3)		1966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2	양		1967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1	원숭이 (7)		1968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0	닭		1969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9	개		1970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비출산 임신 (1961~1970) 기록표 : 작업표에 기록해가면서 물으시오.

월 년	임신여부		임신년도					임신기간	정상출산여부	인공유산여부	임신재확인		임신회수	
	있음	없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61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2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3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4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5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6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7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8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69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0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상출생 (1971~1978) 기록표 : 작업표에 기록해 가면서 물으시오.

아이의 세계 나이	어머니의 세는 나이	출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이름	사망년월일			수유기간	출생순위		
		출생년	출생월	출생일				사망년	사망월	사망일				
8	띠 (윤달)	(첫번째, 두번째...) 아기는 몇년도에 났습니까? (응답자의 나이와 아기의 나이 및 띠를 들어보아 해당년도 에 동그라미를 치시오.)	(첫번째, 두번째...) 아기는 몇년도에 났습니까? (현재 유증이라면 "수유중"이라 고 써넣으시오.)	그날까 는 양력 입니까? 음력 입니까?	그아 이는 남자 입니까? 여자 입니까?	그 아이 는 현재 살아있 습니까?	그아이의 이름은 무엇입 니까?	그 아이는 몇년도 에 죽었 습니까? (필요한 경우) 그 당시 부 인계서 는 몇살 이었습 니까? (년도를 알아내 어 기록 하시오.)	그 아이 는 몇월 에 죽었 습니까?	그날까 는 양력 입니까? 음력 입니까?	부인계서 는 이 아이 를 몇달 키웠습 니까?	몇달동안 이 아이를 키웠습 니까? (현재 유 증이면 "수 유중"이라 고 써넣 으시오.)	출생순 위를 기 입한 후 비출생 신입신 기록표 해당년 도에는 VV 표시 하시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	돼지 (5)		1971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7	쥐		1972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6	소		1973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5	호랑이 (4)		1974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4	토끼		1975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3	용 (8)		1976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2	뱀		1977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1	말		1978	월 일	양 음	남 여	예 아니오			월 일	양 음	그렇다 아니오		

비출산 임신(1971~1978) 기록표 : 작업표에 기록해가면서 물으시오.

양력 년도	임신여부		임신년도				임신기간	정상출산여부	인공유산여부	임신재확인		임신회수	
	(첫애기를 낳기 전 첫애기와 둘째 아기 사이... 막내아기를 낳은 후) 그 아기 이외에 부인께서는 단지 한두달간이라도 임신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있다면 : 19~27를 반복할 것 없다면 : 바로 27로 가시오.	(첫번째, 두번째, ...) 그 임신은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필요한경우) 그렇시 아주머니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양력 년도를 써넣으시오.)	그 임신이 끝난달은 어느달입니까?	그달은 양력임년월입니까? 음력임년월입니까?	그임신은 몇달째 끝났습니까?	7개월 이상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울었습니까? 아니면 울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10~18로 되돌아가 물어본후, 26~27를 확인하십시오.	7개월 미만 부인이나, 의사, 또는 그밖의 누가 그 임신을 빨리 끝내도록 인공유산을 시키셨습니까?	(첫 애기를 낳기 전, 첫 아기와 둘째 아기 사이에...) 부인께서는 이 밖에도 그러한 임신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있다면 : 19~26를 반복하고 없다면 : 27를 확인하십시오.	이 사이에 부인이나 의사 또는 그밖의 누가 그 임신을 빨리 끝내도록 인공유산을 시킨 적은 있으니까? 있다면 : 20~23, 25~26를 반복하고, 없다면 : 다음임신간격 19로 가시오.			임신회수 (현재임신포함) 복수출생의경우 1회로 계산하십시오.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71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2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3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4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5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6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7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978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양 음	그렇다	아니오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9 현재 임신중입니까?  
 임신중 \_\_\_\_\_ 개월  
 임신중이 아님

조사 일자

30. 조사원 : 다음 합계를 써 넣으시오.

(1) (현재 임신을 포함한) 총임신회수		
(2) 쌍생아 출산회수(각 쌍생아 짝은 1회 정상 출생으로 계산하시오.)		
(3) 인공유산회수		
(4) 기타 태아손모회수(자연유산, 사산)		
(5) 현재 임신		
(6) 정상 출생아 총수		
합	계	

31. 조사원 : (삼태아의 경우 등을 제외했을 때) 윗표의 2개 합계가 서로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만약 같지 않다면, 정상 출생과 비출산 임신기록표상의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여 보십시오.

\*복수출생의 경우,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 i) 윗표의 (2)번 줄에서; 쌍생아일 경우, 두 아이가 모두 정상출생일 때는 그 짝을 1회의 출생으로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가운데, 어느 한 경우나 모든 경우가 사산인 때는 1회의 출생으로 계산해서는 아니 됩니다.
- ii) 윗표의 (4)번 줄에서; 쌍생아 출산의 두짝이 모두 사산인 경우에만 임신손모회수를 1(하나)로 계산 하십시오.

32. 조사원 : 질문 과정에서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다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좋다                       좋은 편                       좋지 않다

33. 조사원 : 이 부분의 면접시 응답자 이외에 있었던 사람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아무도 없었다       10세 이하의 아이들       남편       그 밖의 남자       그 밖의 여자

## 면 접 후 기

[조사원 : 면접조사를 마친 후에 즉시 기입한다]

가) 응답자의 협조상태 :  1. 매우 좋았다  2. 좋았다  3. 보통  4. 나빴다

나) 조사원 소견 :

면접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

---

---

---

특정 질문에 대하여 :

---

---

---

경제적 배경 :  1. 상  2. 중  3. 하

기타 사항 :

---

---

---

다) 지도원 관찰 소견 :

---

---

---

---

---

---

---

---

조사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인구동태통계 개선 사업 1979년 중복조사 질문표

주소 :                      시                      구                      동                      리                      번지

가구주 성명 : \_\_\_\_\_

### 조 사 결 과

방 문 회 수	1 회	2 회	3 회
방 문 일 자	월 일	월 일	월 일
응 답 자 성 명			
조 사 원 성 명			
면 접 시 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면 접 결 과	완료, 거절, 미완, 부재	완료, 거절, 미완, 부재	완료, 거절, 미완, 부재
현지지도원확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에서  
나온 ○○○ 입니다.

귀택을 찾아온 이유는 의료보전사업이나 국민복지를 위한 사업등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동리는 전국에서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뽑혀졌으며 저희들은 이 동리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출생과 사망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우리나라 통계법에 의해서 숫자로 바뀌어  
져서 처리되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바쁘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여쭙어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1979년 9월

# 제1장 가구원에 관한 사항

## — 가구원 기록표 —

가구원 번호	가 구 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상주여부	성 별	생 년 월 일		6세이상의 교육정도	
	101	102	103	104	105		107	
	댁에서 늘 같이 생활을 하는 식구들의 이름을 가구주부터 빠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가정부, 고용인, 하숙인 포함)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분은 현재 이집에서 같이 살고있습니까?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분의 세는 나이는 몇세입니까? 무슨 띠입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이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01		가 구 주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2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3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4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5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6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7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8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09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0			1.산 다 2.안산다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음양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 조사되어야 할 사람

1. 댁의 어린이(특히 1년미만)들중 빠진 아이는 없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2. 댁의 가족 이외에 늘 같이 살고 있는 친척, 친지, 하숙인, 동거인중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3. 댁의 식구중 친지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여행중이어서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조  
확  
인  
사  
사  
원  
할**

기재된 가구원 이름을 응답자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읽어주고 다음 사항을 확인 하시오.

가구원수	
대상부인수	
가구형태	

15세 이상의 배우 관계	인 구 이 동					보조질문 대상부인
	108	109	110	111	112	
이 분은 결혼 하셨습니까? 아니면 미혼이십니까?	이 분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이 집으로 이사오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1978년 1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작년에는 이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1978. 1. 1 ~ 12. 31)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1. 78년 1월이전 →질문 114로 2. 년 월이후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읍면동 _____	_____ 회	

4. 내의 식구중 항공기나 배를 타는 탑승원은 없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조사에서 빼야 할 사람**

5. 벽에 잠시 와 게시는 친척이나 방문객, 손님중에 위에 포함된 사람은 없습니까?

있음→삭제할 것

없음

6. 군에 임대중이거나 학교 또는 취업으로 다른곳에 살고있는 식구중에 위에 포함된 사람은 없습니까?

있음→삭제할 것

없음

## 제 2 장 출생 · 사망에 관한 사항

[조사원 : 다음 질문들은 작년 정초 이후(1978년 1월 이후)에 이택에서 일어난 출생과 사망에 관한 사항이다]

201. 이택에서 살고 있는 식구중에 작년이나 금년에(1978년 1월이후) 아기를 낳은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2. 같이 살고 있는 친척이나 동거인(하숙인, 가정부, 고용인)중에서 작년이나 금년에(1978년 1월 이후) 아기를 낳은분이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3. 작년이나 금년에(1978년 1월이후) 이택에서 태어났다가 곧 죽은 아이는 없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4. 위에서 말씀하신 아기 이외에 이택에서 살고 있는 식구중에 둘이 안된 아기가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 — 출 생 기 록 표 —

출 생 아 번 호	출생이름	가구주와의관계	모의이름	모의상주여	출생년월일	성 별	출생 아 생존여부	출생 아 동거여부	
	2 0 5	2 0 6	2 0 7	2 0 8	2 0 9	2 1 0	2 1 1	2 1 2	
	이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는 현재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이 아기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아기는 현재 살아있습니까?	이아기는 현재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1				1. 산다 2. 안산다 3. 사망	년 월 일	음 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산다 2. 안산다
2				1. 산다 2. 안산다 3. 사망	년 월 일	음 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산다 2. 안산다
3				1. 산다 2. 안산다 3. 사망	년 월 일	음 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산다 2. 안산다

213. 혹시 이택에서 살고 있던 식구중에 작년이나 금년(1978년 1월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14. 이 택에서 살고 있던 어린애중에 작년이나 금년에(1978년 1월이후) 죽은 어린애가 있습니까?

1. 있다(사망 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15. 이 택에서 살던 친척이나 동거인(하숙인, 가정부, 고용인)중에서 작년이나 금년에(1978년 1월이후)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16. 이 택에서 작년이나 금년에(1978년 1월이후) 아기를 낳다가 죽거나 또는 아기를 낳은후 곧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 기록표에 기입)  2. 없다

↓

217. 그 아이는 살아 있습니까?

1. 생존  2. 출생후사망  3. 사산

(출생기록표에 기입되었나 확인 하고 없으면 기입)  
(출생 및 사망기록표에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없으면 기입)

— 사 망 기 록 표 —

사 망 자 번 호	사망자이름	가주주와의관계	성 별	사 망 년 월 일	사 망 당 시 령	사망당시 배우관계	사망당시 상주여부
	2 1 8	2 1 9	2 2 0	2 2 1	2 2 2	2 2 3	2 2 4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분은 남자 입니까? 여자 입니까?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이분은 사망 당시 만으로 몇살이었습니까?	이분은 결혼한적이 있었습니까?	이분은 이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1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세	1. 예 2. 아니오
2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세	1. 예 2. 아니오
3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세	1. 예 2. 아니오

## 보 조 질 문 표

조사구번호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응답자성명	
응답자의나이	

1. [조사원 : 가구원 기록표에서 부인이 낳은 자녀의 유무를 확인하고 아래 사항을 표시한다]

1. 출산경험있음(→질문 4 로)                       2. 출산경험유무 미상

↓

2. 부인께서는 어린애를 낳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질문 4 로)                       2. 없다

↓

3. 그러면 낳았다가 잃으신 자녀는 없습니까?

1. 있다     2. 없다(→질문 5 로)

4. 지금까지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자녀는 언제 낳았습니까? (임신 7 개월 이상 정상출생아 포함)

부인의 세는 나이 \_\_\_\_\_ 세

현재 아이의 세는 나이 \_\_\_\_\_ 세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생(음·양)

(→질문 9 로)

5. 임신하신 적은 있습니까?

1. 과거 임신한적 있다.                       2. 없다                       3. 과거 임신한적 없으나

(→질문 9 로)

현재 임신중이다.

(→질문 10으로)

↓

6. 과거 임신 중에서 7 개월이상 계속하다가 끝난 임신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질문 9 로)

↓

7. 그 아이는 낳아서 울었거나 살아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없었다(→질문 9 로)

↓

8. 그 아이는 언제 낳았습니까?

[조사원 : 7 개월 이상 정상출생이 2 회 이상인 경우는 최후의 정상출생에 관한 질문을 한다]

부인의 세는 나이 \_\_\_\_\_ 세

출산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음·양)

9.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중이십니까?

1. 임신중이 아니다                       2. 모르겠다                       3. 임신중이다

(→질문11로)

(→질문11로)

↓

10. 현재 임신 몇 개월째이십니까? \_\_\_\_\_ 개월 (→질문18로)

11. 어떤 분은 수술을 했거나 신체의 어떤 이상으로 어린애를 낳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이나 남편께서는 만일 어린애를 가지려고 한다면 임신이 되실 것으로 봅니까?

1. 임신할 수 있다.       2. 모르겠다       3. 없다  
 (→질문13으로)                      (→질문13으로)                      ↓

12. 그렇다면 임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8로)

1. 불임수술—남편  
 2. 불임수술—부인  
 3. 자연불임  
 4. 기타(구체적으로 )

13. 부인이나 남편께서는 어린애를 더 가지실 계획입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이가 커가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       4. 생각해 보지 않았다.

14.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을 늦추거나 임신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슨 방법이든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 사용중이다.                                       2. 사용하고 있지 않다

↓

15.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1. 먹는 피임약  
 2. 루프  
 3. 콘돔  
 4. 정관수술  
 5. 난관수술  
 6. 월경주기법  
 7. 기타(구체적으로 )

16. 언제부터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_\_\_\_\_년 \_\_\_\_\_월 부터

[조사원 : 질문13에서 2, 질문 14에서 2로 대답한 부인에게만 묻는다]

17. 부인께서는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_\_\_\_\_  
 \_\_\_\_\_

18. [조사원 : 질문 4 및 질문 8 을 보고 다음사항을 기록한다]

1. 78년 이후 정상 출생아 있음→질문 19로  
 2. 78년 이후 정상 출생아 없음→질문 완료

그러면 지금부터 78년 1월 이후 부인께서 낳으신 정상출생아에 관해서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 정 상 출 생 기 록 표

생년월일	성별	이름	생여부	사망한 경우		출생순위	임신유무 및 임신기간	7개월 이상인 경우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정상출생여부	정상출생기간
19	20	21	22	23	24	25	26		
막내아이는 작년에 낳았습니까? 꿈년에 낳았습니까? 그 아이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 아이 이외에 작년 이후(78년 1월 이후)에 낳은 아이는 또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다 → 누무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없다 → 질분완로	그 아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살아있습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그 아이는 언제 죽었습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그 아이는 부인의 몇번째 낳은 아이입니까?	그 아이 이외에 단계 한두달 간이라도 임신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임신은 몇개월 만에 끝났습니까?	그 아이는 낳았을 때 울었거나 살아 있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질문 19~23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78년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79년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음 1. 남 양 2. 여		1. 생존 2. 사망	년 월 일		1. 있다: _____개월 2. 없다	1. 있었다 2. 없었다		

정상출생아주  명

### 조사구내 출생·사망사건 발견

1. 이 동네에서 작년이나 올해(1978년 이후)에 아기를 낳은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2. 이 동네에서 작년이나 올해(1978년 이후)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3. 이 동네에서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이후)에 6살이 되기 전에 죽은 아  
이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사건종류	가구주이름	가 구 위 치	*지도원 확인 기입란		
			거처및가구번호	가구주이름	모/사망자이름

### 면 접 후 기

1. 응답자의 협조상태:

- 1 - 3 장 응답자:  1.매우 좋았다  2.좋았다  3.보통  4.나빴다  
4 - 7 장 응답자:  1.매우 좋았다  2.좋았다  3.보통  4.나빴다

2. 조사원 소견:

조사가구의 특성에 관하여: \_\_\_\_\_

\_\_\_\_\_

특정질문 사항에 관하여: \_\_\_\_\_

\_\_\_\_\_

3. 지도원 관찰 소견: \_\_\_\_\_

\_\_\_\_\_

\_\_\_\_\_

조사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반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거처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련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人口動態統計 改善 示範事業

### 基礎調查 質問票

(1978年 8月)

주소: 충청 도      시      동      읍(면)      리      번지      호 (      통      반)

가구주 성명: \_\_\_\_\_

### 조 사 결 과

방 문 회 수	1 회	2 회	3 회
방 문 일 자	월 일	월 일	월 일
응 답 자 성 명			
조 사 원 성 명			
면 접 시 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면 접 결 과	완료, 거절, 미완	완료, 거절, 미완	완료, 거절, 미완
다음방문예정일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현지지도원확인			

經濟企劃院 · 延世大學校 人口및家族計劃研究所

## 인 사 의 말 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구 및 가족 계획 연구소에서 나온 ○○○  
입니다.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인구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출생및 사망신고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예산군)은 본 연구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적합한 곳으로 생  
각되어 특별히 선정된 곳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고 경험과 신고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  
견은 단지 숫자로 처리될 뿐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음  
니다.

대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바쁘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여쭙  
어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1978년 8 월

## 제 1 장 가 구 원 사 항

지금부터 통상 같이 생활을 하는 식구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101. 이 맥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102. 이 맥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식구의 이름을 전부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가 구 원 기 록 표 ]

가구원 번호	가구원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거 주 사 항		성 별	생 년	월 일		6 세 이상 교육정도	
			106	107			108	109	110	111
	101~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조사원 : 질문 101~ 104까지 차례 로 묻고 이때 에서 함께 생 활하는 식구 의 이름을 전 부 기입】	이 분은 가 구주와 어 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분은	전 입 년 월 이 분은 언 제 부 터 이 집 에서 살 고 있습 니까?	이 분은 남 자 입니까 ? 또는 여 자 입니까 ?	이 분의 세는 나 이는 몇 세 입 니까? 무슨 띠 입니까? . 그 렇다면 몇 년에 태어 나 셨습니까?	이 분의 생일은 언제 입니까? 그 날자는 음력입 니까? 양력입 니까?		이 분은 학교 를 어디까지 다 녔습니까?  1 무학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이상	
현재 이 집에 같이 살고 있 습니까?			언제 이사 오셨습 니까?							
1		가 구 주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2			1 안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3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4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5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6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7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8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9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10			1 산 다 2 안산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1 음 2 양	

121. 이맥의 가구원으로서 잠깐 여행중이어서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 1. 있다(기재한다) - 2. 없다.

122. 혹시 군에 입대중이거나, 학교 또는 취업으로 나가있는 사람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사람은

103. 댁의 식구 이외에 함께 살고있는 친척이나 친지가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도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104. 댁의 식구나 친척, 친지 이외에 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정부 고용인 또는 하숙인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도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가 구 원 기 록 표]

15세 이상 가구원의 배우 관계		부 모 생 존 사 황						출산및입신 조사 대상	주민등록 신고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816
이 분은 결 혼한 적이 있습니까?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4. 사별	사 별	아 버* 지			어 머 니			【15~51세의 기혼부인에 O표】	【제 8 장의 질문 816번을 묻고 그 응답을 기입】
	이 분의 배우자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 72년 12월 이전 2 73년 1월 이후】	이 분의 아버지는 현재 살아 계십니까?	사 망		이 분의 어머니는 현재 살아 계십니까?	사 망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 72년 12월 이전 2. 73년 1월 이후】	이 분은 사망 당시 같이 살으셨습니까?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 72년 12월 이전 2. 73년 1월 이후】	이 분은 사망 당시 같이 살으셨습니까?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생존 2 사망	1 72년이전 2 73년이후	1 예 2 아니오		1 했다 2 안했다

없습니까? \_ 1. 포함 되었다(삭제한다) \_ 2. 안되었다

123. 금년에 태어난 아이로서 빠진 아이는 없습니까? \_ 1. 있다(기입한다) \_ 2. 없다.



[출산력기록표]

2			8	9	10	11	12	13	14	15
			출생년도	이름	성별	출생월일		생존여부	사망시나이	
오 모 의 세 는 나 이	아 이 의 세 는 나 이	(유달)	이 아이는 몇년에 낳았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아이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 날 짜는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이 아이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세는 나이로 기입】	사망한 경우	
									이 아이는 몇살에 죽었습니까?	【2세 미만일 경우】 몇 개월 몇 일 만에 죽었습니까?
	7	취	1972		남 여	월 일	음 양	생존 사망	세	개월 일
	6	소	1973		남 여	월 일	음 양	생존 사망	세	개월 일
	5	호랑이 (4)	1974		남 여	월 일	음 양	생존 사망	세	개월 일
	4	토끼	1975		남 여	월 일	음 양	생존 사망	세	개월 일
	3	용	1976		남 여	월 일	음 양	생존 사망	세	개월 일
	2	뱀 (2)	1977		남 여	월 일	음 양	생존 사망	세	개월 일
	1	말	1978		남 여	월 일	음 양	생존 사망	세	개월 일

[임신기록보조표]

7	취		1972	12	1	2	3	4	5	6	7	8	9	10	11	11.27	
6	소		1973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8	
5	호랑이 (4)		1974	12	1	2	3	4	5	6	7	8	9	10	11	11.19	
4	토끼		1975	12	1	2	3	4	5	6	7	8	9	10	11	11.29	
3	용		1976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10	
2	뱀 (2)		1977	1	2	3	4	5	6	7	8	9	10	11		11.21	
1	말		1978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2
세는 나이	미	부인의 나이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음력 짜	

[출산력 기록표]

	16	17	18	19	20	21
	임신여부	임신기간			7개월 이상	임신재확인
임신해당 년도	【각각의 출생 간격에 대해서】 첫째 아이를 낳기전 [첫째 아이와 다음아 이사이... 막내를 낳은 후] 그 아이의에 단지 한두달간이라도 임신 한적이 있습니까?	그 임신 은 몇 년 도에 끝 났습니까 ?	그 임신이 끝난 달은 언제입니 까? 그 날짜는 음 력입니까? 양 력입니까?	그 임신 은 몇 달 째 끝났 습니까? 【7개월 미만이면 질문21】	그 아이를 낳았을때 그 아이는 울거나 살 아 있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질문 8-15 로】	부인께서 이밖에 그사 이에 임신하신적이 있 습니까? 【있다면 질문 17-21로 없다면 23으로】
1972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1973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1974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1975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1976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1977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1978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월 (음 양)	개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22. 부인께서 최근 6년간 임신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질문 17-21을 반복해서 질문한다) — 2. 없다.

23.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 중입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3. 모르겠다.



<p>24.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 몇 개월입니까? 임신 _____ 개월</p>
--

## 제 2 장 출생에 관한 사항

【※ 조사원 : 제 2 장 질문은 1973년 1월 1일부터 조사시점까지 이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에 관한 질문이다】

201. 최근 6 년동안(1973년 정초이후) 이 댁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_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202. 이 댁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이 이외에 세는 나이로 일곱살이 안된 아이가 있습니까?  
 \_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203. 이 댁에서 최근 6 년동안 (1973년 정초 이후)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이 이외에 태어나서 곧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_ 1. 있다(출생기록표 및 사망 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204. 최근 6 년동안 (1973년 정초 이후) 이 댁에서 살고 있는 친척, 하숙인, 고용인이 낳은 아이가 있습니까?  
 \_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 [출 생 기 록 표]

	출생아 이름	출생아 모의 이름	성 별	가구주와의 관계	출 생 년 월 일		출생아 생존여부
	205	206	207	208	209		211
	이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남자입니까? 또는 여자입니까?	이 아이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아이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이 아이의 생년월일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이 아이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또는 죽었습니까?
1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1 생존 2 사망
2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1 생존 2 사망
3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1 생존 2 사망
4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1 생존 2 사망

### 제 3 장 사 망 에 관 한 사 항

【※ 조사원 : 제 3 장 질문은 이 가구에서 같이 살다가 1973년 1월 1일부터 조사 시점 사이에 사망한 사람에 관한 질문이다】

301. 최근 6 년 동안 (1973년 정초 이후) 이 맥에서 같이 살던 식구 중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_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302. 최근 6 년 동안 (1973년 정초 이후) 이 맥에서 같이 살던 친척 하숙인 가정부 또는 고용인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_ 1. 있다. (사망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303. 최근 6 년 동안 (1973년 정초 이후) 이 맥에서 같이 살던 어린 아이 중에서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_ 1. 있다. (사망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304. 최근 6 년 동안 (1973년 정초 이후) 직장이나 유학 출장 여행 군대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 않던 가족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_ 1. 있다. (사망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 [사 망 기 록 표]

이 름	가구주와 의 관 계	성 별	사 망 년 월 일	사망시나이	사 망 시 동거여부	사 망 자 상주형태	대 상 여 부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 날짜는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이 분은 사망시에 몇 살이었습니까?	이 분은 사망시에 너 과 함께 살았습니까?	이 분이 살아계신다면 맥에 함께 살고 계실까요?	
1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만    세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2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만    세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3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만    세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4		1 남 2 여	년    월    일 1 음력 2 양력	만    세	1 예 2 아니오	1 예 2 아니오	

## 제 4 장 출생 신고 행위에 대한 사항

【※ 조사원 : 제 2 장의 출생기록표를 보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생존여부를 질문 402-405에 기록하고 제 4 장을 질문한다】

401. 이택에서 1973년 정초 이후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원 : 질문 402에 기록된 아이의 이름을 불러 준다】

### [출 생 신 고 기 록 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생존여부	부의 이름	출생순위	본적주소	호주이름	신고여부	신고안한 이유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조사원 : 질문 206, 207, 209, 210을 보고 기입】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 )의 몇째 자녀입니까? [( )는 아버지의 이름임]	이 아이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가구주와 본적이 같은 경우는 "같다"라고 기입】	이 아이의 호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출생 신고를 마쳤습니까? 【 신고된 경우는 질문 413으로】	지금까지 신고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① 신고지가 멀다 ② 이름을 못지었다 ③ 혼인 신고를 안했다 ④ 절차를 모른다 ⑤ 신고에 돈이 든다 ⑥ 바쁘고 귀찮다 ⑦ 미신적 문제 ⑧ 건강문제
	1 남 2 여	19__년__월__일 (음, 양)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1 남 2 여	19__년__월__일 (음, 양)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1 남 2 여	19__년__월__일 (음, 양)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1 남 2 여	19__년__월__일 (음, 양)	1 생존 2 사망					1 예 2 아니오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이 아이들 외에 1973년 정초 이후 태어난 아이가 또 있습니까?

\_ 1. 있다. (제 2 장 출생기록표와 아래 출생신고기록표에 기입) \_ 2. 없다.

이 아이들에 대하여 몇가지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출생 신고 기록표]

신고서 기입자	신고서 제출자	신 고 지	호 적 상 생년월일	부정확 신고의 이유		신고년월일	실기신고의 이유	
				417	418		420	421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출생신고서를 직접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생신고서를 직접 시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신고는 어디에다 하 셴습니까? 【 1 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같다】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질문404와 같은 경우는 질문 419로】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이 틀리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① 취학문제 ② 과태료 문제 ③ 음력으로 기재 ④ 호적담당자의 실수 ⑤ 신고일을 출생년도로 기재 ⑥ 미신적 이유	출생신고는 출생후 몇 일 만에 하였습니까? 【1 달 이후에 한 경우만 질문 420-421로 간다】	신고를 늦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① 신고기일이 짧다. ② 신고기일을 몰랐다. ③ 이름을 늦게 지었다. ④ 아이가 커가는 걸 보고 신고했다. ⑤ 바쁘고 귀찮다. ⑥ 신고를 부탁한 사람의 실수
		1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1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1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1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 제 5 장 사 망 신 고 행 위 에 대 한 사 항

【※ 조사원 : 제 3 장 의 사 망 기 록 표 를 보 고 이 름, 성 별, 사 망 년 월 일, 사 망 시 연 령 을 질 문  
502-505에 기록하고 제 5 장 을 질 문 한다】

501. 이 택 에서 1973년 정 초 이 후 도 아 가 신 분 은 다 음 과 같 습 니 다.

【※ 조사원 : 질 문 502에 기록된 사망자의 이름을 불러준다】

### [사 망 신 고 기 록 표]

이름	성별	사 망 년 월 일	사 망 시 연 령	본 적 주 소	호 주 이 름	신 고 여 부	미 신 고 이 유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조사원 : 제 3 장 의 사 망 기 록 표 를 보 고 기 입】				이 분 의 본 적 은 어 디 입 니 까? 【가 구 주 의 본 적 과 같 은 경 우 에 는 “갈 다”라 고 기 입】	이 분 의 호 주 이 름 을 말 씀 해 주 십 시 오.	이 분 의 사 망 신 고 를 마 쳤 습 니 까? 【신 고 한 경 우 는 질 문 507로】	지 금 까 지 신 고 를 안 하 신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다 음 과 같 은 문 제 가 있 었 습 니 까? ① 출 생 신 고 를 안 했 다 ② 상 속 문 제 가 있 다 ③ 신 고 지 가 멀 다 ④ 절 차 를 모 른 다 ⑤ 바 르 고 귀 람 다 ⑥ 삼 년 상 이 지 나 야 한 다 ⑦ 신 고 의 필 요 성 이 없 다 ⑧ 죽 은 사 람 에 게 미 안 하 다.
	1 남	19__년 __월 __일				1 예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2 여	(음, 양)				2 아니오		
	1 남	19__년 __월 __일				1 예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2 여	(음, 양)				2 아니오		
	1 남	19__년 __월 __일				1 예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2 여	(음, 양)				2 아니오		
	1 남	19__년 __월 __일				1 예		①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⑥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⑦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⑧ 예 아니오
	2 여	(음, 양)				2 아니오		

이분들 외에 1973년 정초 이후 돌아가신 분이 또 있습니까?

\_\_ 1. 있다. (제 3 장 사망 기록표와 아래 사망신고 기록표에 기입) \_\_ 2. 없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사망 신고 기록표]

신고서 작성자	신고서 제출자	신고지	호적상 사망일	부정확 신고의 이유		신고년월일	실기신고의 이유	
				515	516		518	519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사망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망신고서를 직접 시(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신분은 누구입니까?	신고는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1 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같다】	호적에 기재된 사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질문 504와 같은 경우의 질문 517로】	호적과 실제의 사망일자가 다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① 신고일을 사망일로 기재했다. ② 호적담당자의 실수 ③ 음력으로 기재 ④ 실기신고로 별금을 내지 않으려고 ⑤ 실기신고로 절차가 복잡해서	사망신고는 사망후 몇일만에 했습니까? 【1달후에 한 경우에만 질문 518-519로 간다】	신고를 늦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① 기간이 짧았다. ② 신고기간을 몰랐다 ③ 바빴다. ④ 신고 부탁자의 실수 ⑤ 상속문제가 있다. ⑥ 신고지가 멀다. ⑦ 절차를 몰랐다. ⑧ 삼년상이 지나지 않아서 ⑨ 신고 필요성이 없다. ⑩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1 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⑥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⑦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⑧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⑨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⑩ 예 아니오
		1 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⑥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⑦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⑧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⑨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⑩ 예 아니오
		1 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⑥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⑦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⑧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⑨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⑩ 예 아니오
		1 본적지 2 주민등록지 3 같다	19__년 __월 __일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__일 __개월 __년		① 예 아니오⑥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⑦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⑧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⑨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⑩ 예 아니오

## 제 6 장 출생신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601. 귀하께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질문 617로)

602.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 일정한 기간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정한 기간내                       2. 그렇지 않다→(질문 608로)



603. 그렇다면 출생후 며칠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1. (\_\_\_\_)일  
 2. 모른다.

604. “일정한 기간내에 한다”는 말은 누구 또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1. 구, 시, 읍, 면, 동직원  
 2. 이장, 통장, 반장  
 3. 보건소 직원  
 4. 라디오  
 5. 텔레비전  
 6. 신문, 잡지  
 7. 포스터, 프랭카드  
 8. 마을앰프, 가두방송  
 9. 기타 (누구 \_\_\_\_\_)

605.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벌금)를 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질문 608로)



606.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벌금)는 얼마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1. (\_\_\_\_)원  
 2. 모른다.

607. 출생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벌금)를 내야 하는데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608.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는 일반적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
- 2. 모
- 3. 기타 가구원(누구: \_\_\_\_\_)
- 4. 리, 반 동장
- 5. 일가 친척
- 6. 기타(누구: \_\_\_\_\_)

609. 귀하께서는 택에서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다면 출생신고를 어느 곳에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1. 안다(신고장소: \_\_\_\_\_)
- 2. 모른다.

【※ 조사원 : 본적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 동사무소, 기타 장소를 자세히 기입한다】

610. 귀하께서는 출생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출생신고를 해본 일이 있다.
- 2. 출생신고를 해본 일이 없다→(질문 616으로)

611.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출생신고를 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19\_\_년 \_\_월경

612. 그 당시 출생신고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1. 있었다.
- 2. 없었다→(질문 614로)



613.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로 어떠한 점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제 7 장 사망신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701. 귀하께서는 이 책에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제 8 장으로)

702. 귀하께서는 사망 신고는 사람이 죽은후 일정한 기간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정한 기간내                       2. 그렇지 않다→(질문 707로)



703. 그렇다면 사망후 며칠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1. (            일)                       2. 모른다.

704. “일정한 기간내에 한다”는 말은 누구 또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1. 구, 시, 읍, 면, 동직원  
 2. 이장, 통장, 반장  
 3. 보건소, 가족계획요원  
 4. 라디오  
 5. 텔레비전  
 6. 신문, 잡지  
 7. 포스터, 프랭카드  
 8. 가두방송, 마을방송  
 9. 기타(누구:                      )

705. 사망 신고를 늦게 했을때 과태료(벌금)을 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질문 707로)



706. 과태료(벌금)는 얼마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            원)  
 2. 모른다.

707. 한 가정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 신고는 일반적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호주
- 2. 기타 가구원(누구: \_\_\_\_\_)
- 3. 리, 반, 동장
- 4. 구, 시, 읍, 면장
- 5. 기타(누구: \_\_\_\_\_)

708. 귀하께서는 이 맥에서 사망한 분 (어린이 포함)이 있다면 사망 신고는 어느 곳에다 하여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1. 안다.(신고장소: \_\_\_\_\_)
- 2. 모른다.

【※ 조사원:본적지, 주민등록지 의 구, 시, 읍, 면, 동사무소, 기타 장소를 자세히 기입한다.】

709. 귀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와는 별도로 매장이나 화장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안다.
- 2. 모른다→(질문 711로)

710. 매장, 화장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11. 귀하께서는 사망신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1. 사망 신고를 해 본적이 있다.
- 2. 사망 신고를 해 본적이 없다→(질문 717로)

712.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한 사망 신고는 언제였습니까?

19\_\_년\_\_월경

713. 그당시 사망 신고를 하는데 불편 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1. 있었다.
- 2. 없었다→(질문 715로)

714.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15. 신고할 때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 가. 거주지에서 신고지까지 교통이 불편했다. \_ 1. 그렇다 \_ 2. 아니다  
나.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 일반인으로서 쉽게 알기 힘들었다. \_ 1. 그렇다 \_ 2. 아니다  
다. 신고서의 기록하는 내용이 어려웠다. \_ 1. 그렇다 \_ 2. 아니오  
라. 기록해야 하는 신고 용지가 많았다. \_ 1. 그렇다 \_ 2. 아니오  
마. 신고를 맡은 공무원이 바빴다. \_ 1. 그렇다 \_ 2. 아니오  
바. 신고를 맡은 공무원이 불친절 했다. \_ 1. 그렇다 \_ 2. 아니오  
사.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_ 1. 그렇다 \_ 2. 아니다  
아. 신고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오래 기다렸다. \_ 1. 그렇다 \_ 2. 아니다  
자. 신고하기 위해 신고지 사무소에 여러번 갔다. \_ 1. 그렇다 \_ 2. 아니다  
차.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웠다. \_ 1. 그렇다 \_ 2. 아니다

716. 사망 신고를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바라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717. 아기가 출생 신고도 하기 전에 죽었다면 귀하께서는 출생 신고와 사망신고를 하시겠습니까?

- \_ 1.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동시에 하겠다.  
\_ 2. 출생 신고를 한 후 며칠후에 다시 사망 신고를 하겠다.  
\_ 3.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둘다 하지 않겠다.  
\_ 4. 기타 (무엇: \_\_\_\_\_)

718. 귀하께서는 요즘 우리 나라에서 사망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807. 농사란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논	평	특용작물( )	평	소가축( )	마리
밭	평	수 원 지	평	가금( )	수
파 수 원	평	대 가 축( )	두	누 에	g
고등원예( )	평	중 가 축( )	두	벌	통

808. 댁에서 살고 있는 이집은 자가입니까? 세를 들고 있습니까?

\_ 1. 자기집      \_ 2. 세집      \_ 3. 세방

809. 댁에서 현재 사용중인 부분의 전평수는?

\_\_\_\_\_ 평

810. 현재 댁에서 식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은 모두 몇개입니까?

\_\_\_\_\_ 개

811. 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 시 계	_ 1. 있다	_ 2. 없다	(사) 세탁기	_ 1. 있다	_ 2. 없다
(나) 라 디 오	_ 1. 있다	_ 2. 없다	(아) 자 전 거	_ 1. 있다	_ 2. 없다
(다) 텔레비전	_ 1. 있다	_ 2. 없다	(자) 오토바이	_ 1. 있다	_ 2. 없다
(라) 전 축	_ 1. 있다	_ 2. 없다	(차) 재 봉 틀	_ 1. 있다	_ 2. 없다
(마) 선 풍 기	_ 1. 있다	_ 2. 없다	(카) 전 화	_ 1. 있다	_ 2. 없다
(바) 냉 장 고	_ 1. 있다	_ 2. 없다	(타) 신문구독	_ 1. 있다	_ 2. 없다

812. 귀하(가구주)께서는 요즈음 소식을 알기 위하여 신문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_ 1. 매일      \_ 2. 가끔(일주일 한두번)      \_ 3. 전혀 읽지 않는다.

813. 귀하(가구주)께서는 요즈음 소식을 알기 위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보통 얼마나 자주 듣거나 보십니까?

\_ 1. 매일      \_ 2. 가끔(일주일 한두번)      \_ 3. 안보고 안듣는다.

814. 귀하(가구주)가 주민등록을 한 주소는 어디입니까?

시                    구                    동  
도                    군(시)                    면(읍)                    리(동)                    번지

815. 귀하(가구주)의 본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시                    구                    동  
도                    군(시)                    면(읍)                    (리)동                    번지

호주성명 (                    )

816. 【※ 조사원 : 질문 816은 모든 가구원에게 묻는 질문으로 제 1 장 가구원 기록표 816  
란에 기입한다】

이분은 이집 주소 (현 거주지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원 관찰

【※ 조사원 : 면접 조사를 마친후에 즉시 기입한다】

가) 응답자의 협조상태 : \_ 1. 매우 좋았다 \_ 2. 좋았다 \_ 3. 보통 \_ 4. 나빴다

나) 조사원 소견 :

면접 조사를 받은 사람 \_\_\_\_\_

\_\_\_\_\_

\_\_\_\_\_

특정 질문에 대하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사회경제적 배경    \_ 1. 상                    \_ 2. 중                    \_ 3. 하

기타 사항 \_\_\_\_\_

\_\_\_\_\_

\_\_\_\_\_

조사원 성명 \_\_\_\_\_ 날짜 \_\_\_\_\_

다) 지도원 관찰 소견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조사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반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거 처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련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인구동태통계 개선 시범사업 평가조사 질문표 (1979년 11월)

주소 : \_\_\_\_\_ 시 \_\_\_\_\_ 군 \_\_\_\_\_ 동읍(면) \_\_\_\_\_ 리 \_\_\_\_\_ 번지

가구주성명 : \_\_\_\_\_

## 조 사 결 과

방 문 회 수	1 회	2 회.	3 회
방 문 일 자	월 일	월 일	월 일
1 - 3 장 응답자성명			
4 - 7 장 응답자성명			
면 접 시 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면 접 결 과	완료, 거절, 미완, 부재	완료, 거절, 미완, 부재	완료, 거절, 미완, 부재
조 사 원 성 명			
현지지도원확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 인 사 의 말 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구 및 가족 계획 연구소에서 나온 ○○○  
입니다.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인구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출생 및 사망신고를  
보다 손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예산군)은 본 연구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적합한 곳으로 생  
각되어 특별히 선정된 곳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고 경험과 신고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  
견은 단지 숫자로 처리될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음  
니다.

대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바쁘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여쭙  
어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1979년 11월

# 제 1 장 가구원에 관한 사항

## - 가 구 원 기 록 표 -

가구원 번호	가 구 원 종 류	가구추와의 관계	거 주 사 항		성 별	생 년 월 일	
			103	104		105	10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내에서 늘 같이 생활을 하는 식구들의 이름을 가구주부터 빠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가정부, 고용인, 하숙인 포함)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분은 현재 이집에서 같이 살고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을 경우 이분은 언제부터 이집에 살고 있습니까?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분의 세는 나이는 몇세입니까? 무슨 띠입니까? 몇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01		가구주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2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3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4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5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6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7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8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09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10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11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12			1.산 다 2.안산다	1. 1977년12월이전 2. 년 월	1. 남자 2. 여자	세 띠 년	월 일 양

* 가구 원수	
대상부인수	
가구 형태	

※제 1장-제 3장 응답자 성명 : \_\_\_\_\_

6세이상의 교육 정도	15세이상의 배우 관계	보조질문 대상부인
1 0 8	1 0 9	1 1 0
이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이 분은 결혼 하셨습니까? 아니면 미혼이십니까?	[조사원 : 15~51세 사이의 기 혼부인에 V표]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0.미취학 1. 무학 2. 국교 3. 중학 4. 고교 5. 대학	1.미혼 2.유배우 3.이혼 및 별거 4.사별	

### 조사원 확인사항

기재된 가구원의 이름을  
응답자에게 다시 한번 반  
복 하여 읽어주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조사되어야 할 사람**

1. 맥의 어린이(특히 1년미만)들중 빠진 아이가 있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2. 맥의 가족 이외에 늘 같이 살고 있는 친척, 친지, 하숙인,  
동거인중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3. 맥의 식구중 친지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여행중이어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4. 맥의 식구중 항공기나 배를 타는 탑승원이 있습니까?  
 있음→조사대상                       없음

**조사에서 빼야 할 사람**

5. 맥에 잠시 와 계시는 친척이나 방문객, 손님중에 위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음→삭제할 것                       없음
6. 군에 입대중이거나 학교 또는 취업으로 다른곳에 살고있는  
식구중에 위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음→삭제할 것                       없음

## 제 2 장 출생에 관한 사항

【※조사원 : 제 2 장 질문은 1974년 1월 1일부터 조사시점까지 이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에 관한 질문이다】

201. 이택에서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 이후)아이를 낳은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2.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 이후) 이 택에서 살고 있는 친척, 하숙인, 고용인이 낳은 아이가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3. 이 택에서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 이후)지금까지 말씀하신 아이 이외에 태어나서 곧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 및 사망 기록표에 기입)       2. 없다.
204. 이 택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이이외에 세는 나이로 일곱살이 안된 아이가 있습니까?  
 1. 있다(출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 - 출 생 기 록 표 -

출생아 번호	출생아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모의이름	모의상주여부	출생년월일			성 별	출생아 생존여부	출생아 등거여부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이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는 현재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이 아기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아기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1				1. 산다 2. 안산다 3. 사망	년	월	일	음 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산다 2. 안산다
2				1. 산다 2. 안산다 3. 사망	년	월	일	음 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산다 2. 안산다
3				1. 산다 2. 안산다 3. 사망	년	월	일	음 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산다 2. 안산다
4				1. 산다 2. 안산다 3. 사망	년	월	일	음 양	1. 남자 2. 여자	1. 생존 2. 사망	1. 산다 2. 안산다

### 제 3 장 사 망 에 관 한 사 항

301. 혹시 이 택에서 살고 있던 식구중에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302. 이 택에서 살고 있던 어린애중에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이후)에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303. 이 택에서 살던 친척이나 하숙인, 고용인중에서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이후)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304. 이 택에서 최근 6년동안(1974년 정초이후)에 아기를 낳다가 죽거나 또는 아기를 낳은 후 곧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1. 있다(사망기록표에 기입)       2. 없다.  
 ↓

305. 그 아이는 살아 있습니까?  
 1. 생존                                       2. 출생후 사망                                       3. 사산  
 (출생기록표에 기입되었나                      (출생 및 사망기록표에 기입  
 확인하고 없으면 기입)                      되었나 확인하고 없으면 기입)

#### - 사 망 기 록 표 -

사 망 자 번 호	사망자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 별	사 망 년 월 일		사 망 당 시 령	사 망 당 시 배우 관계	사 망 당 시 상속 주 여 부		
	3 0 6	3 0 7	3 0 8	3 0 9		3 1 0	3 1 1	3 1 2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분은 남자 입니까? 여자 입니까?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이분은 사망 당시 만으로 몇살이었습니까?	이분은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분은 이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1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만 세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4. 사별	1. 예 2. 아니오
2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만 세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4. 사별	1. 예 2. 아니오
3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만 세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4. 사별	1. 예 2. 아니오
4			1. 남자 2. 여자	년	월	일	음 양	만 세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4. 사별	1. 예 2. 아니오

## 보 조 질 문 표

조 사 구 번 호			
반 번 호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일 련 번 호			
가 구 원 번 호			

응답자성명 : \_\_\_\_\_

1. 부인의 현재 나이는 세는 나이로 몇세입니까? \_\_\_\_\_ 세
  
2. 부인에게서 낳으신 자녀중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3. 부인에게서 낳으신 자녀중 현재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4. 부인에게서 낳으신 자녀중에 사망한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낳자마자 죽은 자녀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명
  
5. 그러면 부인에게서 낳으신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6.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중이십니까?  
 1. 임신중이다.                       2. 임신중이 아니다.                       3. 모르겠다.  
 ↓
  

7. 현재 임신 몇 개월째입니까? \_\_\_\_\_ 개월

  
8. 부인에게서 낳으신 자녀 ( )명 중 부인의 나이로 ( )세 이후에 (최근 6년간, 1974년 정초이후) 낳으신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조사원 : 1974년 이후에 낳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완료】

그러면 지금부터 부인에게서 최근 6년간 (1974년 정초이후) ( )세 이후에 경험하신 임신 및 출산에 관해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 출산 기록표

	출생연월	성별	이름	생존여부	사망한 경우		출생순위	임신유무	임신년월	임신기간	7개월이상 정상출생여부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정상출생여부	정상출생여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아	최근 6년간 받은 자녀중 첫째(두째, 세째...)	그 아이는 남자임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임	그 아이는 현재 생체 위체 있음니까?	그 아이는 언제 죽었습니까? 그것은 음력입니까?	그 아이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위 몇번	【작가의 출생 간격에 대해서】 첫째 아이를 출생 전	그 임신이 끝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음력입니까?	그 임신은 몇달째 끝났습니까?	그 아이를 받았을때	그 아이는 출거나 생	그 아이를 받았을때
의	아이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양력	여자임	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음력입니까?	배웠던 아이입니까?	【작제 아이와 더불어 임신이...마세를 받은 후】 그 아이 외에 단지 한두말잔이라도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니까?	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세	입니다?	니까?										
나												
이												
7	1973	여		생존 사망	년 월 일(음양)		있다 없다	월(음양) 월(음양) 월(음양)	개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	1974	여		생존 사망	년 월 일(음양)		있다 없다	월(음양) 월(음양) 월(음양)	개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	1975	여		생존 사망	년 월 일(음양)		있다 없다	월(음양) 월(음양) 월(음양)	개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4	1976	여		생존 사망	년 월 일(음양)		있다 없다	월(음양) 월(음양) 월(음양)	개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3	1977	여		생존 사망	년 월 일(음양)		있다 없다	월(음양) 월(음양) 월(음양)	개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	1978	여		생존 사망	년 월 일(음양)		있다 없다	월(음양) 월(음양) 월(음양)	개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1979	여		생존 사망	년 월 일(음양)		있다 없다	월(음양) 월(음양) 월(음양)	개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407.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는 일반적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
- 2. 모
- 3. 기타 가구원(누구 : )
- 4. 리. 반. 통장
- 5. 일가친척
- 6. 기타(누구 : )

408. 귀하께서는 맥에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어느 곳에다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1. 안다
- 2. 모른다(→질문410으로)

↓

409. 그 신고장소는 어디입니까?	
1. 현저주지(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사무소. 시청. 구청	<input type="checkbox"/>
2. 본적지의 읍, 면, 동사무소. 시청. 구청	<input type="checkbox"/>
3. 경찰서	<input type="checkbox"/>
4. 병원	<input type="checkbox"/>
5. 기타(어디 : )	<input type="checkbox"/>

410. 귀하께서는 작년이나 올해에 출생신고를 직접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4장 질문 끝)

↓

411.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출생신고를 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412. 귀하와 그 출생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input type="text"/>	

413. 출생신고서는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 1. 본인 (→질문415로)
- 2. 태서소 직원
- 3. 시. 읍. 면. 동직원
- 4. 리. 반. 통장
- 5. 기타(누구 : \_\_\_\_\_)

↓

414. 그분은 신고서작성을 무료로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았습니까?

- 1. 무료
- 2. 유료

415. 그 출생신고를 할 때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질문 417로)

↓

416. 그것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  
-----  
-----

417. 신고할 때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 가. 거주지에서 신고지까지 교통이 불편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나.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으로서 쉽게 알기 힘들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다. 신고서 기록하는 것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라. 기록하는 신고용지가 너무 많았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마.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너무 바빴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바. 신고를 맡은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사.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아. 신고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오래 기다렸다.      1. 그렇다      2. 아니다
- 자. 신고하기 위해 신고지 사무소에 여러번 갔다.      1. 그렇다.      2. 아니다







## 제 6 장 출생 신고 행위에 대한 사항

	질문 번호	질문	출생 1	출생 2	출생 3
*	601	[조사원 : 제 2장의 출생기록표상의 질문 205, 209를 보고 그대로 기입 하시오]	_____년 음 _____월 _____일 양	_____년 음 _____월 _____일 양	_____년 음 _____월 _____일 양
	602		_____년 월 일	_____년 월 일	_____년 월 일
	603		[질문 602에서 생년월일이 음력인 경우 양력으로 환산한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604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605	이 아이는 ( )의 몇째자녀입니까? [( )는 아버지이름]			
	606	이 아이의 호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07	이 아이는 호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	□
	608	이 아이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가주주의 본적과 같은 경우는 '같다' 라고 기입하십시오]			
신 고 여 부	609	이 아이는 출생신고를 마쳤습니까?	1.예 (→질문 612로) 2.아니오	1.예 (→질문 612로) 2.아니오	1.예 (→질문 612로) 2.아니오
신 고 불 안 한 이 유	610	지금까지 신고를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11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안한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 신고지가 멀다 나. 이름을 못지었다 다. 혼인신고를 안했다 라. 절차를 모른다 마. 신고에 돈이 든다 바. 바쁘고 귀찮다 사. 미신적문제 (신고를 하면 애가 일찍 죽는다) 오. 건강문제 [ 6 장 질문완료]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출 생 신 고 권 유 자	612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0.없다 1.가무원, 가족 2.이웃, 친척 3.읍·면·동, 시청직원 4.보건소 직원 5.새마을지도자 6.이장, 반장, 통장 7.기타 (누구 : _____)	0.없다 1.가무원, 가족 2.이웃, 친척 3.읍·면·동, 시청직원 4.보건소 직원 5.새마을지도자 6.이장, 반장, 통장 7.기타 (누구 : _____)	0.없다 1.가무원, 가족 2.이웃, 친척 3.읍·면·동, 시청직원 4.보건소 직원 5.새마을지도자 6.이장, 반장, 통장 7.기타 (누구 : _____)
신 고 서 기 입 자	613	출생신고서를 직접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생아와의 관계 기입)	□	□	□
신 고 서 제 출 자	614	출생신고서를 직접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출생아와의 관계 기입)	□	□	□

	질문 번호	질문	출생 1	출생 2	출생 3
신고지	615	신고는 본적지에서 하셨습니까? 주민등록지에서 하셨습니까?	1.본적지 2.주민등록지 3.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같다	1.본적지 2.주민등록지 3.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같다	1.본적지 2.주민등록지 3.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같다
호적상 생년월일	616	호적에 기재된 이 아이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 까? (질문 603과 같으면 619로)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_년 ____월 ____일
부정확 신고의 이유	617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이 틀리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618	호적과 실제 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된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음력 날짜를 그대로 기입</li> <li>ㄴ. 출생신고일을 출생일자로 기재</li> <li>ㄷ.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li> <li>ㄹ. 학교에 일찍 가려고</li> <li>ㅁ. 나이를 줄이려고</li> <li>ㅂ. 호적 담당자의 실수</li> <li>ㅅ. 신고를 부탁받은자의 실수</li> </ul>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호신 날짜	619	출생신고는 출생후 며칠만에 하셨습니까?			
	620	그렇다면 언제 신고하셨습니까? (한달이내이면 6장 질문끝)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실기 신고의 이유	621	출생신고는 출생후 한달안에 하기로 되어 있는 데 한달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하신 이유 는 무엇입니까?			
	622	신고를 늦게 하게 된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기간이 짧았다</li> <li>ㄴ. 신고기간을 몰랐다</li> <li>ㄷ. 이름을 늦게 지었다</li> <li>ㄹ. 이 아이가 커가는걸 보고 신고했다</li> <li>ㅁ. 바쁘고 귀찮다</li> <li>ㅂ. 신고를 부탁한 사람의 실수</li> </ul>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과태료	623	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를 내셨습니까?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최고조치	624	신고를 독촉하는 최고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 제 7 장 사 망 신 고 행 위 에 대 한 사 항

	질문 번호	질문	사 망 1	사 망 2	사 망 3
* 년 월 일	이름	701			
	사망	702	[※ 조사원 : 제 3 장의 사망기록표상의 질문 306 과 309를 보고 그대로 기입하시오]	[※ 조사원 : 제 3 장의 사망기록표상의 질문 306 과 309를 보고 그대로 기입하시오]	[※ 조사원 : 제 3 장의 사망기록표상의 질문 306 과 309를 보고 그대로 기입하시오]
	년 월 일	703	[질문 702에서 생년월일이 음력인 경우 양력 으로 환산한 생년월일을 적는다]	[질문 702에서 생년월일이 음력인 경우 양력 으로 환산한 생년월일을 적는다]	[질문 702에서 생년월일이 음력인 경우 양력 으로 환산한 생년월일을 적는다]
	호주이름	704	이분의 호주 이름은 무엇입니까?		
	호주와의 관계	705	이 분은 호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본적 주소	706	이분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가구주의 본적과 같을 경우는 "같다"라고 기 입]		
	신고여부	707	이분의 사망신고를 마쳤습니까?	1.예 (→질문 710으로) 2.아니오.	1.예 (→질문 710으로) 2.아니오
귀 의 환 안 의 의 견		708	지금까지 신고를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09	지금까지 사망신고를 안한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출생 신고를 안했다.</li> <li>ㄴ. 상속 문제가 있다.</li> <li>ㄷ. 신고지가 멀다.</li> <li>ㄹ. 절차를 모른다.</li> <li>ㅁ. 바쁘고 귀찮다.</li> <li>ㅂ. 삼년상이 지나야 한다.</li> <li>ㅅ. 신고의 필요성이 없다.</li> <li>ㅇ.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있다. 2.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있다. 2.없다.</li> </ul>
	사망신고 권유자	710	이 사람의 사망신고를 하도록 권유한 사람이 있 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없다.</li> <li>1.가구원, 가족</li> <li>2.이웃, 친척</li> <li>3.읍, 면, 동, 시청직원</li> <li>4.보건소 직원</li> <li>5.새마을 지도자</li> <li>6.이장, 반장, 통장</li> <li>7.기타</li> <li>(누구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없다.</li> <li>1.가구원, 가족</li> <li>2.이웃, 친척</li> <li>3.읍, 면, 동, 시청직원</li> <li>4.보건소 직원</li> <li>5.새마을 지도자</li> <li>6.이장, 반장, 통장</li> <li>7.기타</li> <li>(누구 : )</li> </ul>
	신고서 기입자	711	사망신고서를 직접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망자와의 관계기입)		

	질문 번호	질문	사 망 1	사 망 2	사 망 3
신고서 제출자	712	사망신고서를 직접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신 분 은 누구입니까? (가구주와의 관계기입)			
신고지	713	신고는 본적지에서 하셨습니까? 주민등록지에서 하셨습니까?	1.본적지 2.주민등록지 3.본적지와 주민등록 지가 같다.	1.본적지 2.주민등록지 3.본적지와 주민등록 지가 같다.	1.본적지 2.주민등록지 3.본적지와 주민등록 지가 같다.
호적상 사망 년월일	714	호적에 기재된 사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질문 703과 같으면 질문 717로 간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 정 확 신 고 의 이 유	715	호적상의 사망년월일과 실제 사망년월일이 다른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716	호적과 실제상의 사망년월일이 다르게 된데에 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ㄱ. 신고일을 사망일로 기재했다. ㄴ. 호적당당자의 실수 ㄷ. 음력사망일을 그대로 기재했다. ㄹ. 실기신고로 벌금을 안내려고 ㅁ. 실기신고로 절차가 복잡해서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1.있다. 2.없다.
호 신 날 짜	717	사망신고는 사망후 며칠만에 하셨습니까?			
	718	그렇다면 언제 신고하셨습니까? [한달이내이면 7장 질문 끝]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실 기 신 고 의 이 유	719	사망신고는 사망후 한달안에 하기로 되어있는 데, 한달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하신 이유 는 무엇입니까?			
	720	신고를 늦게하게 된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ㄱ. 기간이 짧았다. ㄴ. 신고 기간을 몰랐다. ㄷ. 바빴다. ㄹ. 상속문제가 있다. ㅁ. 신고지가 멀다. ㅂ. 상년상이 지나지 않아서 ㅅ. 절차를 몰랐다. ㅇ.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ㅈ. 신고의 필요성이 없다. ㅊ. 신고부타자의 실수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1.있었다. 2.없었다.
과 태 료	721	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를 내셨습니까?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최 고 조 치	722	신고를 등록하는 최고조치를 받으셨습니까?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1.예 2.아니오 3.모른다.

※ 기타사항

1. 가구주의 직업 즉 평소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종사하는 직장, 실제 하는 일,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2. 가구주가 주민등록을 한 주소는 어디입니까?

\_\_\_\_\_ 시 \_\_\_\_\_ 구 \_\_\_\_\_ 동 \_\_\_\_\_ 리(동) \_\_\_\_\_ 번지  
\_\_\_\_\_ 도 \_\_\_\_\_ 군(시) \_\_\_\_\_ 면(읍)

3. 가구주의 본적주소는 어디입니까?

\_\_\_\_\_ 시 \_\_\_\_\_ 구 \_\_\_\_\_ 동 \_\_\_\_\_ 리(동) \_\_\_\_\_ 번지  
\_\_\_\_\_ 도 \_\_\_\_\_ 군(시) \_\_\_\_\_ 면(읍)

4. 이택의 호주는 누구입니까?

호주성명 : \_\_\_\_\_

5. 가구주께서는 이지방(예산군 / 청주시)에서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습니까?

1. 1977년 12월이전부터

2. 19\_\_년\_\_월 이후

### 조사구내 출생·사망사건 발견

1. 이 동네에서 작년이나 올해(1978년 이후)에 아기를 낳은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2. 이 동네에서 작년이나 올해(1978년 이후)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3. 이 동네에서 작년이나 올해(1978년 이후)에 낳다가 죽은 아이나 낳은 후 뉘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사건종류	가구주이름	가 구 위 치	*지도원 확인 기입란		
			거처및가구번호	가구주이름	모/사망자이름

### 면접 후기

1. 응답자의 협조상태:  1. 매우 좋았다    2. 좋았다    3. 보통  
 4. 나빴다

2. 조사원 소견:

조사가구의 특성에 관하여: \_\_\_\_\_

\_\_\_\_\_

특정질문 사항에 관하여: \_\_\_\_\_

\_\_\_\_\_

3. 지도원 관찰 소견: \_\_\_\_\_

\_\_\_\_\_

\_\_\_\_\_